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2018·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2018.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010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표지(10).indd 1 2018-08-27 오후 1:28:34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2018.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 약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과 특징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7년형과 5년형으로 구분됨(법 제121조의2 제2항)

○ 7년형: 5년간 세액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사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

○ 5년형: 3년간 세액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7년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5년형이 적용됨

□ 법인세 감면액 총합계액이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의 합계(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

○ 투자금액 한도: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5년형 감면은 40%

○ 고용기준 한도: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5년형 감면은 40%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1인당 1,500만원
- 그 외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인투자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지원임

○ 둘째, 법인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원임

○ 셋째, 지원대상의 성격에 따라 신기술 도입 지원, 대규모 투자 지원(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넷째, 신기술 도입과 대규모 외국인투자 지원은 7년형이 적용되며, 특정 지역 투자지원은 5년형이 적용됨

○ 다섯째, 지원항목별로 지원대상 업종과 외국인투자 금액 요건이 규정됨
○ 여섯째, 투자지원이긴 하지만 고용기준의 지원한도가 적용됨

2. 외국인투자 동향과 조세감면 실적

1) 외국인투자 동향

□ 외국인투자 기업 수를 보면,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신고기준 기업 수는 2005년 3,671개에서 2017년 2,774개로 25% 정도 감소되었음
- 도착 기준으로는 2005년 2,715개에서 2017년 1,641개로 약 40% 감소되었음
○ 한편 외국인투자 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고기준 금액은 2005년 11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 달러로 거의 두 배, 도착기준 금액은 2005년 96억달러에서 2017년 133억 달러로 1.4배로 증가함
○ 외국인투자 건수는 감소되었지만 건당 투자금액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줌

□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도착기준으로 55~70% 수준이고, 신고기준으로 6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신고기준에 비해 도착기준이 그린필드 투자비중이 낮은 것은 M&A형 투자의 신고 이행률이 그린필드 투자에 비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국가별로 보면, 2000~2017년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신고기준)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총 19개 국가임
○ 미국이 22%를 차지하여 1위이며, 그다음이 13.6%를 차지한 일본임
○ 그 외에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영국, 홍콩이 각각 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독일 4.1%, 몰타 3.8%, 캐나다는 3.1%를 차지함
○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19개 국가 중 11개 국가는 조세회피처이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다양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소규모 국가들임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 외국인투자 기업 중 1% 정도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 수를 보면, 2012년 41개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 2016년에는 24개가 되었음

- 2012년에는 신규 외국인투자 신고기업 중 1.4%가 감면승인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그 비중이 0.8%로 낮아졌음
- 도착기준으로 보면 2012년 2.1%에서 2016년 1.3%로 축소됨

○ 실제 감면을 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에서 계속 낮아져 2016년에 1.1%가 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도 빠른 속도로 축소되었음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총액은 2011년에 8,298억원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2016년에는 1,504억원이 되었음

○ 외국인투자 법인의 산출세액 대비 외투감면액 비중을 보면, 2010년에는 9.4%, 2011년에는 9.3%였던 것이 2012년에 5%, 2013년에 5.9%로 대폭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16년에는 2.4%가 되었음

○ 이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중요성 및 실효성이 계속 낮아졌음을 시사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에서 증자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

○ 감면받은 기업에서 증자감면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62.9%에서 2010년 26.7%, 2016년 14.6%로 낮아짐

○ 감면액에서 증자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에 50%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2014~2016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아짐

○ 증자감면의 비중이 축소된 것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기업이 투자를 증대시킬 유인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었음을 시사함

□ 조세감면 항목별로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함

○ 증자감면을 제외하면, 2005년에는 감면기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을 받은

기업이 89.5%를 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받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이 두 가지 항목이 98.2%를 차지함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2008년까지 85~89%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70%대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12년에는 60%대가 되었고, 2015년에는 54%, 2016년에는 47.4%가 됨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2005년 8.9%에서 2009년 21.9%, 2012년 26.5%, 2016년 46.1%로 확대되었음

○ 감면액으로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93.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38.5%로 비중이 낮아졌음

- 한편 외국인투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7%에서 2010년 23.2%, 2016년 46.1%로 크게 확대됨

3.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의 효과성 분석

가. 기존 문헌 조사 - 조세지원이 기업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 조세가 기업의 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Tavares-Lehmann, Coelho, Lehmann(2012)

○ 연구마다 외국인투자, 조세 등에 대한 개념이 다르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세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 즉, 조세는 외국인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여 '한계적(marginal) 역할'을 할 뿐임

○ 정량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 국가의 세부담 완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유의미하게 증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

○ 퍼즐: 정책담당자들은 조세가 외국인투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증적 연구에서는 조세는 한계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공제감면율 분석

□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 중에서 제조업 분야의 산출세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만 추린 표본을 사용하여 공제감면율 설명함수를 추정한 결과,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공제감면율이 22.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의 공제감면율이 평균 50% 수준인데, 다른 기업의 공제감면율이 그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외투감면제도를 폐지하여도 다른 제도의 적용을 통해 현재 받는 공제감면의 절반 정도는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이 분석은 외투감면을 받는 시점의 공제감면율을 검토한 것이므로 외투감면기간이 지나서 외투감면을 받지 않는 기업도 감면기업이라고 보고 장기적인 공제감면율을 계산한다면 외투감면의 순공제감면 효과는 이 표에 나타난 것보다 상당히 작을 것으로 판단됨

<표 1>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친 영향 분석[1] - 전체표본

변수	전체표본		중소기업 표본		중소기업 제외 표본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228	8.14***	0.175	2.17**	0.294	15.28***
ntax	-0.179	-14.05***	-0.283	-14.39***	-0.040	-3.14***
roa	0.193	1.98*	0.880	6.41***	-0.388	-3.48***
size	0.145	11.68***	0.422	17.00***	0.038	3.75***
lev	-0.064	-1.27	-0.239	-3.22***	0.035	0.75
age	-0.004	-4.16***	-0.006	-3.86***	-0.005	-6.28***
상수항	-0.603	-5.54***	-2.992	-13.83***	0.059	0.62
N		2,131		1,220		911
F		52.64***		54.66***		73.21***
Adj. R^2		0.127		0.209		0.323

주: 1)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변수: d 감면여부 가변수(감면=1), ntax 산출세액 크기로 구분한 5분위수(1분위가 가장 작고 5분위가 가장 큼), roa 기업의 총자산수익률, size 기업의 총자산 장부가액의 자연로그, lev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age 기업연령(2016년 기준)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2) 외투감면의 투자증대효과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중 제조업에 속하면서 2011~2016년 동안 평균 총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외투감면이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제조업으로 한정한 것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투자규모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며, 평균 총자산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 Leino and Ali-Yrkkö(2014)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상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국내 실물투자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유형고정자산 증가율 설명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외투감면 여부에 타른 투자지출 비용 격차를 보여주는 가변수의 추정계수가 모두 음수이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1~2016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그 외 국내기업에 비해 투자지출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표 2> 투자지출에 대한 회귀분석[1] - 기업분석,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변수	전체표본		감면 vs. 외투		감면 vs. 국내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006	-0.940	-0.004	-0.430	-0.009	-1.150
Avg_ROA	0.049	1.310	-0.079	-1.620	0.109	2.200*
Avg_LEV	0.026	1.770	0.016	0.780	0.043	2.430**
AGE	-0.001	-3.660***	-0.001	-3.080***	-0.001	-2.010*
상수항	0.035	2.860***	0.054	3.210***	0.019	1.260
N		621		320		446
F		5.310***		3.780***		3.950***
Adj. R^2		0.027		0.033		0.026

주: 1) t통계량 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변수: D 가변수(감면기업 1), Avg_ROA 세전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의 기간(2011~2016년) 평균, Avg_LEV 평균 부채비율, AGE 기업연령
자료: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3) 외투감면의 고용증대효과

□ 국세청에서 제공한 외국인투자업인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외투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투감면을 받지 않은 외투기업의 고용규모를 비교하였음

○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2011~2016년 평균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 감면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 D의 추정계수를 보면, 모형(1)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와 기업연령을 통제한 모형(2)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감면규모가 고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감면규모와 고용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고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표 3> 고용효과 회귀분석[1] - 기업분석, 제조업

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01	0.06	0.17	1.85*
Avg_ROA	0.59	26.50***	0.56	23.37***
Avg_LEV			0.64	3.10***
AGE			0.02	3.98***
상수항	-1.89	-7.88***	-2.26	-8.61***
N		419		419
F		193.2***		358.25***
Adj. R^2		0.631		0.648

주: 1) t통계량 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변수: D 가변수(감면기업 1), Avg_ROA 세전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의 기간(2011~2016년) 평균, Avg_LEV 평균 부채비율, AGE 기업연령
자료: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4. 타당성 분석 및 정책방향

가. 신기술 도입 지원 및 대규모 투자 지원제도

□ 신기술 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폐지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같은 산업기술분야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가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공제율 20%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산업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실적이 없는바, 폐지하여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의 투자가 '대규모'라는 이유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기적 투자증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었으나 2011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고 2017년 말에 일몰 종료됨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과정에서 저평가된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으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나. 특정 지역 투자 지원제도

□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은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안종석·신상화·송헌재(2018)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심층평가를 하였는데, 그 심층평가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좀 더 효율적인 부문에서 비효율적인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남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그 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큰 경우로 국한하여야 함

○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야 함

□ 지역특구 조세지원 사례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의 제도가 운영됨

○ 낙후지역 개발

○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의 기업을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 증대

○ 외국인투자 유치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많은 국가가 특정 지역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를 운영함

○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낙후지역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우리도 이러한 제도는 유지하면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새만금 사업지역, 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 사업지구가 이러한 목적의 특구임

- 단, 지정실적이 없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조세지원은 폐지함

□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의 특구는, 특구의 형성 초기에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으면, 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정한 기간 정부의 지원으로 특구가 성장하고, 상당한 수의 기업이 특구에 집중된 이후에는, 시너지 효과가 기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특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너지효과 목적 특구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형성된지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지났고, 많은 기업이 입주하였으므로 조세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함

○ 지정연도: 대덕 2005년, 광주 2011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 기업 수: 대덕 1,763개, 광주 1,140개, 대구 728개, 부산 891개, 전북 450개, 전체 5,018개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특구 등은 조세지원 실적이 거의 없어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세지원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 특구는 다른 국가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임

○ 국제규범에 비춰 볼 때,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특구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은 낙후지역 개발이나 시너지효과 극대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목 차

Ⅰ. 서 론 ····· 19

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 25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 ····· 27
   가. 제도 개요 ····· 27
   나. 지원대상 업종과 투자규모 ····· 29
   다. 지원대상 지역특구의 지정 목적과 요건 ····· 33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발전과정 ····· 56
3. 요약-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 57

Ⅲ. 외국인투자 동향과 조세감면 실적 ····· 61

1. 외국인투자 동향 ····· 63
   가. 외국인투자 규모 ····· 63
   나. 그린필드 투자 비중 ····· 67
   다. 국가별 구성 ····· 68
   라. 업종별 구성 ····· 70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 71
   가. 조세감면 승인받은 기업 현황 ····· 71
   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 73
   다. 감면항목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 77
3. 요약 ····· 82
   가. 외국인투자 동향 ····· 82
   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 83

Ⅳ. 외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 87

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 89
가. 중국 ····· 89
나. 대만 ····· 92
다. 말레이시아 ····· 92
라. 싱가포르 ····· 98
마. 요약 ····· 100
2.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 102
가. 미국 ····· 103
나. 영국 ····· 104
다. 일본 ····· 106
라. 프랑스 ····· 109
마. 호주 ····· 110
바. 요약 ····· 111

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13

1.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 기존문헌 조사 ····· 115
2. 외국인투자 감면실적과 감면규모별 분포 ····· 118
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효감면율 분석 ····· 120
가. 분석의 의미와 표본의 구성 ····· 120
나. 규모·기업형태별 공제감면율 ····· 122
다. 외투감면기업과 그 외 기업의 공제감면율 격차 - 회귀분석 ····· 126
라. 공제감면율 분석결과 요약 및 분석의 한계점 ····· 129
4.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투자행태 분석 ····· 130
가. 분석의 의의 및 투자지출의 측정 ····· 130
나. 표본과 기술통계 ····· 131
다. 분석모형과 분석결과 ····· 133
라. 투자행태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36
5.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고용효과 분석 ····· 136
가. 분석의 의의 및 고용효과의 측정 ····· 136

나. 표본 및 기술통계 ····· 137
다.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 139
라. 고용효과 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 145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 147

1. 논의 배경 ····· 149
2.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단기준 ····· 150
가. EU 기준 ····· 150
나. OECD 기준 ····· 155
다. EU 기준과 OECD 기준의 비교 ····· 159
3. 국제기준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평가 ····· 163
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지원 ····· 164
나. 투명성 부족 ····· 165

Ⅶ.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 167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 169
가. 정부 개입의 근거 ····· 169
나. 정부 개입 근거의 실효성 ····· 170
2. 정책대상의 적절성 ····· 180
가. 감면대상 ····· 180
나. 감면항목별 적용대상의 타당성 ····· 181
다. 그린필드 투자 지원의 타당성 ····· 183
라. 적용대상 업종 및 투자규모 요건의 타당성 ····· 184
3. 적용방법의 적절성 ····· 187
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방법의 특징 ····· 187
나. 조세휴일형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 188
다. 고용기준 한도의 적절성 ····· 191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 192
가. 현금지원 ····· 193
나. 입지 지원 ····· 195

다. 조세지원 ····· 197

Ⅷ. 정책방향 ····· 199

1. 정책개편의 기본 방향 ····· 201
2.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지원 ····· 202
3. 대규모 외국인투자 지원 ····· 203
4. 특구 투자에 대한 지원 ····· 205

참고문헌 ····· 209

표 목 차

<표 Ⅱ-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대상 지역특구 비교 ····· 35
<표 Ⅱ-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황 ····· 40
<표 Ⅱ-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 44
<표 Ⅱ-4>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 44
<표 Ⅱ-5>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현황 ····· 48
<표 Ⅱ-6> 기업도시 조세지원과 해당 특구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비교 ····· 53
<표 Ⅱ-7> 기업도시 지원 - 조세감면, 보조금 등 ····· 55

<표 Ⅲ-1> 직접투자 유입·유출액의 국제비교 ····· 66
<표 Ⅲ-2> 외국인투자 유입액(신고기준)의 국가별 분포 ····· 69
<표 Ⅲ-3>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분포(2017. 6. 30) ····· 70
<표 Ⅲ-4> 항목별 감면 승인업체 동향(2012~2016) ····· 72
<표 Ⅲ-5> 연도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업체 구성 ····· 73
<표 Ⅲ-6> 외국인투자 신고·도착 기업 중 감면 승인 기업 비중 ····· 75
<표 Ⅲ-7> 감면항목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1) ····· 77

<표 Ⅳ-1> 일본 지역특구 현황 ····· 107

<표 Ⅴ-1>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극단치는 제외) ····· 116
<표 Ⅴ-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 119
<표 Ⅴ-3> 감면기업의 감면 규모별 분포1) ····· 120
<표 Ⅴ-4> 공제감면율 분석 대상 표본기업의 구성 ····· 122
<표 Ⅴ-5> 세액규모별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공제감면율 비교 ····· 123
<표 Ⅴ-6> 기업형태별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공제감면율 비교 ····· 125
<표 Ⅴ-7>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친 영향 분석 - 전체표본 ····· 127
<표 Ⅴ-8>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친 영향 분석 ····· 128

<표 Ⅴ-9>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친 영향 분석 ····· 128
<표 Ⅴ-10> 투자지출 분석을 위한 표본의 구성 ····· 132
<표 Ⅴ-11> 투자지출 증가율 기술통계 - 기업연도 분석단위1) ····· 133
<표 Ⅴ-12> 투자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 기업분석, 총자산증가율 ····· 134
<표 Ⅴ-13> 투자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 기업분석, 유형고정자산증가율 ····· 135
<표 Ⅴ-14> 투자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 135
<표 Ⅴ-15> 고용수준 및 변동의 기술통계 ····· 138
<표 Ⅴ-16> 외투감면이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전체 표본 ····· 140
<표 Ⅴ-17> 외투감면이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제조업 표본 ····· 141
<표 Ⅴ-18> 외투감면 규모가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감면기업 표본 ····· 142
<표 Ⅴ-19> 외투감면과 고용증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전체 표본 ····· 143
<표 Ⅴ-20> 외투감면과 고용증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제조업 표본 ····· 144
<표 Ⅴ-21> 외투감면 규모와 고용증가의 관계 분석 - 감면표본 ····· 144

<표 Ⅵ-1>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정기준 비교 - EU 기준 vs OECD 기준 ····· 160
<표 Ⅶ-2> 외국인 체류 등록자 및 출입국자수 ····· 172
<표 Ⅶ-3> 외국인 상장증권 투자(2017년 말) ····· 173
<표 Ⅶ-4>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황 ····· 174
<표 Ⅶ-5> 감면항목별 지원대상 - 업종과 투자규모 ····· 185
<표 Ⅶ-6> 지출용도별 현금지원에서 국고지원 비중 ····· 195
<표 Ⅶ-7> 특구별 외국인투자 임대료 감면 ····· 196
<표 Ⅶ-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조세지원 ····· 198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외국인투자 유입 - 기업 수 ····· 64
[그림 Ⅲ-2] 외국인투자 유입 - 투자규모 ····· 64
[그림 Ⅲ-3] 그린필드 투자 비중 ····· 67
[그림 Ⅲ-4] 외국인투자기업 중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비중 ····· 74
[그림 Ⅲ-5]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 ····· 76
[그림 Ⅲ-6] 외투법인 산출세액 대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 비중 ····· 76
[그림 Ⅲ-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중 증자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 ····· 79
[그림 Ⅲ-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항목별 비중 – 법인 수(증자감면 제외) ····· 81
[그림 Ⅲ-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항목별 비중 – 감면액(증자감면 제외) ····· 81

[그림 Ⅶ-1]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 수 ····· 171
[그림 Ⅶ-2] 대내외 직접투자와 순대외금융자산 추이 ····· 178

Ⅰ. 서 론

Ⅰ.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과 관세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

□ 2017년 말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EU의 비협조적 국가(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초에 우리 정부가 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비협조적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이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개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 타당성을 분석하며, 또한 관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함

○ 그리고 분석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외국인투자 동향
○ 외국의 유사한 투자지원제도 조사
○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감면제도의 정합성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외국인투자 동향 부분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를 설명하고 특징을 정리함

○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검토함

○ 그리고 외국인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감면실적, 감면과 외국인투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

□ 외국의 유사한 투자지원제도 조사 부분에서는 우선 조세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남아의 경쟁국들 중에서 유사한 제도가 있는 국가들의 투자지원제도를 조사, 정리함

○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자본의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조세지원제도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세제도 개편 시 주로 참고하는 주요 선진국의 투자지원제도도 조사함

□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감면제도의 정합성 부분에서는 EU의 비협조적 국가 지정과 OECD의 BEPS 프로젝트 중 유해조세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EU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2017년 말에 우리나라가 비협조적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개편하겠다는 약속하에 2018년 초에 비협조적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음

○ 이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에 있어, 관련되는 국제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함을 시사함

○ BEPS Action 5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s)와 EU의 관련 규범을 정리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부분에서는 이 제도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와 이 제도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이를 위해 먼저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조사·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자료와 그 외 기업의 자료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어느 정도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함

○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 등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투자와 고용을 더 많이 하였는지 살펴봄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적용대상의 적절성, 적용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을 분석함

○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 자본 유입·유출 등 국제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함

○ 적용대상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를 내국인투자보다 우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외에 각 지원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대상이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분석함

○ 적용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각 제도별로 적용기한, 적용업종 및 투자 규모, 공제한도의 적절성을 검토함

○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부분에서는 조세지원 외에 외국인투자에 제공되는 다른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중복성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함

-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서 국내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봄

□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함

○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국인에게도 동등한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임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분에 따라 각 항목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내국인에게도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함

- 첨단산업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 특정 지역 투자 지원

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

가. 제도 개요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7에 규정되어 있음

□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성장동력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제1호)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체(제2호)
○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및 개발사업시행자(제2의2호 및 제2의3호)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제2호)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제2호, 제2의4호)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제2호, 제2의8호, 제2의9호)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의5호)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제2의6호, 제2의7호)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제조업, 물류기업)(제3호)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은 7년형과 5년형으로 구분됨(법 제121조의2 제2항)

○ 7년형: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세액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사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으로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역 관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1)]

○ 5년형: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세액 전액 감면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

- 7년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5년형이 적용됨

○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년까지 감면 또는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을 개시한 이후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함

□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 총합계가 감면한도액 즉,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

○ 투자금액 한도: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5년형 감면은 40%

○ 고용기준 한도: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5년형 감면은 40%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1인당 1,500만원
- 그 외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에서 7년형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에 감면에 적용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제121조의3)

○ 법인세 등 감면에서 5년형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에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됨

---

1) 이 범주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지원내용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같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나. 지원대상 업종과 투자규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는 각 감면항목별로 조세감면을 받는 기업이 갖춰야 할 요건이 규정됨

□ 7년형이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함

○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규정됨

○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함(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해당되는 기술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야 함

□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다음과 같은 업종과 외국인투자 규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달러 이상

- 제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수련시설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2)]

○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일 것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일 것
- 위에서 열거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제2의2호)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제2의8호)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형 조세감면이 적용됨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제조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수련시설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 귀속시설이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함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의료기관

○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00만달러 이상일 것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의5호)의 경우에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이나 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5년형 조세감면을 적용받음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제조업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기업도시 입주기업(제2의6호)은 다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도시에 새로이 공장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5년형 조세감면을 적용받음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골프장업은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 종합유원시설
-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궤도사업
-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00만달러 이상
- 연구개발업

□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의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을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새로 설지하는 경우에 5년형 감면을 적용받음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제2의3호), 기업도시(제2의7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제2의9호)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형 조세감면을 적용받음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 해당 지역의 총개발사업비 미화 5억달러 이상

□ 단,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제2의4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조건이 적용됨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 해당 지역의 총개발사업비 미화 1억달러 이상

다. 지원대상 지역특구의 지정 목적과 요건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지원대상 항목별로 각각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대상 투자 규모를 규정하고 있음

○ 항목별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크지만, 항목별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음
○ 특정 지역(이하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경우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특구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특구별로 고유의 목적과 입주요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다음에서는 지역특구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규정된 지정목적과 지정요건에 대해 살펴봄

□ <표 Ⅱ-1>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각 지역특구의 법적 근거와 지정목적, 지정위치, 입주자격 등을 정리하였음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특정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특구 지원이라기보다는 대규모 투자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소절의 지역특구 제도에 포함하지 않음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 즉, 해당 기업이 입지한 장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함

○ 그러므로 업종요건과 업종별 투자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전국 어디서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지역특구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사업지역, 기업도시임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기존에 조성이 이루어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저리로 임대할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많은 경우에 토지 등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의 공급을 필요로 함[3)]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며, 대부분 제조업으로 구성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1989년 이후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급속하게 감소하자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하였음

3) KOTRA(2017), p. 53

<표 Ⅱ-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대상 지역특구 비교

구분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		경제자유구역 (FEZ)	새만금	기업도시
		산업 단지형	공항·항만형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지정 목적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
지정 위치	산업단지 내	항만, 공항 주변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 터미널등	국제공항·항만 주변지역	새만금 사업지구	기업도시 개발지구
지역 특성	임대단지운영 원칙	비관세지역		특별행정구역 수준(자치단체 조합)	산업용지는 FEZ와 동일	민간주도 개발
지정 권자	시·도지사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	산자부 장관		산자부 장관 (경자구역 위원회 심의)	새만금개발청장(새만금 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관리 권자	국가산단: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외: 시·도지사	산자부 장관		경자구역청	새만금개발청	기업도시관리 위원회
입주 자격	• 외투금액 1억원↑ 외투지분 30%↑ • 제조업, 물류업 등 • 계약후 5년내 임대 부지가액 이상의 FDI	• 수출 주목적 내외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
조세 감면 요건	• 제조업: 1천만 달러↑ • 물류업: 500만 달러↑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조특법 제121조)		• 제조, 관광: 1천만 달러↑ • 물류, 의료기관: 500만달러↑		• 제조, 과학기술 서비스 등: 1천만달러↑ • 물류: 500만달러↑ • R&D: 200만달러↑

주: 1) 10년간 100% 감면율 적용, 그 후에는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감면 적용
2) 소재·부품전용단지의 경우 100% 감면율 적용

자료: KOTRA(2017), p.64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시·도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정함(「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7조)

○ 신규지정의 경우, 투자신고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 지정최소규모가 8만㎡ 이상일 것[4)]

-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80% 미만인 경우 신규 또는 변경지정을 제한함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30% 이상이고, 명시적 입주수요가 50%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지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정면적 대비 입주율 80% 이상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이어야 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동 지침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 기존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새롭게 신축하거나 별도의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것[5)]

- 공장시설(제조업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허용업종에 대해서만 입주할 수 있는데, 입주대상 업종은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제조업 등 다음의 어

---

4) 2018년 지침 개정 시 대규모 외투단지 지정으로 인한 장기 미임대 부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급이 제한적인 산업용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규모를 최소화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최소규모 요건을 8만㎡로 단일화함(「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재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3.22. 접속)

5)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함

느 하나의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함(동 지침 제11조)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기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중 첨단소재·부품 기업의 입지에 특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재·부품 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함

○ 구미, 포항, 익산, 창원, 부산미음 등 5개 지역을 소재·부품 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형 수요기업에 근접하고,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 및 물류망 이용에 용이하며, 주요 도시와 인접하여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입지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지정함
○ 소재·부품 전용단지에 대해서는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일 경우 부지임대료를 100% 감면함(일반적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75% 감면)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관세 등 조세를 감면할 뿐만 아니라 부지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 업종과 투자규모,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부지임대료를 50~100% 감면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2017년 말 기준 총 26개가 지정되어 운영됨

○ 1994년에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이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에 대불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 이후 매년 1~2개씩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7년 송산2-1과 광양 세풍이 추가되어 총 26개 지역이 지정됨
○ 전체 지정면적은 8,086.2㎢에 이르며, 전체 입주율은 74.4% 수준임
○ 전체 입주기업 수는 205개사로 파악되며, 고용인원은 17,111명 수준임

2)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임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재정과 경영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경제자유구역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학교를 신설하거나 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특례를 적용함

□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에 따라 처음 추진됨[6)]

○ 기본구상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에 따라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이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2018년 현재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 2003년 최초 지정: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 2008년 추가 지정: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 2013년 추가 지정: 동해안, 충북

□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7)]

---

6) 감사원(2015), p. 5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7&ccfNo=2&cciNo=3&cnpClsNo=3, 2018.3.16. 접속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교통·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경제자유구역은 조세감면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경영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제공됨
○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을 감면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재정지원이 제공됨
-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고지원,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매각, 의료·교육·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기업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기간 확대, 입주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배제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됨
- 외국인투자금액 5억달러 이상인 경우 카지노업 허가 승인
○ 실시계획 승인으로 38개 법률상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며,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함

□ 2018년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총 8개 구역 95개 지구가 지정됨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있으며, 최근 중복지정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구조조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는 2017년 말 기준 전체 4,667개로 파악되며,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276개로 5.9%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2,263개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1,517개로 그 뒤를 이음

○ 황해, 동해안권,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입주기업이 50개 미만임

<표 Ⅱ-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황

(2017.12월 기준, 단위: 개)

구분	입주기업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합계
인천	2,146	117	2,263
부산·진해	1,396	121	1,517
광양만권	452	24	476
대구경북	337	12	349
황해	-	-	-
동해안권	18	-	18
충북	42	2	44
전체	4,391	276	4,667

주: 고용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단 외투기업은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협조자료

3)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

○ 국가 내에서 교육,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관세유보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정하는 지역임[8)]

-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선공급하여 입주와 동시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고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특성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함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입주로 새로운 자본재 도입과 첨단기술 이전, 선진 경영 노하우 전파 등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

□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마산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최초로 출범하였음

○ 도입 초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2000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무역, 물류, 유통,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음

○ 2004년에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면서 동북아 경제·물류중심국가로의 발전을 꾀함[9)]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중심,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두 지역이 각각 분리·운영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사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가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함

□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유형별로 관리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7개): 김제,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6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인천국제공항

○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함

---

8)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홈페이지, 자유무역지역이란, http://www.motie.go.kr/ftz/masan/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 2018.3.22. 접속

9) 이상영(2011), p. 41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10)]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사업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1)]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지식서비스산업 사업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사업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12)]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관련 사업
- 연료·식수·선식(船食) 및 기내식 등 선박·항공기용품의 공급업
-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항만용역업, 교육·훈련업, 유류판매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

---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http://www.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197&ccfNo=2&cciNo=3&cnpClsNo=2&csmttl=%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C%9E%90, 2018.3.22. 접속

11)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로 함

12)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로 함

○ 중앙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다음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 예외적으로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위의 수출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연면적의 30% 이내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13)]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관세 등을 유보하고 관세영역(자유무역지역 외 국내지역)으로 반출할 때 부과함

○ 수출용 원재료, 입주업체 간 공급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임대료를 부지가액의 1% 수준(「국유재산법」상 임대료는 2.5%)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장애인·유공자·고령자 의무고용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함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2017년 6월 기준 총 24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고용인원은 8,995명에 달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140개이며, 입주기업의 57%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마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109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44%를 차지하며, 그 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10~30개 수준으로 많지 않음

13)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5.do?brf_code_v=5#header, 2018.3.22. 접속

□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2017년 6월 기준 436개이며, 이 중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기업이 308개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체 고용인원은 11,917명이며 부산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고용인원이 10,3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Ⅱ-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2017.6월말 기준)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지정일	'70.1.	'00.10.	'02.11.	'05.12.	'05.12.	'08.12.	'09.1.
면적(천m^2)	957	1,256	1,157	248	344	819	991
입주업체(개사)	109	29	29	17	13	34	16
-(외투기업, 개사)	(62)	(13)	(19)	(11)	(10)	(10)	(15)
입주율(%)	94.7	88.6	95.8	71.0	61.3	92.6	37.1
고용인원(명)	5,077	1,697	982	159	230	705	14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5.do?brf_code_v=5#header, 2018.3.22. 접속

<표 Ⅱ-4>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2017.6월말 기준)

구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	'02.1.	'03.1.	'08.12.	'09.3.	'05.4.(1단계) '07.12.(2단계)
면적(천m^2)	9,364	8,880	1,964	840	1,429	3,050
입주업체(개사)	68	41	1	3	15	308
-(외투업체, 개사)	(68)	(14)	(-)	(-)	(9)	(30)
입주율(%)	100	69	100	100	100	97
고용인원(명)	3,048	699	35	-	852	7,28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5.do?brf_code_v=5#header, 2018.3.22. 접속

4) 새만금 사업지역

□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91㎢와 호소 118㎢를 조성하고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최초에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농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에서 1971년에 시작되었음

○ 이후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에 따라 농지개발의 당초 목적에서 친환경 복합용도의 도시개발로 전환됨

- 초기 계획은 농지 100%였으나 도시용지 70%, 농지 30% 수준으로 변경됨

□ 1989년 11월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91년 11월 28일에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측이 승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됨

□ 이후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면서 농지의 비율이 30%까지 축소되었으며, 새만금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함

○ 2007년 12월 27일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2008년)하는 등 새만금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08년 내부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농지가 30%로 축소되고 산업용지 등 복합용지를 70%까지 확대함

○ 2010년 4월 총길이 33.7㎞의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됨

○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하고 2012년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에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하는 등 새만금 개발사업의 방향을 확정하여 추진함

□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투

자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함

○ 이 조세지원은 새만금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는 데 목적이 있음

- 새만금 사업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공동 사업시행자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간 법인세 50% 감면, 그 후 2년간 25% 감면 혜택이 있음

- 외국인투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내 기업에 적용됨

□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가 적용됨

○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음

- 제조업: 외국인투자 1천만달러 이상
- 물류업: 외국인투자 500만달러 이상
- 연구개발: 외국인투자 100만달러, 이 지역 상시고용 연구인력 10명 이상

○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으로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개발사업의 경우에 외국인투자 규모 3천만달러, 총사업비 5억달러,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이면 3년간 법인세 50% 감면, 그 후 2년간 25% 감면 혜택이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가 감면되며, 외국인 학교 및 병원의 설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

□ 새만금 사업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며,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2017년부터 국내기업에 대해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년간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논의 중임[14)]

□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르면 용지조성계획은 2단계로 구분하고, 개발사업은 3단계로 세분하여 추진함

○ 1단계 용지조성계획은 2020년까지이고, 2021년 이후에는 2단계 계획을 추진함

○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된 1단계에서는 경협특구 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고, 2018~2022년까지는 2단계로 민간투자를 확산하며, 2023년 이후 3단계 개발사업에서는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임

□ 총사업비는 22조 2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국비가 10조 9천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 3,300억원으로 구성됨[15)]

○ 2017년까지 투입규모는 5조 4천억원(국비 4조 1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민자 8천억원) 수준이며, 단계별로 2020년까지 13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2021년 이후 9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국비(10조 9천억원)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농생명·환경생태용지 조성(3조 4천억원), 도로 및 방파제 등 기반시설 조성(5조원), 수질개선(2조 1천억원), 신교통수단 등 기타사업(4천억원)임

○ 용도별로 살펴보면 용지조성에 10조 9천억원, 기반시설에 6조 6천억원, 수질개선에 2조 9천억원, 기타 1조 8천억원이 예상됨

□ 용지조성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고 있음

○ 대규모 투자이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매립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는 참여가 저조한 형편임

○ 농생명용지는 농림부, 환경생태용지는 환경부, 산업연구용지 내 산업단지는 농어촌공사, 관광레저용지 내 관광단지는 전북개발공사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3월 현재 사업시행자와 추진현황은 <표 Ⅱ-5>와 같음

14) 매일경제, 「새만금 입주 국내 기업도 임대료 감면」, 2018.2.1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14841, 2018.3.27. 접속)

15) 새만금개발청, 「2018년도 업무계획」, 2018.2, p. 3

<표 Ⅱ-5>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현황

(2018.3월 기준)

대상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현황
농어촌공사	산업단지	18.5㎢	'08~'18년	25,498억원	- 1공구 매립·조성완료 - 2공구 매립완료 후 용지 조성 중 - 5공구, 6공구 매립 중
전북 개발공사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1.1㎢	'08~'22년	2,548억원	- 매립 완료, 조성공사 실시계획 수립 추진('18.12)
보성·한양 컨소시엄	관광레저용지 (신시야미)	1.9㎢	'18~'22년	3,613억원 (직접투자 1,184억원)	- 사업시행 협약 체결('17.9) 후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중
농어촌공사	농생명용지	94.3㎢	-	약 2.9조원	- 11개 중 9개 공구(81.4㎢) 용지 조성 중
새만금 지방환경청	환경생태용지	0.81㎢	'11~'20년	577억원	- 실시계획 승인('17.10) 및 공사 착공('18.2)

자료: 새만금개발청, 내부자료

□ 2018년 3월 기준 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함

○ OCI(주):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내 571,352㎡, 토지매매 계약('13.3), 착공(미정/투자업종 변경 검토 중)

- 폴리실리콘 제조 시설, 사업비 약 2.2조원, 고용 약 2,000명

○ OCISE㈜ 열병합발전소 건설: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162,153㎡, 준공('16.4)

- 지역 냉·난방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사업비 9,572억원, 고용 100명

○ 도레이(일본):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214,951㎡, 준공('16.7)

- PPS 수지 및 원료 생산 시설, 사업비 3,000억원, 고용 300명

○ 솔베이 실리카(벨기에):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69,935㎡, 준공('16.10)

- 친환경타이어 소재 실리카 생산(세계 5대 화학 그룹), 사업비 1,200억원, 고용 600명

○ 이씨에쓰㈜: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6,612㎡, 준공('15.9)

- 열교환기, 탱크류 제조 시설, 사업비 28억원, 고용 11명

5) 기업도시

□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1호)

○ 개발의 수요자 즉, 기업이 개발 당사자가 됨

○ 산업, 연구, 관광 등 주요 산업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 다른 단지와 달리 주거, 교육, 의료를 종합한 자족적 도시를 목표로 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행될 것

□ 개발구역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관광 중심의 기업도시는 150만제곱미터,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의 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동법 제6조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특정 요건에 따라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2005년과 2006년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 6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두 개 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음[16)]

○ 무주는 주 출자자인 대한전선이 2008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무주군이 대체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취소됨

○ 무안은 사업지구를 두 개로 분할하여 국내단지와 한중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두 개의 단지 모두 사업이 취소됨

16) 국토연구원(2013), 국토교통부(2014), p. 23에서 재인용

- 국내단지는 사업시행자인 ㈜무안기업도시개발이 2009년에 감자를 결의하고 2010년에 정산과정을 거쳐 해체되었음
- 한중산업단지의 시행자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도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측이 투자를 철회하자 2013년 2월 사업이 취소됨

○ 영암·해남지구의 경우 4개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 하나인 부동지구는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2012년 1월에 사업을 반려하고 3개 지구만 추진함

□ 2018년 3월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지구에서 기업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17)]

○ 충주: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주)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주), 현대자동차그룹, ㈜엠코, 포스데이타(주), 금융권 및 충주시 등

○ 원주: 지식기반형
- 참여기업: 롯데건설(주), 경남기업(주),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강원도, 원주시

○ 태안: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현대건설(주)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 참여기업: 전경련 컨소시업, 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함

○ 무안기업도시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계획되었으나 지정해제됨에 따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충주기업도시로, 2012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조성을 완료할 계획임[18)]

---

17) 각 지구의 참여기업 명단은 건설교통부(2007), p. 9에서 인용
18) 충청북도 기업도시 개요, https://www.chungju.go.kr/www/contents.do?key=573, 2018. 3. 19. 접속

○ 충주기업도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18개의 업체가 충주신도시에서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업체가 1개, 설계 중인 업체가 6개로 총 25개의 업체가 가동·건설·설계중임[19)]

- 산업용지 중 5곳은 미분양 상태임

□ 원주기업도시는 토지보상비 증가와 일부 출자자 워크아웃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2년 정도 지연되었음[20)]

○ 2015년 1단계 준공, 2017년 2단계 준공 이후, 2018년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할 예정임

○ 2018년 3월 현재 13개사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됨[21)]

○ 2016년까지 산업용지 분양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최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KTX 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에 힘입어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2017년 말 기준 44개 필지 중 37개 필지가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22)]

- 면적기준으로 분양률이 2016년 말 50% 수준에서 2017년 말 74.8%로 확대됨[23)]

□ 태안기업도시(라티에라)는, 지식기반형인 충주 및 원주 기업도시와 달리 관광레저형임

○ 2008년에 준설 및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하여, 2013년에 화훼보존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2014년에 현대더링스 골프장(대중제 36홀)을 오픈하였고, 2016년에 현대솔라고 골프장(대중제 36홀)을 오픈하였음[24)]

○ 2017년에 관광숙박시설 테라스 골프빌리지를 준공하였고, 그해 12월에는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실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첨단연구시설 및 산업·연구 클러스터 등 부지조성공사를 2020년까지 계속할 예정임[25)]

□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관광레저형으로서 삼포, 삼호, 구성, 부동의 4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지구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하고 3개 지구만 추진함

---

19) 충주기업도시 제공 내부자료
20) 국토교통부(2014), p. 24.
21) 원주기업도시 내부자료
22) 강원도민일보 기사,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 가속도 붙는다」, 2017. 7. 25.
23) G1tv 뉴스, 「원주기업도시 "공장 짓고 있다더니..."」, 2017. 11. 20.
24)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 홈페이지, http://www.latierra.kr/business/pass, 2018. 3. 19. 접속
25)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 홈페이지, http://www.latierra.kr/business/pass, 2018. 3. 19. 접속

○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진척이 잘 되지 않다가 2012년에 솔라시도로 명칭을 개정하고 2013년 12월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기공식을 하였음[26]

○ 기공식 이전인 2012년에 1단계사업으로 F1국제자동차 경주장을 건립하였으며, 제3차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였음

○ 2단계 사업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구성지구 공정률은 15.3%, 삼호지구 공정률은 12.7%인 것으로 알려짐[27]
- 2018년 9월에 주택용지를 일부 분양할 예정이며, 12월에 골프장 2개소를 준공할 예정임

○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개발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28]

□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기업도시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음

○ 기업도시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낙후지역에 입지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지적됨[29]

○ 2015년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편 후에도 새로운 기업도시 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음

□ 2015년의 제도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30]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충청권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도시 개발을 허용함

○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함

○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26) 솔라시도 홈페이지, http://solaseado.go.kr/new/s01/05/index.php, 2018. 3. 19. 접속
27) 연합뉴스 보도,「여의도 10배 면적 전남 기업도시, 골프장 도시 전락 우려」, 2017. 11. 15.
28) 전라남도 홈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http://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 jeonnam0605020200, 2018. 3. 19. 접속
29) 국토교통부(2014), p. 24.
30) 국토교통부,「기업도시 간담회」자료, 2016.3.30., pp. 11~14

○ 그 외에 용지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사업시행자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율 인하, 건폐율·용적률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개선조치가 있었음

□ <표 Ⅱ-6>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 조세지원과 동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 조세지원은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도시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 동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에 따르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규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됨

<표 Ⅱ-6> 기업도시 조세지원과 해당 특구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비교

	기업도시 조세지원 (조특법 제121조의17)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조특법 제121조의2)**
기업도시 창업기업	★ 다음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 제조업 등: 투자규모 100억원 - 연구개발업: 투자규모 20억원 - 물류업: 투자규모 50억원 ★ 감면규모: 3년 100%, 2년 50%	★ 다음에 해당되는 입주기업 - 제조업 등: 외투 1천만달러 - 연구개발업: 외투 200만달러 - 물류업: 외투 500만달러 ★ 감면규모: 3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사업	- 개발사업비 1천억원 ★ 3년 50%, 2년 25% 감면	- 외투 3천만 달러 - 총사업비 5억 달러 - 외투비율 50% ★ 3년 100%, 2년 50% 감면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입주기업'에 적용되고, 제121조의17에 규정된 기업도시 조세지원은 창업·신설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121조의17의 요건이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창업·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업종 제한과 요구하는 투자규모는 내·외국인 간 큰 차이가 없음

○ 업종 요건은 같으며, 요구하는 투자규모도 유사한 수준이고, 지원규모도 같음

□ 한편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두 배 수준의 조세지원을 하며, 요구 조건은 더 엄격함

○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지원의 경우에는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를 감면함

○ 한편 외국인투자 규모가 3천만 달러, 총사업비가 5억달러,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가 감면됨

□ <표 Ⅱ-10>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세·법인세 지원 외에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정리하였음

□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혜택이 큰 것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업을 하던 기업이 수도권 밖의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이 있음

○ 기업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 외에 개발부담금을 포함하여 6개의 부담금, 사용료가 감면됨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는 면제됨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됨

□ 그 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국고지원이 있음

○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우대지원대상이 되어 지원비율이 일반지역에 비해 최대 10%포인트 높음

- 토지매입가액: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은 최대 75%

○ 입지지원으로 국·공유 용지 임대료가 20% 감면됨

○ 주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함

<표 Ⅱ-7> 기업도시 지원 - 조세감면, 보조금 등

지원항목(근거법령)		지원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영업하던 중소기업이 그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 ★ 6년간 법인세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간 영업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이나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 6년간 법인세 100%, 3년간 50% 감면
기업도시 지원	지방세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56조)	★ 지방소득세 지원: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동일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창업·신설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모두 적용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지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 토지매입가액: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 설비투자금액: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19%, 대기업 11% ★ 국고보조비율: 최대 75%
	입지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 국·공유 용지 임대료 20% 감면 ★ 내국인투자 외국인투자 불문하고 입주기업에 적용
	국고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	★ 주진입도로 건설비 50% 국고지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교통부(2016), pp. 3～5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발전과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과 관세 등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생산 및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당시에는 국내 기술발전 및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선별하여 대폭적인 조세지원을 하였음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세액을 전액 면제하고, 2년간 3분의 2, 1년간 3분의 1 감면하였음

□ 198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할 때까지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시장 개방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음

○ 지원대상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으로 축소됨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5년간 세액이 전액 면제되고, 그 후 3년간 50%가 감면됨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됨

□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98년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존의 지원제도도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음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됨

○ 동시에 도소매·금융, M&A 등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분야의 투자시장을 대폭 개방하였음

□ 이후 각종 지역개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조세지원에 반영되어 다양한 특별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됨

○ 2000년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관세자유지역 등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음

○ 2003년에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이 5년 100%, 2년 50%로 축소되고, 5년형 감면(3년 100%, 2년 50%)이 적용되는 다양한 지역특구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도입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 기존 특구: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 2005년에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산업서비스업이 추가되고, 5년형 감면이 적용되는 몇 개의 특구 지원이 신설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 최근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2011년에 고용실적을 반영하여 감면 규모를 제한하는 감면한도제를 도입함

○ 2014년에 배당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함

○ 2016년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대상과 같은 신성장동력기술 수반사업으로 대폭 조정하였음

3. 요약 -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할 때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당시에는 국내 기술발전 및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승인되었음

○ 198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할 때까지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시장 개방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음
- 고도기술 유입, 수출 목적의 외국인투자에만 제한적으로 감면이 허용됨

○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존의 지원제도도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음

- 이후 각종 지역개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조세지원에 반영되어 다양한 특별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됨

○ 최근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고용실적을 반영하여 감면 규모를 제한하는 감면한도제를 도입하였으며, 고도기술수반사업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대상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으로 대폭 조정하였음

□ 2018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외국인투자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지원임

○ 내·외국인 공동투자의 경우 소득 중 외국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만 감면됨

□ 둘째, 법인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원임

□ 셋째, 지원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신기술 도입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사업

○ 대규모 투자 지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지원: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넷째, 신기술 도입과 대규모 외국인투자 지원은 7년형이 적용되며, 특정 지역 투자지원은 5년형이 적용됨

□ 다섯째, 지원항목별로 지원대상 업종과 외국인투자 금액 요건이 규정됨

○ 지원대상 업종은 대체로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에 집중되며, 그 외에 항목에 따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휴양시설·복지시설·수련시설 운영업, 문화업 등이 포함됨

○ 지역 특구의 경우 특구에 부합하는 업종이 지원대상이 되며, 7년형 지원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외국인투자 규모 요건이 낮음

□ 여섯째, 투자지원이긴 하지만 고용기준의 지원한도가 적용됨

○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가 모두 적용됨

○ 고용기준 한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이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장애인, 청년, 노령자에 대해서는 상향된 한도가 적용됨

Ⅲ. 외국인투자 동향과 조세감면 실적

Ⅲ. 외국인투자 동향과 조세감면 실적

1. 외국인투자 동향

가. 외국인투자 규모

□ [그림 Ⅲ-1]과 [그림 Ⅲ-2]에서는 2005년 이후 연도별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를 기업 수와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그림에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의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신고기준은 연도별로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도착기준은 연도별로 실제로 들어온 외국인투자를 정리한 것임

○ 기업 수의 경우 도착기준 기업 수가 신고기준 기업 수보다 30~40% 정도 적으며, 투자금액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격차가 나지만 연도별 변화가 상당히 큼

□ 외국인투자 기업 수를 보면,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신고기준 기업 수는 2005년 3,671개에서 2017년 2,774개로 25% 정도 축소되었음

- 특정한 연도에 크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도착한 외국인투자 기업 수는 2005년 2,715개에서 2017년 1,641개로 약 40% 축소되었음

○ 전반적으로 도착기준 기업 수가 신고기준 기업 수보다 30~40% 정도 적으며, 최근에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에는 도착기준 기업 수가 신고기준 기업 수의 70%였는데, 이후 매년 격차가 확대되어 2017년에는 도착기업이 신고기업의 59%가 됨

□ 한편 외국인투자 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고기준 금액은 2005년 11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달러로 거의 두 배 수준이 되었으며, 도착기준 외국인투자 금액은 2005년 96억달러에서 2017년 133억달러로 1.4배로 증가하였음

○ 평균적으로 보면 도착금액은 신고금액의 65% 수준이지만, 연도별 격차는 상당히 큼

[그림 Ⅲ-1] 외국인투자 유입 - 기업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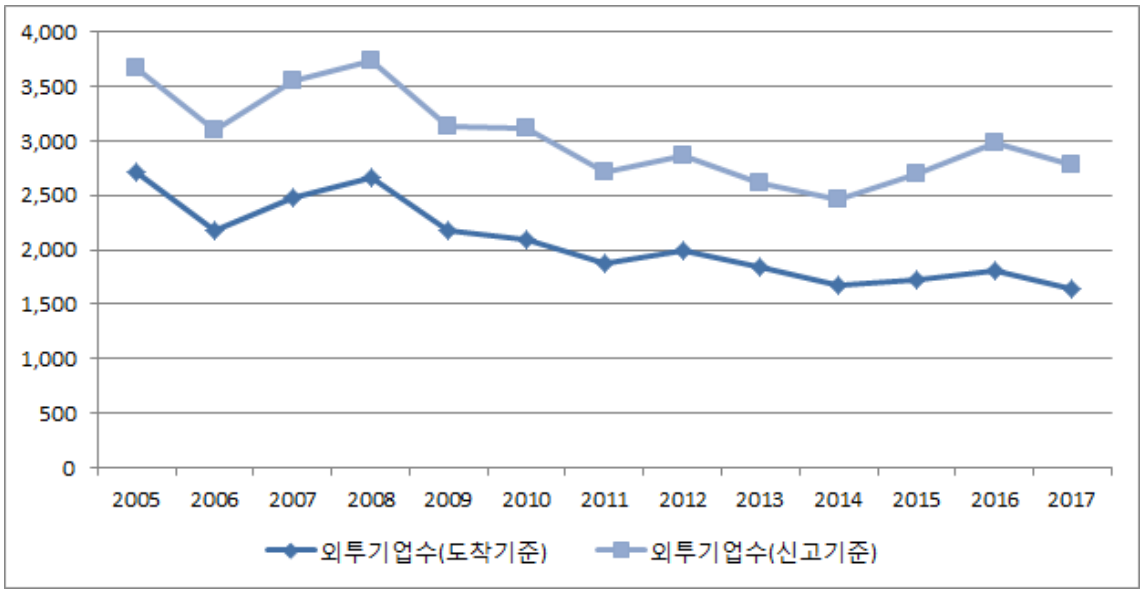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8. 3. 19 접속

[그림 Ⅲ-2] 외국인투자 유입 - 투자규모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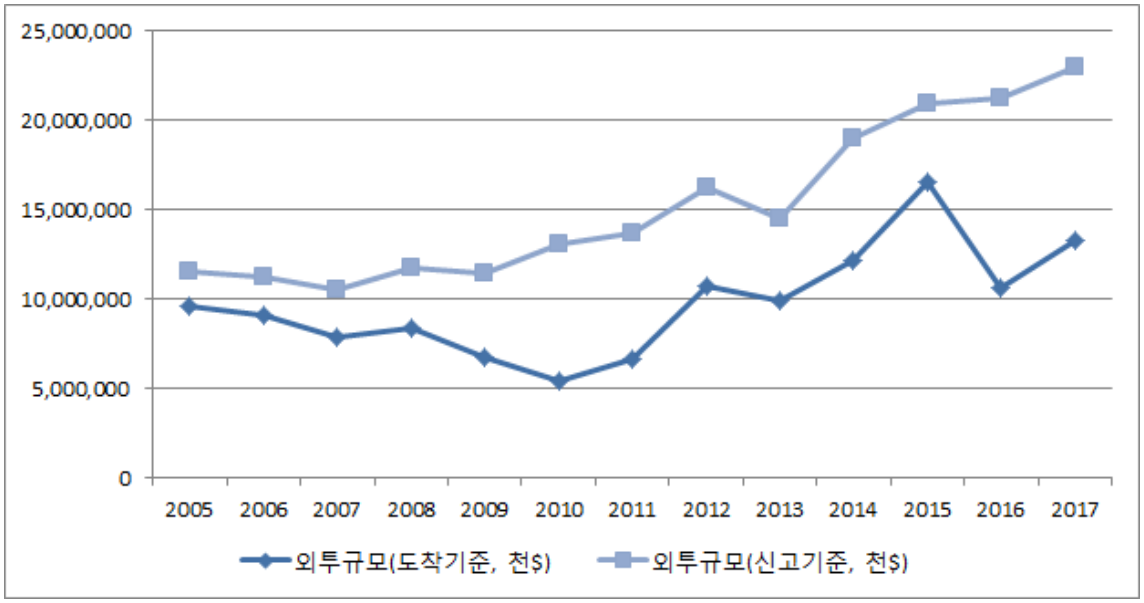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8. 3. 19 접속

□ 외국인투자 기업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 데 비해 외국인투자 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외국인투자 건수는 감소되지만 건당 투자금액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의미함

□ 기업 수의 경우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이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되지만, 외국인투자 금액은 연도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평균적으로 도착금액이 신고금액의 65%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0년에는 42%였으며, 2011년에도 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음

○ 최근에 기업 수로 보나 투자금액으로 보나 신고기준과 도착기준 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임

- 2013년에 도착기준 기업 수가 신고기준 기업수의 70% 였는데, 2017년에는 59%로 낮아짐
- 투자금액은 2013년에 도착금액이 신고금액의 68%였는데, 2017년에는 58%가 됨

□ <표 Ⅲ-1>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정리하였음

○ 처음 세 개의 열에서는 2014~2016년 연도별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각 연도의 총고정자본형성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으며, 그 다음 열에서는 2016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 누적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오른 쪽의 두 개의 열에서는, 참고하기 위하여 2016년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의 총고정자본형성액 대비 비율과 2016년 말 기준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의 GDP 대비 비율을 정리하였음

□ 우리나라의 2014~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율은 1~2.6%로 전세계 평균(6.8~9.5%), 선진국 평균(6.0~11.4%), 개발도상국 평균 7.1~8.1%) 보다 상당히 낮음

○ 국가별로 보아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표에 열거된 국가 중 독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4개 국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율을 보임

□ 2016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 유입액 스톡(stock)의 GDP 대비 비율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13.1%로 전세계 평균 35%, 선진국 평균 37.9%, 개발도상국 평균 30.4%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3.8%)뿐이며, 대만(14.2%)과 인도(14.1%)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표 Ⅲ-1> 직접투자 유입·유출액의 국제비교

(단위: %)

구분	FDI 유입액/총고저자본형성 (flow)			FDI 유입액/ GDP (stock)	FDI 유출액/ 총고정자본 형성 (flow)	FDI 유출액/ GDP (stock)
	2014	2015	2016	2016	2016	2016
전세계	6.8	9.5	9.4	35.0	7.9	34.6
선진국	6.0	11.2	11.4	37.9	11.6	44.8
프랑스	0.4	9.0	5.4	28.3	10.8	51.1
독일	0.5	5.0	1.4	22.2	5.0	39.4
아일랜드	71.4	312.5	27.0	286.0	53.9	283.6
이탈리아	6.4	6.3	9.2	18.7	7.2	24.9
네덜란드	33.6	47.1	60.1	103.9	113.6	162.9
영국	9.0	6.8	57.9	45.5	-2.9	54.9
스위스	4.8	43.9	-16.5	120.2	19.1	171.4
캐나다	13.6	11.3	9.6	62.5	18.9	79.8
미국	5.0	9.7	10.8	34.4	8.2	34.4
호주	10.3	6.0	15.3	45.8	1.9	31.9
일본	0.9	-0.2	1.0	3.8	12.7	28.4
개발도상국	7.4	8.1	7.1	30.4	4.2	19.8
브라질	14.7	19.6	19.6	34.8	-4.2	9.6
멕시코	10.1	12.8	11.1	45.3	-0.3	14.2
중국	2.7	2.8	2.8	12.1	3.8	11.4
홍콩	165.1	251.6	156.6	496.1	90.5	476.5
한국	2.3	1.0	2.6	13.1	6.5	21.7
대만	2.5	2.2	7.7	14.2	16.5	60.7
인도	5.6	7.2	7.0	14.1	0.8	6.4
인도네시아	7.5	5.9	0.9	25.2	-4.1	6.3
말레이시아	12.4	14.3	13.0	41.0	7.3	42.8
싱가포르	89.8	91.2	83.4	369.2	32.4	229.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외국인직접투자 참고자료집』, 2017. 9. pp. 21~22, 25~26

□ 참고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의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해외직접투자 유출액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에 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의 비율이 낮은 국가도 상당수 있음

나. 그린필드 투자 비중

□ [그림 Ⅲ-3]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그린필드 투자는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 국내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투자를 의미하며, 그린필드가 아닌 투자는 국내기업을 구입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M&A형 투자라고 함

□ 도착기준으로 보면, 외국인투자 유입액 총액에서 그린필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5~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린필드 투자 비중의 2005~2017년 평균은 59.5%임

[그림 Ⅲ-3] 그린필드 투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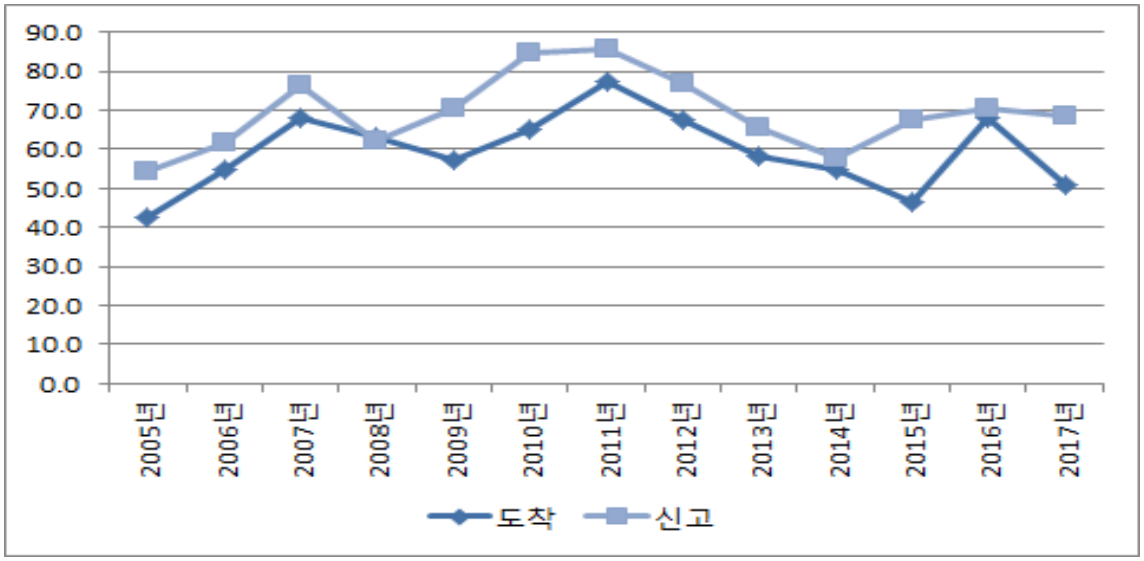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8. 3. 19 접속

□ 신고기준으로 보면, 그린필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80% 수준이며, 2005~2017년 평균은 69.4%임

□ 전반적으로 신고기준에 비해 도착기준의 그린필드 투자비중이 낮은데, 이는 M&A형 투자의 신고 이행률이 그린필드 투자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다. 국가별 구성

□ <표 Ⅲ-2>에서는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많이 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 규모를 비교하였음

○ 2000~2017년의 투자액 합계를 기준으로 총외국인투자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인 국가를 추출하여 외국인투자 총액에서 개별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도착기준의 경우 국가별 투자규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부득이 신고기준 자료만 사용함

□ 2000～2017년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총 19개 국가임

○ 미국이 22%를 차지하여 1위이며, 그다음이 13.6%를 차지한 일본임

○ 그 외에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영국, 홍콩이 각각 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독일은 4.1%, 몰타는 3.8%, 캐나다는 3.1%를 차지함

○ 프랑스,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가 각각 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아일랜드, 벨기에, 호주가 그 뒤를 이었음

□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19개 국가 중 11개 국가는 조세회피처(tax haven)이거나, 그에 유사한 수준의 다양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소규모 국가들임

○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몰타,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아일랜드, 벨기에

<표 Ⅲ-2> 외국인투자 유입액(신고기준)의 국가별 분포

(단위: 백만달러, %)

국가명		2000-2017		국가별 비중 추이			
		투자금액	비중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7
전체		256,492	100.0	100.0	100.0	100.0	100.0
1	미국	56,537	22.0	31.4	16.9	19.8	21.3
2	일본	34,872	13.6	13.5	14.8	18.4	7.3
3	네덜란드	21,969	8.6	9.0	12.4	7.6	6.1
4	싱가포르	15,713	6.1	2.3	5.0	6.4	9.9
5	영국	14,616	5.7	3.9	11.6	3.2	5.0
6	홍콩	12,895	5.0	1.2	3.7	5.7	8.4
7	중국	11,132	4.3	2.9	1.7	4.5	7.4
8	독일	10,398	4.1	5.9	5.1	3.6	2.3
9	몰타	9,638	3.8	0.0	0.0	4.7	8.8
10	캐나다	7,863	3.1	4.7	1.3	3.4	2.9
11	프랑스	5,764	2.2	2.7	4.1	1.8	0.8
12	케이만군도	5,185	2.0	2.8	2.4	1.6	1.5
13	룩셈부르크	4,631	1.8	1.2	0.6	3.9	0.9
14	말레이시아	4,204	1.6	5.2	0.9	0.6	0.5
15	버진아일랜드	3,680	1.4	1.0	0.8	1.2	2.6
16	버뮤다	3,234	1.3	2.7	0.3	0.5	1.8
17	아일랜드	3,219	1.3	0.5	1.5	1.6	1.3
18	벨기에	3,175	1.2	3.6	1.4	0.2	0.3
19	호주	2,545	1.0	0.5	2.3	0.6	0.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8. 3. 19 접속

□ 2000~2017년의 국가별 비중 변화를 보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의 비중도 많이 감소하였음

○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견제로 인해 이들 국가의 조세특례가 축소됨에 따라 국제직접투자의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 기간 중에 싱가포르, 홍콩, 몰타, 중국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음

라. 업종별 구성

□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77.6%가 서비스업 기업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9%를 차지함

○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커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48%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비즈니스서비스업 11.8%, 음식·숙박업 5.4%의 순임

○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 업체의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기계·장비 3.6%, 화공 3.1%, 운송용기계 2.2%의 순임

<표 Ⅲ-3>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분포(2017. 6. 30)

(단위: 개, 백만달러, %)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금액	
	기업 수	비중	잔액(현존기준)	비중
농·축·수산·광업	90	0.5	246	0.2
제조업	3,640	20.9	50,206	39.9
식품	179	1.0	2,104	1.7
섬유·직물·의류	151	0.9	1,093	0.9
제지·목재	57	0.3	604	0.5
화공	541	3.1	14,334	11.4
의약	85	0.5	1,956	1.6
비금속광물	97	0.6	4,724	3.8
금속	299	1.7	2,840	2.3
기계·장비	624	3.6	4,267	3.4
전기·전자	1,000	5.7	9,954	7.9
운송용기계	391	2.2	7,743	6.2
기타제조	216	1.2	587	0.5
서비스업	13,537	77.6	72,491	57.7
도·소매(유통)	8,366	48.0	11,036	8.8
음식·숙박	942	5.4	6,124	4.9
운수·창고(물류)	725	4.2	2,681	2.1
통신	55	0.3	583	0.5
금융·보험	425	2.4	28,378	22.6
부동산·임대	517	3.0	7,599	6.0
비즈니스서비스업	2,055	11.8	13,573	10.8
문화·오락	210	1.2	1,884	1.5
공공·기타서비스	242	1.4	633	0.5
전기·가스·수도·건설	171	1.0	2,804	2.2
전체	17,438	100.0	125,747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외국인직접투자 참고자료집』, 2017. 9, p. 29

□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57.7%, 제조업이 39.9%로 업체수로 볼 때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 특히 업체수로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48%를 차지하였던 도소매업의 투자금액 비중은 8.8%에 그침

○ 한편 업체수로는 2.4%인 금융·보험업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화공업 11.4%, 비즈니스서비스업 10.8%였음

○ 제조업 중에서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화공업 외에 전기·전자 7.9%, 운송용기계 6.2%, 비금속광물 3.8%, 기계·장비 3.4% 등임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가. 조세감면 승인받은 기업 현황

□ <표 Ⅲ-4>에서는 2012~2016년 5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의 감면 항목별 업체 수와 비중을 정리하였음

□ 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 수는 2012년 41개에서 2013년 33개, 2014년 21개로 빠른 속도로 축소됨

○ 2016년에 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는 24개로 2012년 41개의 58.5% 수준임

□ 감면항목별로 보면, 2012~2016년에 감면을 받은 업체 중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서비스업 포함)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 각각 42개로 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 전체(140개)의 30%씩을 차지함

○ 그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이 32개로 감면 승인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이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는 24개로 17.1%를 차지함

○ 그 외에 새만금 사업지역, 제주도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등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음

□ 2016년에 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를 2012년과 비교해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었음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12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으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14개에서 9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7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음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2012년에 8개였는데, 2016년에는 7개였음

<표 Ⅲ-4> 항목별 감면 승인업체 동향(2012~2016)

(단위: 개, %)

	업체 수					감면항목별 비중				
	고도기술	외투지역-개별	경자구역	외투지역-단지	연도별 합계	고도기술	외투지역-개별	경자구역	외투지역-단지	연도별 합계
2012	12	14	8	7	41	29.3	34.1	19.5	17.1	100.0
2013	10	7	8	8	33	30.3	21.2	24.2	24.2	100.0
2014	6	5	7	3	21	28.6	23.8	33.3	14.3	100.0
2015	9	7	2	3	21	42.9	33.3	9.5	14.3	100.0
2016	5	9	7	3	24	20.8	37.5	29.2	12.5	100.0
합계	42	42	32	24	140	30.0	30.0	22.9	17.1	100.0

자료: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 이상의 감면 승인 업체 수를 국세청 통계자료에 나타난 실제 감면받은 업체 수(<표 Ⅲ-5> 참조)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단지형과 개별형을 합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의 감면 승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보다 많은 데 비해, 감면실적이 있는 업체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비중이 외국인투자지역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음

○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로서 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도 적지 않은 반면, 감면실적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감면실적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음

○ 이는 개별형 및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와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로서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의 사업 실적이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보다 낮음을 시사함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고도기술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비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그와 같은 지위를 요구하지 않음

<표 Ⅲ-5> 연도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업체 구성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합계-증자제외[1]		80.1	79.9	84.5	86.1	85.4	82.8
감면 항목별 비중[2]	고도기술	66.4	66.4	64.3	54.0	47.4	60.7
	외투지역	26.5	27.1	31.6	40.2	46.1	33.3
	경자구역 입주	-	2.8	-	-	6.6	1.7
	경자구역개발	-	-	-	-	-	-
	제주투진 개발	-	-	-	-	-	-
	기업도시 입주	-	-	-	-	-	-
	기업도시개발	-	-	-	-	-	-
	새만금 입주	-	-	-	-	-	-
	새만금개발	-	-	-	-	-	-
	기타	-	-	-	-	-	-

주: 1) 감면받은 업체 전체에서 증자감면을 제외한 신규투자 감면을 받은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2) 신규투자 감면을 받은 업체에서 각 항목별 감면 업체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18>

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1) 감면받는 기업의 비중

□ [그림 Ⅲ-4]에서는 국세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2005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3.2%가 조세감면을 받았는데, 이 비율은 계속 하락하여 2010년 무렵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2% 정도가 감면을 받았음

○ 이후 감면기업 비중은 더 하락하여, 2016년에는 외국인투자 기업 중 1.1%만 감면을 받았음

○ 2005~2016년의 기간 중 2011년을 제외하고는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 수는 2005년 151개에서 2010년 135개, 2016년 89개로 축소됨

○ 한편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2005년 4,715개에서 2010년 7,632개, 2016년 8,300개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그림 Ⅲ-4] 외국인투자기업 중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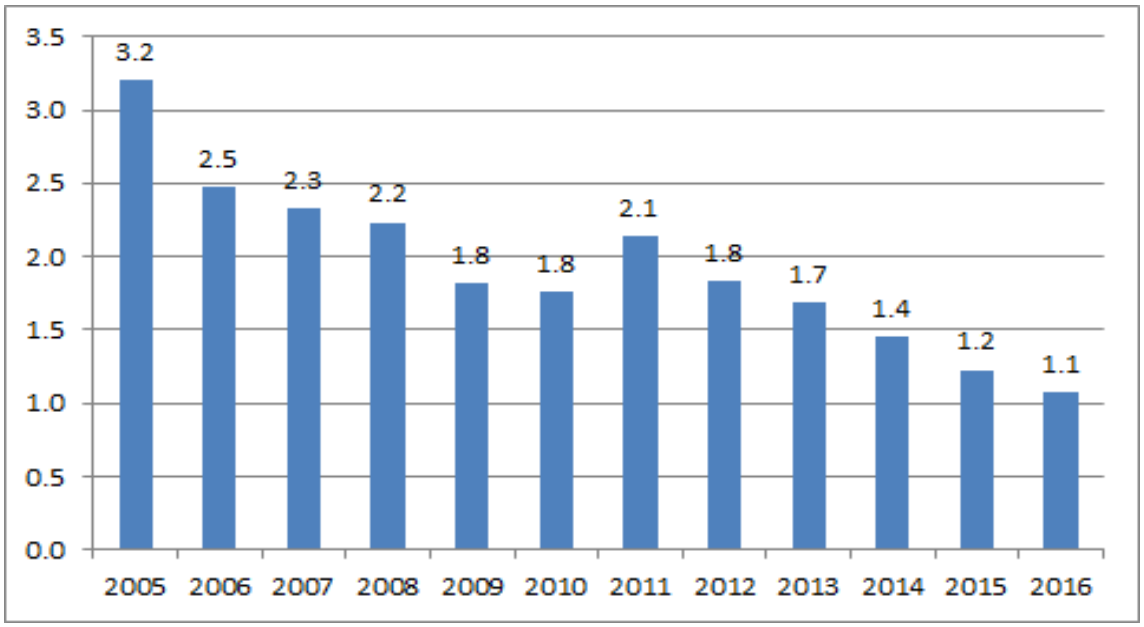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2-1>, <표 12-2-9>

□ 위 그림에서는 각 연도별로 감면을 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는데, 이 경우 이미 감면 기간이 지난 기업은 감면을 받지 않는 기업에 포함되어 감면대상 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표 Ⅲ-6>에서는 매년 새로 유입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매년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매년 유입되는 기업을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으로 구분하여 감면 승인 기업과 비교하였는데, 신고기준으로 볼 때 새로 유입된 외국인투자 기업 중에서 감면 승인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4%에서 점점 낮아져 2016년에는 0.8%가 됨

- 도착기준으로는 2012년 2.1%에서 2016년 1.3%가 됨

○ 어떤 기준으로 보든 외국인투자 기업 중 감면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1% 내외라고 할 수 있음

- 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고기준이 더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감면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는 감면 승인을 받은 기업이 신고된 외국인투자를 이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보면, 감면 승인 기업 비중이 신고기업 비중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음

<표 Ⅲ-6> 외국인투자 신고·도착 기업 중 감면 승인 기업 비중

(단위: 개, %)

	외투기업 수			감면승인기업 비중	
	도착기준	신고기준	감면승인 기업	도착기업 기준	신고기업 기준
2012	1,988	2,865	41	2.1	1.4
2013	1,841	2,607	33	1.8	1.3
2014	1,676	2,462	21	1.3	0.9
2015	1,730	2,699	21	1.2	0.8
2016	1,816	2,987	24	1.3	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8. 3. 19 접속
앞의 <표 Ⅲ-4>

2) 감면액 변화 추이

□ [그림 Ⅲ-5]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을 정리하였음

○ 2005년에 5,446억원이었던 감면액이 2006년에 3,661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후에는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7,293억원, 2011년에는 8,198억원이 되었음

- 2010년에는 5,670억원으로 2009년과 2011년에 비해 상당히 적었음

○ 2011년 이후에는 감면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2011년 8,198억원에서 2012년 4,384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축소되어 2016년에는 1,504억원이 되었음

□ [그림 Ⅲ-6]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을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총산출세액과 비교하였음

○ 2005~2011년에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이 외투법인 산출세액의 7~10.4%를 차지하였음

○ 한편 2012년 이후에는 2013년의 5.9%가 가장 높은 것이었으며, 2014년 4.3%, 2015년 3.5%, 2016년 2.4%로 낮아짐

[그림 Ⅲ-5]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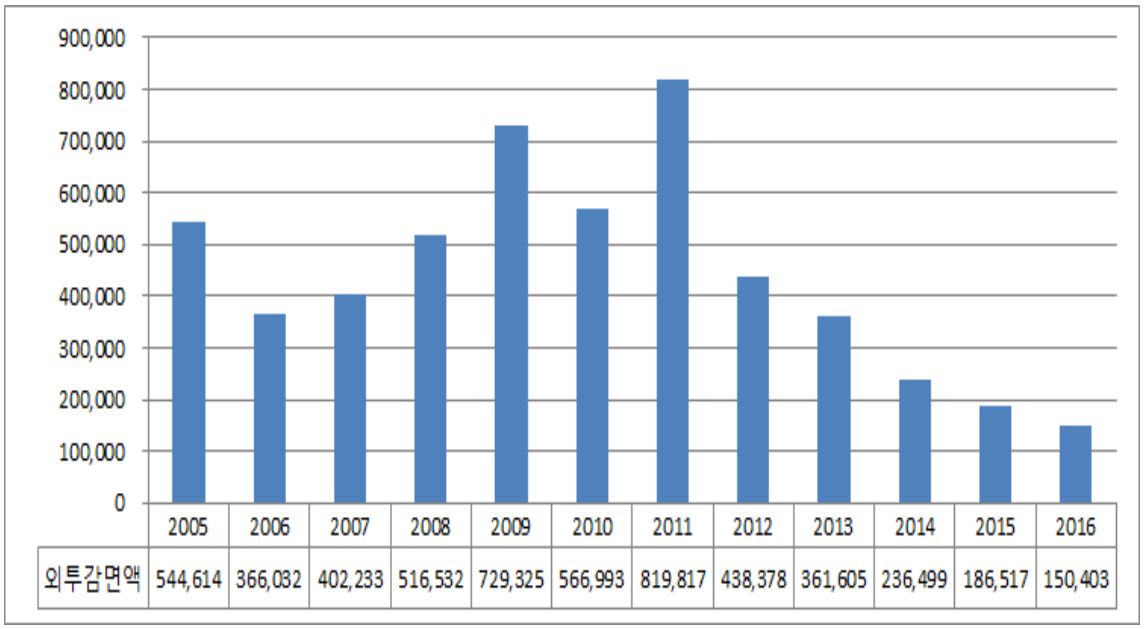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외투감면액	544,614	366,032	402,233	516,532	729,325	566,993	819,817	438,378	361,605	236,499	186,517	150,4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2-9>

[그림 Ⅲ-6] 외투법인 산출세액 대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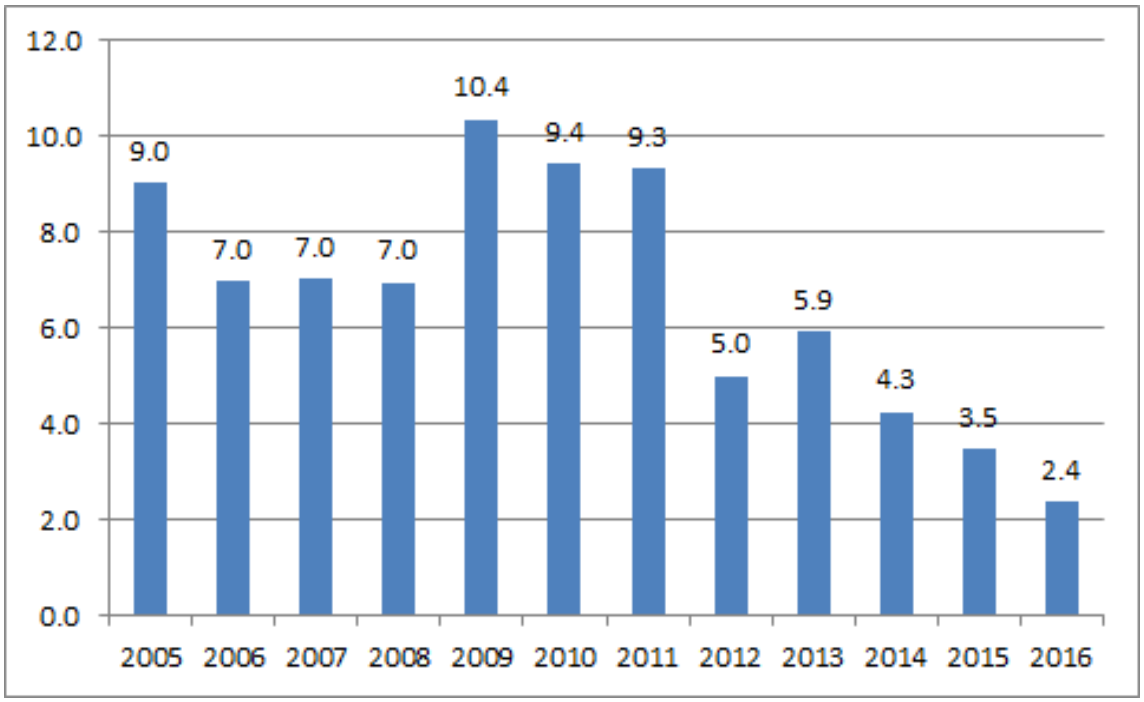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2-1>, <표 12-2-9>

다. 감면항목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 <표 Ⅲ-7>에서는 최근 4개 연도의 감면항목별 감면실적을 정리하였음

○ 2016년의 경우를 보면, 감면받은 기업은 89개이며, 그 중 13개는 증자에 대해 감면을 받았음

- 증자 외의 감면사유를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을 받은 기업이 36개이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35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5개임
- 그 외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감면실적이 없음

○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증자감면과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함

- 그 외에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로서 감면을 받은 기업이 소수 있고, 다른 지역특구는 감면실적이 거의 없음

<표 Ⅲ-7> 감면항목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인수	감면금액	법인수	감면금액	법인수	감면금액	법인수	감면금액
합계	134	361,605	116	236,499	101	186,517	89	150,403
고도기술	71	115,629	63	123,318	47	86,977	36	45,124
외투지역	29	42,439	31	52,413	35	60,350	35	70,088
경자구역 입주	3	821	u	4,159	u	2,812	5	2,127
경자구역 개발	-	-	-	-	-	-	-	-
제주투진 개발	-	-	-	-	-	-	-	-
기업도시 입주	u	-	-	-	-	-	-	-
기업도시개발	-	-	-	-	u	1	-	-
새만금 입주			-	-	-	-	-	-
새만금개발			-	-	-	-	-	-
기타	u	420	u	113	u	2,357	-	-
증자감면	27	202,296	18	56,496	14	34,020	13	33,064

주: 해당되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어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수를 u로 표시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2-9>

□ 감면금액을 보면, 2016년에 총감면액이 1,504억원이었는데, 그중 47%인 701억원은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이었고, 30%인 451억원은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이었음

○ 증자 감면은 331억원으로 총감면액의 22%를 차지하였음

○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감면이 21억원으로 총감면액의 1.4%를 차지함

□ 위 <표 Ⅲ-7>에 나타난 감면항목 중 증자 감면은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당초에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개별 항목의 감면과 다른 성격이 있음

□ [그림 Ⅲ-7]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전체에서 증자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법인 수와 감면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중 증액투자를 하여 감면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2005년 62.9%에서 2006년에 47.8%로 떨어진 후 계속 낮아져서 2011년에는 17.8%가 됨
- 이후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에 20.1%가 되었으나 다시 하락하여 2016년에는 14.6%가 됨

○ 한편 감면금액에서 증자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에 41.1%에서 2010년 62.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3년까지는 약간 하락하여 2013년에 55.9%가 됨

- 2014~2016년에는 대폭 낮아져 20% 수준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22%를 기록하였음

□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자 감면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더 낮아지는 것은 증자 감면 대상기업 수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감면액도 최근 수년간(2014~2016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증자 감면액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음

[그림 Ⅲ-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중 증자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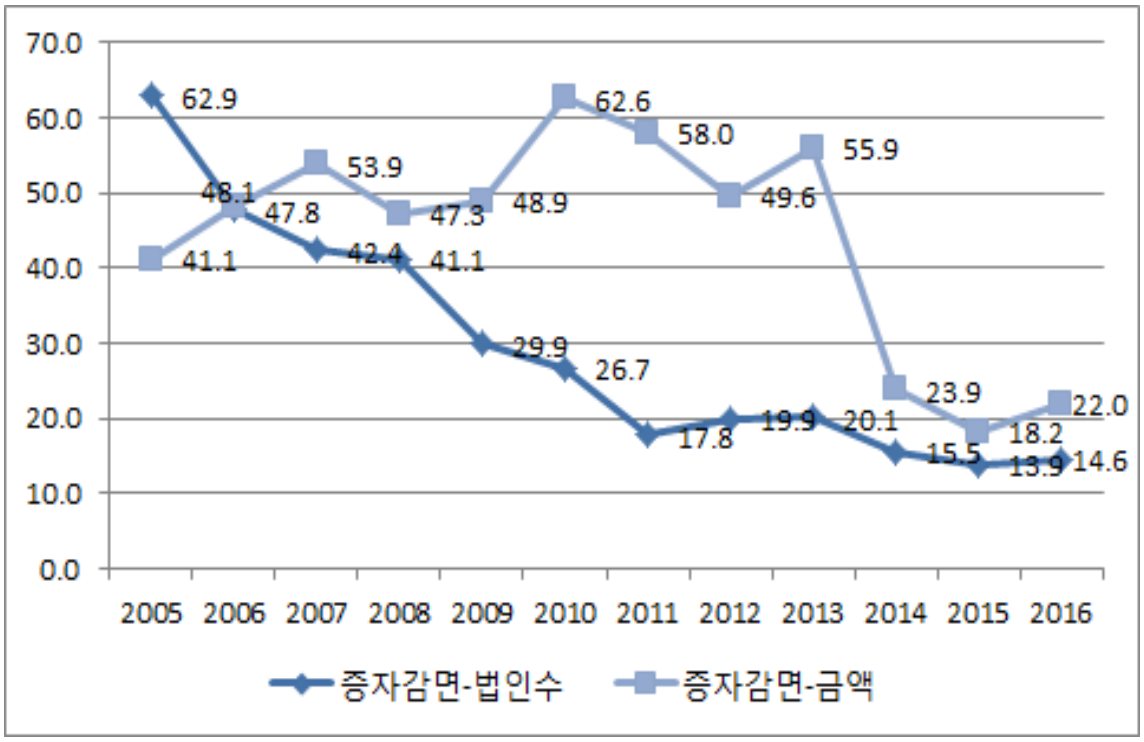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2-9>

□ 뒤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조세감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신규투자보다는 증액투자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신규투자의 경우 새로운 투자대상이 되는 입지가 다른 입지에 비해 시장 및 원료, 노동에 대한 접근성, 임금, 원재료비 등 투자에 미치는 조세 외의 다른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함

- 비교대상이 되는 입지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조세감면 혜택이 다른 요소의 불리함을 커버하고 남는 정도가 되어야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한편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입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투자의 증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혜택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자 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기업이 투자를 증대시킬 유인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는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림 Ⅲ-8]과 [그림 Ⅲ-9]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항목별로 감면을 받은 기업 수와 감면액이 증자 감면을 제외한 감면을 받은 기업 수 및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먼저 기업 수를 보면, 2005년에는 감면기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을 받은 기업이 89.5%를 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받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이 두 가지 항목이 98.2%를 차지함([그림 Ⅲ-8] 참조)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2008년까지 85~89%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70%대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12년에는 60%대가 되었고, 2015년에는 54%, 2016년에는 47.4%가 됨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 하락은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 증가로 나타났음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2005년 8.9%에서 2009년 21.9%, 2012년 26.5%, 2016년 46.1%로 확대되었음

□ 2005~2016년에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대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감면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증가된 것은 외국인투자지역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감면대상 기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1998년 말에 도입되어, 빠른 경우에 2000년대 초부터 기업들이 감면을 받기 시작하였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면을 받는 기업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2005년에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이들 기업도 감면을 받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면기업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Ⅲ-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항목별 비중 - 법인 수(증자감면 제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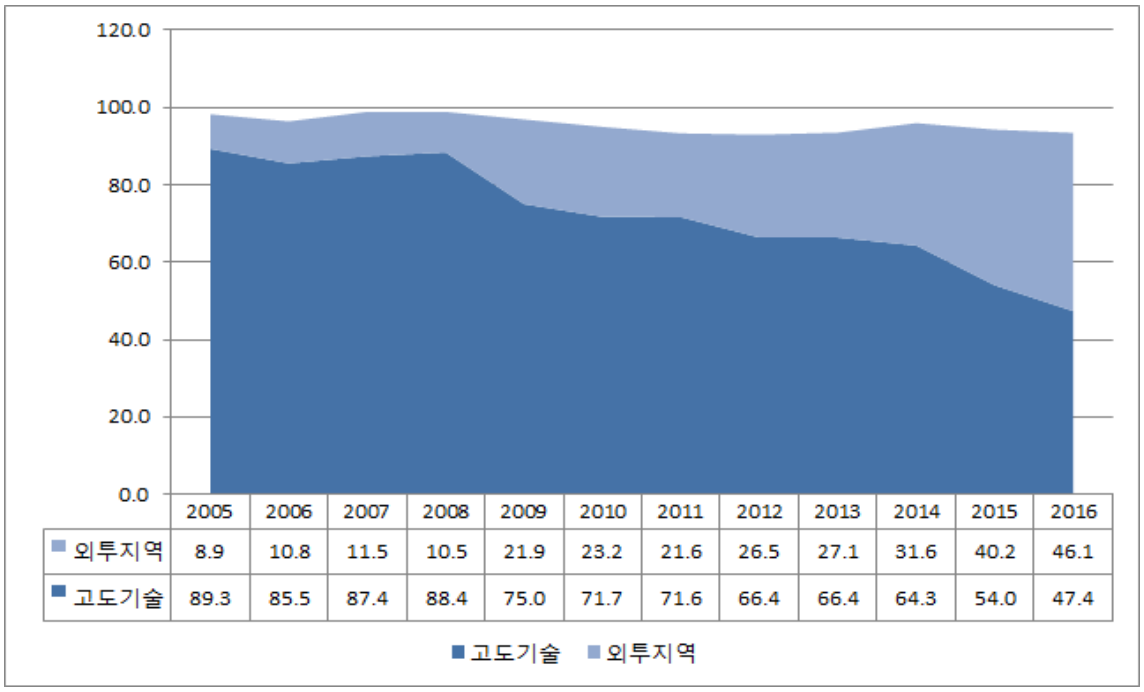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외투지역	8.9	10.8	11.5	10.5	21.9	23.2	21.6	26.5	27.1	31.6	40.2	46.1
고도기술	89.3	85.5	87.4	88.4	75.0	71.7	71.6	66.4	66.4	64.3	54.0	47.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2-9>

[그림 Ⅲ-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항목별 비중 - 감면액(증자감면 제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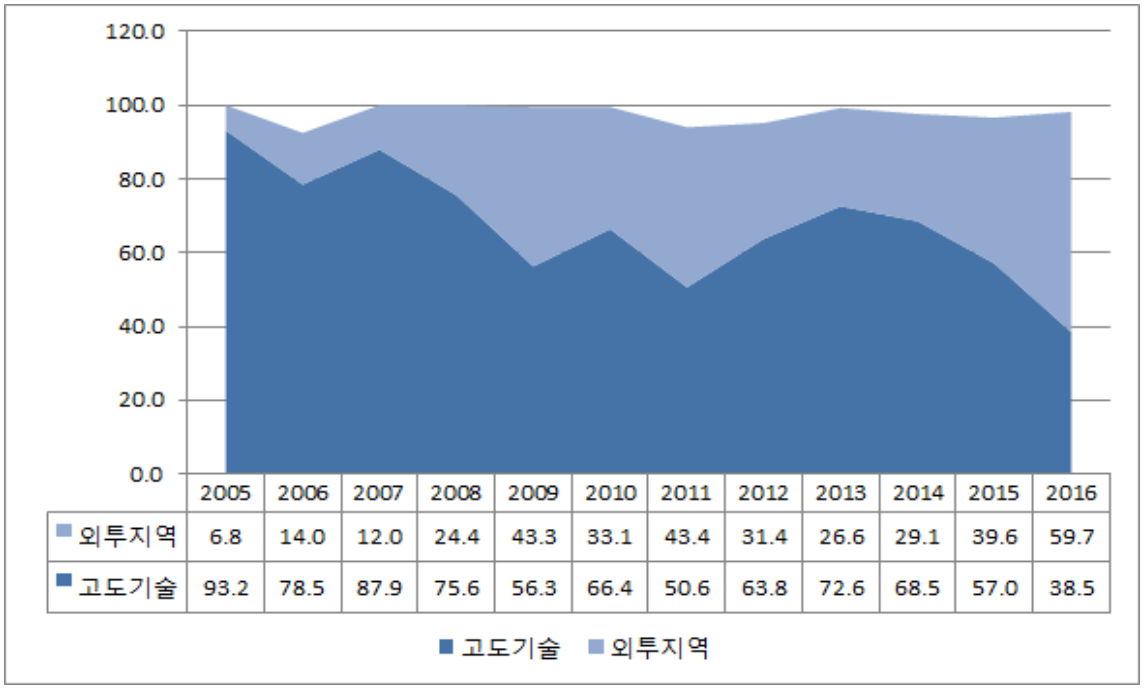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외투지역	6.8	14.0	12.0	24.4	43.3	33.1	43.4	31.4	26.6	29.1	39.6	59.7
고도기술	93.2	78.5	87.9	75.6	56.3	66.4	50.6	63.8	72.6	68.5	57.0	38.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2-9>

□ 감면액으로 보면, 감면을 받은 기업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93.2%로 기업 수로 볼 때보다 더 높았음([그림 Ⅲ-9] 참조)

○ 한편 2016년에는 증자 감면을 제외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38.5%로 법인 수로 볼 때의 47.4%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연도별로 보면, 감면받은 기업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데 비해 감면액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시기별로는 2005~2008년에는 조세감면액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었으며, 2009~2012년에는 50~65%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3년에는 72.6%로 이전 수년간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이후 2016년까지는 계속 낮아져 2016년에는 38.5%로 2005~2015년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

3. 요약

가. 외국인투자 동향

□ 외국인투자 기업 수를 보면,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신고기준 기업 수는 2005년 3,671개에서 2017년 2,774개로 25% 정도 축소되었음

- 도착한 외국인투자 기업 수는 2005년 2,715개에서 2017년 1,641개로 약 40% 축소되었음
- 전반적으로 도착기준 기업 수가 신고기준 기업 수보다 30~40% 정도 적으며, 최근에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외국인투자 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고기준 금액은 2005년 11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달러로 거의 두 배, 도착기준 외국인투자 금액은 2005년 96억달러에서 2017년 133억달러로 1.4배로 증가하였음
- 평균적으로 보면 도착기준 금액은 신고기준 금액의 65% 수준이지만, 연도별 격차가 상당히 큼

○ 외국인투자 기업 수가 축소되는 반면 외국인투자 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외국인투자 건수는 축소되지만 건당 투자금액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도착기준으로 55~70% 수준이고, 신고기준으로 6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신고기준에 비해 도착기준이 그린필드 투자비중이 낮은 것은 M&A형 투자의 신고 이행률이 그린필드 투자에 비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국가별로 보면, 2000～2017년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신고기준)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총 19개 국가임

○ 미국이 22%를 차지하여 1위이며, 그다음이 13.6%를 차지한 일본임

○ 그 외에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영국, 홍콩이 각각 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독일은 4.1%, 몰타는 3.8%, 캐나다는 3.1%를 차지함

○ 프랑스,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가 각각 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아일랜드, 벨기에, 호주가 그 뒤를 이었음

○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19개 국가 중 11개 국가는 조세회피처이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다양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소규모 국가들임

□ 2000~2017년의 국가별 비중 변화를 보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의 비중도 많이 감소하였음

○ 이 기간 중에 싱가포르, 홍콩, 몰타, 중국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음

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 외국인투자 기업 중 1% 정도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 수를 보면, 2012년 41개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 2016년에는 24개가 되었음

- 2012년에는 신규 외국인투자 신고기업 중 1.4%가 감면 승인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그 비중이 0.8%로 낮아졌음

- 도착기준으로 보면 2012년 2.1%에서 2016년 1.3%로 축소됨

○ 실제 감면을 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에서 계속 낮아져 2016년에 1.1%가 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액도 빠른 속도로 축소되었음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총액은 2011년에 8,298억원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2016년에는 1,504억원이 되었음

○ 외국인투자 법인의 산출세액 대비 외투감면액 비중을 보면, 2010년에는 9.4%, 2011년에는 9.3%였던 것이 2012년에 5%, 2013년에 5.9%로 대폭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16년에는 2.4%가 되었음

○ 이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중요성 및 실효성이 계속 낮아졌음을 시사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에서 증자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

○ 감면받은 기업에서 증자 감면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62.9%에서 2010년 26.7%, 2016년 14.6%로 낮아짐

○ 감면액에서 증자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에 50%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2014~2016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아짐

○ 증자 감면의 비중이 축소된 것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기업이 투자를 증대시킬 유인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었음을 시사함

□ 조세감면 항목별로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함

○ 증자감면을 제외하면, 2005년에는 감면기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을 받은 기업이 89.5%를 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받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이 두 가지 항목이 98.2%를 차지함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2008년까지 85~89%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70%대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12년에는 60%대가 되었고, 2015년에는 54%, 2016년에는 47.4%가 됨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2005년 8.9%에서 2009년 21.9%, 2012년 26.5%, 2016년 46.1%로 확대되었음

○ 감면액으로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93.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38.5%로 비중이 낮아졌음

- 한편 외국인투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7%에서 2010년 23.2%, 2016년 46.1%로 크게 확대됨

Ⅳ. 외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Ⅳ. 외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사, 정리하였음

○ 이들 국가들에는 외국인투자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없음

○ 그러므로 내·외국인 투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제공되는 조세지원제도로서 주로 본고에서 관심대상이 되는 신기술 또는 고도기술분야와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리함

-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중심으로 정리함

가. 중국

1) 서부지역개발 기업소득세 감면

□ 서부지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5%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이 적용됨[31] [32]

○ 국가가 규정하는 장려산업 업종에는 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 및 TV 방송업 등이 있음

○ 장려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를 초과하여야 함

---

31) The Ministry of Finance,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jointly issued the Notice Regarding Implementation of Tax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Western Regions(CaiShui(2011) No.58), which extended the valid period for the preferential tax rate of 15% to December 31, 2020.

32)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에서 재인용

○ 서부지구에는 충칭 시정촌, 쓰촨 성, 구이 저우 성, 윈난성, 티베트 (시짱)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 신장 위구르어 자치구, 신강 생산 건설 그룹, 내몽고 자치구, 광시 자치구 등이 있음

2) 고도신기술기업 기업소득세 감면[33]

□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고도기술분야에서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기술 및 고도기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고도신기술기업(High and New-Technology Enterprise, HNTE) 기업소득세 감면임

○ 고도신기술기업은 25%의 기업소득세율 대신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고도신기술기업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야 함

- 또는 적격 지적재산권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자회사에 부여하여야 함
-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고도신기술기업의 조세감면 자격은 3년간 유지되며, 3년마다 갱신함

□ 고도신기술기업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고도신기술사업을 영위해야 함

○ 항공우주, 생명공학 및 의료, 전기정보, 신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신소재, 고도기술 서비스업, 자원 및 환경기술, 전통부문에서 고도 신기술 부문으로 이전 등

○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R&D 종사자가 종업원의 10% 이상이고, 그 중 30% 이상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함
- 총수입의 3~6%를 R&D에 투자하고, R&D 비용의 60% 이상을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여야 함
- 총수입의 60% 이상이 고도신기술사업에서 발생하여야 함

33)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13)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 고도신기술기업의 기업소득세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실제로 자격이 있는 기업도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국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자격 요건 등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

○ 조세감면 지원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많아 조세감면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함

- R&D 프로젝트 수, R&D 참여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참여인원별·사업별 활동내역, 그 외 기업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 사업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함

3) 선진기술서비스업 조세감면[34)]

□ 고도신기술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비스업이 혜택을 받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기술서비스기업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함

○ 선진기술서비스기업(Advanced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 ATSE)에 해당되면 25%의 기업소득세율 대신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그리고 종업원 교육비는 총급여의 8%까지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8%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선진기술서비스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중국 내 기업이어야 함(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 규정에 열거된 선진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과정에서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춰야 함
- 적격 선진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적격 IT(Information Technology), BP(Business Process), KP(Knowledge Process) 분야의 국외 아웃소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총수입의 3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34) Windson Li·Shan Yu(2017)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4)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산업 기업소득세 감면[35]

□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IC) 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이후 처음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함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됨

○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 투자규모, 기업의 지속연한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적용됨

○ 2011년부터 적용되었으며, 2016년에 정보 요구 사항, 적용기준,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간소하고 명료하게 개정됨

나. 대만

□ 자유무역지대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36]

○ 2018년 4월 28일 현재 자유무역지대는 없고, 5개의 자유무역 항구(free trade ports)가 있음

○ 자유무역 항구를 설치한 취지는 외국기업(foreign companies)을 유치하여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다시 다른 외국기업에 판매(distribution)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대만 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자유무역 항구를 이용할 수 있음

○ 자유무역 항구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함

다. 말레이시아

1) 주요 허브 인센티브[37]

□ 주요 허브는 위험관리, 의사결정, 금융이나 인적자원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의 관리, 통제와 지원을 포함하여 국내 및 세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말레이시아를 그 기지(base)로 사용하는 회사를 말함

---

35) KOTRA Invest Korea(2018), p. 31

36) CCH(2018), [TWN 1-200] SPECIAL INCENTIVES, GRANTS, ETC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37) Income Tax Act s 127(3)

○ 주요 허브는 다음과 같이 감면된 법인세율을 5년(5년 연장 가능)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업체들의 단계 결정은 고임금 근로자들과 주요 허브 내 핵심관리자의 각 인원 수에 의해서 정해짐

- 1단계(tier) 사업체의 경우 0%
- 2단계(tier) 사업체의 경우 10%
- 3단계(tier) 사업체의 경우 20%

○ 주요 허브는 특정 원재료나 부품, 완성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주요 허브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산업개발청(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납입 자본금: 2,500만링깃(한화 약 6억 7,500만원) 이상

○ 연간 사업비: (i) 1단계 사업체의 경우 1천만링깃(한화 약 27억원) 이상, (ii) 2단계 사업체의 경우 500만링깃(한화 약 13억 5천만원) 이상, (iii) 3단계 사업체의 경우 300만링깃(한화 약 8억 1천만원) 이상

○ 인적 자원 개발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3개 이상의 국외 관계회사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통제하여야 함

○ 적격 서비스(사업관리, 전략계획 및 브랜드관리와 같은 전략 서비스)를 최소 3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2) 역외보험[38)]

□ 1984년 「재보험법(the Takaful Act)」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재보험회사(takaful companies) 및 재보험기관(takaful units)은 국제통화로 행하는 재보험 사업(말레이시아 거주자들과의 거래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험 또는 재보험회사가 해외 지점 또는 피투자회사(investee companies)가 있는 경우 법정 소득(statutory income)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38) Income Tax(Exemption) (No 12) Order 2007; Income Tax(Exemption) (No 5) Order 2009.

○ 피투자회사란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말함

○ 해외 지점이나 피투자회사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함

○ 법인세 비과세 기간은 늦어도 영업 개시 후 3년째 되는 해부터 기산해야 함

3) 이스칸다 개발 특구(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39]

□ IDR은 조호르(Johor) 주에 소재한 약 2,200평방킬로미터 상당의 토지로 이루어진 특별경제구역을 말함

○ IDR 내 승인된 구역에서 특정한 적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들은 그 활동을 개시한 때부터 10년간 법인세와 원천세(사용료 및 기술이용료)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이스칸다 지역발전청(the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IRDA)이 승인한 적격 서비스는 광범위한데, 대체로 다음의 6가지 대상부문(target sectors)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 창조적 산업, 교육서비스, 금융 자문 및 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

○ IRDA가 현재 인정한 적격활동 목록은 열거된 것이 전부가 아니며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임

- 납세자는 평가 및 승인을 얻기 위해 IDR 지위 신청서를 IRDA에 제출해야 함

4) 바이오기술 부문[40]

□ 바이오연계(BioNexus) 지위를 승인받은 바이오기술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됨

○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10년간 법인세의 전액 감면 또는 5년의 기간 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비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

---

39) Income Tax(Exemption) (No 20) Order 2007

40) Income Tax(Exemption) (No 17) Order 2007; Income Tax(Exemption) (No 18) Order 2007; Income Tax(Exemption) (No 2) Order 2009

○ 바이오연계기업의 지급배당은 비과세함
○ 원재료/부품 및 기계류/비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비과세함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중공제(double deduction)를 허용함
○ 수출촉진비에 대한 이중공제를 허용함
○ 최초의 10년 비과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다음 10년 동안 부분과세함(partial tax)

□ 바이오연계 지위를 받은 기업은 생명공학(즉, 생명체의 기관과 그 조직, 생명체의 상호관계 및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생물학, 의학, 인류학 또는 생태학과 같은 과학의 몇몇 지류)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Sendirian Berhad; Sdn Bhd)인 말레이시아 바이오기술 법인(the 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MBC)이 발급하는 바이오연계 지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다음 이를 MBC에 제출해야 함
○ MBC는 검토 후 적격 신청인으로 판단된 경우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에 추천할 수 있음

5)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지위[41)]

□ MSC 지위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주어짐
○ 멀티미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사용함
○ 상당한 수의 고급 인력을 고용함
○ 말레이시아에 기술이나 지식의 이전, MSC의 개발에 대한 기여, 말레이시아 경제계획의 지원이 있어야 함
○ 쿠알라룸푸르 도시센터와 쿠알라룸푸르 공항 사이의 지역에 소재하는 MSC로 지정된 사이버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MSC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5년간 법정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며, 추가로 감면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음

41)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s 21C; Income Tax(Exemption) (No 2) Order 2015

○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세 비용공제(ITA)를 청구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연구개발보조금을 지급함
○ 기타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MSC 지정 사이버도시 밖에서 적격활동을 수행하는 MSC 기업들이 MSC 지정 사이버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의 70% 감면과 추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또는 투자비용 공제[42)]

□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촉진 활동(promoted activities)을 수행하거나 촉진 제품(promoted products)을 생산하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를 얻어 조세감면을 받거나 투자비용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척자 지위 조세감면: 생산을 시작한 이후 5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함
○ 투자비용 공제: 승인된 후 5년 이내에 적격 자본지출의 60%를 매년 과세소득의 70% 이내에서 공제함
-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이월할 수 있음
○ 납세자가 개척자 지위와 투자비용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촉진 활동과 촉진 제품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목록의 형식으로 인정한 것이어야 하는데, 농업제품, 호텔업, 연구개발활동, 자동차부품의 제조 등이 포함됨
- 촉진 제품과 촉진 활동의 목록은 지속적으로 심사하여 정부의 투자정책에 부합하도록 갱신함

□ 특별한 개척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간 법인세 전액을 면제함
○ 촉진 지역(promoted areas): PS 기간 = 5년
- 적격 기업은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부 종주지형(the Eastern Corridor of Peninsular Malaysia),[43)] 동 말레이시아[44)]와 펄리스(Perlis) 주에 위치하여 제조, 농업과 관광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42)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s 5 to 25
43) Kelantan, Terengganu와 Pahang 주들(states)과 Johor 주의 Mersing 지역을 말함
44) Sabah와 Sarawak 주 및 연방 Labuan 지역을 말함

○ 고도기술(high technology) 기업: PS 기간 = 10년

- 적격기업은 신기술과 이머징 기술(가령 의료장비의 제조, 소프트엔지니어링, 항공, 바이오기술, 선진 전자기술 등) 분야와 관련된 기업

○ 국가적 중요 전략 프로젝트: PS 기간 = 10년

- 적격 프로젝트는 (i) 장기간의 계획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자본투자와 관련이 있을 것, (ii)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iii) 광범위한 연관효과를 창출할 것, (iv) 경제에 중대한 효과를 미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가령,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기업이나 산림농장 프로젝트 등)

○ 특수 기계류 및 비품의 제조: PS 기간 = 10년

- 특수 기계류 및 비품의 범위: 기계도구, 플라스틱 투입 기계, 플라스틱 돌출 기계류, 재료 취급 장비, 포장 기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 등

○ 기타: PS 기간 = 5년

- 기타 유형의 PS 기업으로는, 국제 표준의 준수를 위한 의학 장비의 실험을 목적으로 한 신연구소 투자기업, 말레이시아의 지방 낙후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15%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촉진 활동 수행 또는 촉진 제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소기업 등이 있음
- 여기서 소기업은 주주의 지분이 50만링깃(한화 약 1,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인이 6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7) 라부안 국제 사업 및 금융센터[45)]

□ 역외트레이딩활동(offshore trading activities)을 행하는 라부안법인은 1990년 라부안 사업활동세법(the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LBATA)에 따라 감사받은 회계장부에 반영된 순이익의 3%나 2만링깃(한화 약 5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할 의무를 짐

○ 비트레이딩활동(non-trading)을 수행하는 라부안법인은 소득세(income tax) 납부의무가 없음

45) 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LBATA) s 4, 7 and 8A; Stamp Duty (Exemption) Order 2011. 그 밖에 조세감면 내용에 관한 상세한 것은,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p. 55~63 및 pp. 71~78 각각 참조

○ 역외트레이딩활동과 비트레이딩활동에 모두 관련이 있는 라부안법인은 역외트레이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순이익의 3%로 과세되거나 2만링깃(한화 약 55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라부안법인은 라부안금융서비스청(the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통보하면 말레이시아 거주자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 경우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LBATA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됨

□ 역외사업활동(offshore business activities)을 행하는 라부안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이슬람종교회비(zakat)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라부안 이슬람 종교청(Labuan Islamic religious authority)이 발급한 영수증으로 납부를 증명해야 함

○ 이슬람종교회비 환급액은 납부세액(즉, 순이익의 3% 또는 2만링깃(한화 약 550만원) 중 선택한 것)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음

□ 1949년 인지세법에 따른 부과대상인 모든 법률문서(instruments)의 작성에 대해서 인지세가 면제됨

라. 싱가포르[46)]

□ 싱가포르는 17%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됨

○ 싱가포르의 조세지원은 특정 산업 또는 특정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춤

1) 특정 업종 또는 특정 활동 지원

□ 싱가포르의 특정 산업 또는 특정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항목이 상당히 많아 다음에서는 조세지원 항목만 정리함

46) PWC, Worldwide Tax Summaries, Singapore: Corporeta - Tax Incentives, http://taxsummaries.pwc.com/ID/Singapore-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2018. 4. 11 접속

○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
○ 은행에 대한 조세지원
○ 펀드관리업에 대한 지원
○ 국제거래기업(global trading company) 지원
○ 해양운송업 지원
○ 관광업 지원
○ 전자거래업 지원
○ 승인된 벤처기업 지원
○ 보험회사 지원
○ 지역본부 지원
○ 프로세싱서비스(processing service)업 지원
○ 법률회사 지원
○ R&D, 혁신, 제품개발활동 지원

2) 개척자 지위 및 개발·확장 지원

□ 개척자 지위 인증 기업 지원(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PCI) 및 개발·확장 지원(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DEI)은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적격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5% 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지원대상 기업은 싱가포르의 평균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선진화된 기술과 활동, 노하우를 사용하여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지 않은 새로운 개척적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포함됨
○ 고용요건: 숙련도, 전문성, 고령자 등 고려
○ 총사업비용 중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비중
○ 투자계획: 기술, 주요 활동분야, 노하우 등
○ 공장, 건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한 제조활동

마. 요약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로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사, 정리하였음

○ 이들 국가들에는 외국인투자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없음

○ 본 절에서는 국내 기업에 제공되는 조세지원제도로서 신기술 또는 고도기술분야에 대한 지원과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리함

□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고도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함

□ 중국에서는 연구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도기술산업, 신기술산업 등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등의 조세지원을 함

○ 고도신기술기업, 선진기술서비스업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산업은 2년간 기업소득세 전액 감면, 그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

□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인세 감면과 투자비용 공제 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바이오기술 부문 기업의 경우 10년간 법인세 전액감면 또는 투자비용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개척자 지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일반적으로 5년간 70% 감면)과 투자비용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

- 개척자 지위의 기업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여기서 특정한 요건은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업종의 기업 등을 의미함

□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율이 17%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지원이나 선도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금융, 물류, 해운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

○ 개척자 지위를 갖는 기업의 경우에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5% 또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싱가포르의 평균적인 기술수준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적용됨

□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로 낙후지역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국의 경우 서부지역개발 기업소득세 감면이 대표적임

○ 서부지구에 설립되고, 국가가 규정하는 장려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당해연도 적격사업의 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됨

○ 해당 산업으로 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 및 TV 방송업 등이 있음

○ 서부지구에는 충칭 시정촌, 쓰촨 성, 구이 저우 성, 윈난성, 티베트(시짱)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 신장 위구르어 자치구, 신강 생산 건설 그룹, 내몽고 자치구, 광시 자치구 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이스칸다 개발특구(Iskandar Development Region; IDR) 조세지원과 특정 지역의 개척자 지위 기업 지원이 있음

○ IDR은 조호르(Johor) 주에 소재한 약 2,200평방킬로미터 상당의 토지로 이루어진 특별경제구역을 말함

- IDR 내 승인된 구역에서 특정한 적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IDR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들은 그 활동을 개시한 때부터 10년간 법인세와 원천세(사용료 및 기술이용료)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주로 창조적 산업, 교육서비스, 금융 자문 및 상담서비스, 보건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업에 적용됨

○ 말레이시아 개척자 지위 기업 중 촉진 지역(promoted area)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전액을 면제함

-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부 종주지형(the Eastern Corridor of Peninsular Malaysia),

동 말레이시아와 펄리스(Perlis) 주에 위치하여 제조, 농업과 관광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됨

□ 그 외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으로 대만의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과 말레이시아의 MSC가 있음

○ 대만에는 5개의 자유무역 항구(free trade ports)가 있는데, 자유무역 항구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함

○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 도시센터와 쿠알라룸푸르 공항 사이의 지역에 소재하는 MSC로 지정된 사이버도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MSC 지위를 부여하여 조세지원을 함

-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고급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말레이시아에 기술이나 지식의 이전, MSC의 개발에 대한 기여, 말레이시아 경제계획의 지원 등이 요구됨
- MSC 기업에는 개척자 지위가 인정되며, 그에 따라 법인세 감면 또는 투자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 제1절에서 살펴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서구 선진국들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특정한 고도기술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이 중심이 됨

□ 특정 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의 조세지원은 주로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는바, 다음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특정 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를 조사, 정리함

○ 조사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조세정책 개편방안 논의에서 많이 참고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임

가. 미국

1) Empowement Zones(EZ)[47]

□ 미국의 Empowerment Zones Program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고용을 증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1994년에 최초로 시행됨

○ 경제 침체지역(economically depressed areas) 내 기업에 대해 고용공제, 설비투자 증대에 대한 과세특례, 특별 면세, 자본이득 과세특례 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

○ 인구조사구(census tract)를 단위로 하여 1994년에 11개의 Empowerment Zone을 지정하였으며 1999년 다시 20개 Empowerment Zone을 추가함

○ Empowerment Zone은 Renewal Communities(RCs), Empowerment Zones(EZs), Enterprise Communities(ECs)의 3가지 형태로 구성

□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인구와 면적이 크지 않은 중소도시로서 저소득과 실업,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임

○ 인구규모가 20만명 이하이고, 전체 면적이 20평방마일을 넘지 않을 것

○ 심각한 저소득과 실업이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빈곤율이 20% 이상일 것

□ Empowerment Zone 개발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지원혜택이 제공됨

○ Empowerment Zone 지역의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해당연도 급여의 20%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종업원(시간제 종업원 포함)당 최고 한도는 3천달러로 함

- 동시에 Empowerment Zone 지역의 18~24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을 적용하여 2,400달러를 세액공제함

○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도 Empowerment Zone 지역의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사회서비스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금 1억 달러를 지원함

47) 전병목(2016), pp. 33~34를 이용하여 정리함

2) New Market Tax Credit(NMTC)[48)]

□ New Markets Tax Credit은 지역개발기업(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DE)의 적격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7년간 총 39%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임

○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 미국 재무부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에 의해 관리되고, 지역개발회사(CDE)에 의해 수행됨

○ 지역개발회사에 투자하는 은행 등 민간투자자에 대해 처음 3년간은 5%, 이후 4년간 6%의 세액공제를 제공함

○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함

- 빈곤율 20% 이상, 중위 소득이 지역 중앙값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나. 영국

1)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ing)[49)]

□ EU 집행위 및 영국 정부가 지정한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설비구입, 광물추출, 정보기술 비용 부문과 관련하여 최대 100만파운드까지 지원이 이루어짐

○ 조세지원이 아닌 별도의 재정(보조금)지원의 형태임

□ 지원대상은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 또는 개량하여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임

○ 기업의 사업 확장 또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의 기존 고용을 보호하거나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함

○ 지역성장기금 외의 다른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48) MNTC연합 홈페이지, http://nmtccoalition.org/fact-sheet/, 2018.4.10. 접속
49)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the-regional-growth-fund, 2018.4.9. 접속

○ 건물, 공장, 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은 대부분 민간에서 조달함

○ 이러한 투자를 통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27억파운드 상당의 투자를 통해 2020년 중반까지 2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확보할 계획임

□ 보조금의 규모는 고용인원,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신규 고용창출 인원, 기존 고용보전 인원,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산정되며, 총 32억파운드의 지역성장기금이 정부 및 민간 기금을 통해 지원됨

○ 대상기업은 입찰을 통해 선발됨

2)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50)]

□ 성장침체지역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및 회사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연간 5%씩 5년간 감면하여 총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감면혜택을 제공함

- 감면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 2013년 4월 5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적용됨

3) Business Premises Renovation Allowance[51)]

□ 낙후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에서 오랜 기간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개조·수리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을 100% 공제하는 제도임

○ 개보수가 시작되기 전 최소 1년 이상 미사용된 건물이어야 함

○ 상업용 건물이어야 하며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50)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munity-investment-tax-relief-hs237-self-assessment-helpsheet/hs237-community-investment-tax-relief-2017, 2018.4.9. 접속

51) RRL 홈페이지, https://www.rrlcornwall.co.uk/publications/tax-publications/business-tax/time-is-running-out-for-business-premises-renovation-allowance-bpra-claims, 2018. 4. 24 접속

○ 이 제도는 2017년 3월 31일에 종료되었음

다. 일본

□ 일본의 지역특구는 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로 구분됨

○ 구조개혁특구의 경우 개별 규제특례조치를 활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별도의 조세·금융·재정지원 제도는 운영하지 않음

1) 국가전략특구

□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특구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등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금융상 지원을 제공함

○ 국가전략특구 내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자율주행, 무인비행기 등 신사업의 시험공간(testbed)을 제공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함

○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프로젝트별로 규제를 완화함

- 샌드박스 제도란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현행법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일본은「국가전략특구법」개정(2017년 3월)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핀테크, AI, 개인정보의 가공·서비스, IT 기술, 스마트시티 등으로 함[52)]

□ 국가전략특구의 특정 사업의 실시 주체로 인정받은 자가 특구 내에서 기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상각, 세액공제를 적용함[53)]

○ 기계·장비(2천만엔 이상), 연구개발용 기구·부품(1천만엔 이상), 건물·부속설비·구조물(1억엔 이상)인 경우

- 특별상각률: 취득가액의 50%(건물 등은 25%)
- 세액공제율: 취득가액의 15%(건물 등은 8%), 당기 법인세액의 최대 20%를 공제한도로 함

52) 최해옥(2017), p. 4

53)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h30_youbou03.html, 2018.4.11. 접속

○ 국가전략특구 내에서 특별상각을 적용받는 자산 중에서 특정 핵심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상각(50%)뿐만 아니라 그 감가상각비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 대상 시설은 기계·장비(4천만엔 이상), 연구개발 기구 및 비품(2천만엔 이상)임

○ 국가전략특구의 설립 5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의 20%를 소득공제함

<표 Ⅳ-1> 일본 지역특구 현황

특구명	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
		국제전략 종합특구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목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정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산업·기능의 집적 거점 형성	지역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추진	규제완화를 통한 구조개혁과 지역 활성화 추진
근거법률	「국가전략특별 구역법」	「종합특별구역법」		「구조개혁특별 구역법」
시행년도	2013년	2011년		2002년
시행주체	총리대신 주도	지역 주도		지역 주도
지정구역 수 (2016.3월 기준)	12개	7개	41개	1,264개
지원내용	규제완화, 세제·금융조치	규제완화, 세제·재정·금융조치		규제완화
대표적 사례	[도시계획법 등 특례활용] (동경도) 22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	[아시아 헤드쿼터특구] (동경도) 아시아 지역의 사업 및 연구개발 거점을 목표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자율자동차·스마트에너지 특구] (사이타마시) 에너지 스테이션 및 저탄소형 이동수단 보급, 「환경미래도시」 실현	[하네다공항 로봇실험 특구] (동경도) 하네다 공항 주변지역에서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 실험 사업

자료: 최해옥 외(2017), p.13

2) 국제전략 종합특구

□ 국제전략 종합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상 지원을 제공함[54)]

○ 기계장치(2천만엔 이상), 연구개발용 기구·부품(1천만엔 이상), 건물 부속설비·구조물(1억엔 이상) 등에 대해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를 허용함[55)]

54) KOTRA(2018), p. 22

- 취득가액의 40%(건물 등은 20%) 특별상각을 허용함
- 취득가액의 12%(건물 등은 6%) 세액공제하며, 공제한도는 당기 법인세액의 최대 20%로 함

○ 조세지원 외 금융지원으로 종합특구 계획으로 인정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

- 이자보조 예정액은 5년간 201억엔으로 보조율은 0.7% 이내로 함

□ 2016년 3월 기준으로 7개가 지정되었음[56]

○ 홋카이도 푸드 콤플렉스: 홋카이도 삿포로, 하코다테, 오비히로 등
○ 츠쿠바의 과학기술집적을 활용한 라이프, 그린이노베이션 추진: 이바라키현 츠쿠바
○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도쿄
○ 케이힌 임해부 라이프 이노베이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특구: 기후현, 아이치현
○ 칸사이 이노베이션: 교토, 오사카
○ 그린 아시아: 키타큐슈, 후쿠오카

3) 지역활성화 종합특구[57]

□ 지역활성화 종합특구는 지역투자에 대해 조세·금융·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내에서 인증받은 사업을 실시하는 특정 법인에 대해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함
○ 지역활성화 종합특구에서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1천만엔 한도)과 총소득 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에서 2천엔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함[58]
○ 그밖에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지원의 경우 국제전략 종합특구와 동일한 수준임

---

55)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h30_youbou03.html, 2018.4.11. 접속
56) 국세청(2015), p. 9
57)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request/cao/28y_cao_k_12.pdf, 2018.4.11. 접속
58)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request/cao/28y_cao_k_13.pdf, 2018.4.11. 접속

라. 프랑스

□ 프랑스 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에서는 투자관련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농촌재개발지역(ZRR) 및 도시재생지역(ZRU)에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정 시 예외적인 감가상각을 적용함(CGI39quinquiesD)

○ 중소기업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 코르시카 지역에 투자하는 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정 시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CGI 244 quater E)

○ 해외 프랑스령에 설립하는 직원 250명 이하, 연간 매출액 5천만유로 미만인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정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CGI 44 quaterdecies)

○ 도시의 무역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CGI 44 octies)

○ 200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3세대 도시 무역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CGI 44 octies A)

○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농촌재개발지역(ZRR)에 설립되거나 이전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CGI 44 quindecies)

○ 연구개발지역에 입주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체 또는 부분 면제함(CGI 44 undecies)

○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역에 설립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촌재개발지역(ZRR) 및 도시재생지역(ZRU)에 설립된 신규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CGI 44 sexies)

□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59]

59) 프랑스 세법(Code General de Imports: CGI) Art 44 sexies and 44 quindecies; BOI 4 A-12-09 of 24 July 2009; Decree No 2014-758 relating to ZAFR, 2 July 2014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ZAFR(zones d'aides à finalité regionale)에 설립된 회사는 사업을 개시한 첫 2년 동안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고, 그다음 3년 동안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음

○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시기의 감면비율은 각각 75%, 50%, 25%로 해마다 25%씩 줄어들며,

○ 근로자 250명 이하, 매출액 5천만유로(한화 약 630억원) 이하, 정보기술과 공학 분야의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5년 동안 지방세도 면제받음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촌 특정지역인 ZRR(zone de revitalisation rurale)에 설립되어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사업을 개시한 첫 5년 동안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고, 그 다음 3년 동안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음

○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시기의 감면비율은 각각 75%, 50%, 25%로 해마다 25%씩 줄어들며, 5년 동안 지방세도 면제받음

□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설립되고, 근로자 50명 이내, 매출액 1천만유로(한화 약 126억원) 이하로 ZFU-TE에 입주한 회사는 첫 5년 동안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고 그다음 3년 동안 일부를 감면받음

○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시기의 감면비율은 각각 60%, 40%, 20%임

- 다만, 비과세되는 과세소득이 매년 5만유로(한화 약 6,3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 ZFU-TE(a zone franche urbaine-territoire entrepreneur)는, 고용과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개발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지역으로서 정부가 영(decree)으로 공표하여 승인한 특별 행정적 지위를 부여받음

마. 호주

□ 호주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지역특구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호주의 산업공단은 크게 테크놀로지 공단(Technology & Research Park)과 일반단지(Industrial Park)로 나눌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은 하지 않음

바. 요약

□ 본 장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 또는 두 가지 모두 운용하고 있음

○ 호주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지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두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음

□ 둘째, 지역특구 지원제도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낙후지역, 저개발지역, 저성장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임

○ 미국의 Empowerment Zone, New Market Tax Credit

○ 영국의 지역성장기금지원,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Business Premisses Renovation Allowances

○ 일본의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 프랑스의 농어촌개발지역 및 도시재생지역 투자 지원, 농촌재개발지역 투자 지원 등

□ 셋째, 일본과 프랑스에는 지역개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특구 지원제도가 있음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정비

○ 일본의 국제전략종합특구: 산업·기능의 집적 및 거점 형성을 위한 규제개혁, 세제·금융지원 등

○ 프랑스의 자유무역지역 및 연구개발지역

□ 넷째, 지정된 특구에 대해 조세지원, 재정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이 중 어느 하나만 적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제공되기도 함

○ 영국은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 프랑스는 조세지원이 중심임
○ 일본은 조세와 금융지원이 병행되고,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마지막으로 조세지원 방법을 보면,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보다 특별상각, 투자세액공제,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공제방식이 많이 적용됨
○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에 더하여 미국에서는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일본에서는 특별상각 방식도 적용됨
○ 예외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특정 지역 입주기업 지원 방식으로 일정기간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방식을 적용함

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 기존문헌 조사[60)]

□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증연구가 있으며, 최근에 이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서베이 연구, 메타분석 연구가 수행됨

○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2012), de Mooij and Ederveen(2005), OECD(2007) 등이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 다음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2012)은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

○ 기존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외국인투자와 조세의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여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는 먼저 분석에 사용된 외국인투자와 조세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함

○ 정성적인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분명함

- 조세는 외국인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 볼 때 '한계적(marginal)'인 역할을 할 뿐임
- 즉, 임금, 원재료에 대한 접근성, 기술요인, 적절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의 가용성, 시장여건 등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비조세요인의 격차를 역전시키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비조세요인이 같은 경우에는 조세가 한계적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량분석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면 종합적으로 세부담의 완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60)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의 관련 내용을 옮긴 것임

○ 정책담당자들은 조세가 외국인투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데 비해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조세는 한계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퍼즐임

□ de Mooij and Ederveen(2005)는 그동안 발표된 427개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외국인투자가 세부담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추정한 탄성치를 종합,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Ⅴ-1>과 같음

○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사용한 모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준탄력성(semi-elasticity)과 탄력성(ordinary elasticity) 평균치, 미디안, 표준편차, 그리고 유의한 추정치의 숫자를 정리하였음

- 준탄력성(semi-elasticity): 세율(t)이 1%포인트 변하는 데 대응한 외국인투자(FDI) 변화율(%) 즉, $\partial(\ln FDI)/\partial t$
- 탄력성(ordinary elasticity): 세율이 1% 변화할 때 그에 대응한 외국인투자 변화율(%) 즉, $\partial(\ln FDI)/\partial(\ln t)$

<표 Ⅴ-1> 조세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극단치는 제외)

	준탄력성(Semi-elasticity)			탄력성(Ordinary elasticity)			관찰치수	유의적인 관찰치수
	평균	미디안	표준편차	평균	미디안	표준편차		
시계열 분석	-2.61	-2.75	6.03	-1.23	-1.28	2.87	105	44
횡단면 분석	-7.16	-4.24	6.92	-0.85	-0.78	0.44	77	48
패널분석	-2.73	-2.41	2.69	-0.78	-0.66	0.75	109	71
이산선택모형	-3.43	-2.80	6.42	-0.30	-0.19	0.51	136	55
전체l	-3.72	-2.91	5.92	-0.75	-0.57	1.55	427	218

자료: de Mooij and Ederveen(2005), OECD(2007) p.60에서 재인용

□ 추정된 탄력성의 평균치는 이산선택(discrete choice) 모형이 -0.3으로 가장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계열(time series) 모형이 -1.23으로 가장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추정된 결과 중 절반 정도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널(panel) 모형이 유의성 있는 결과가 65.1%로 가장 높았고 이산선택모형은 연구결과 중 40%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탄성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계열 모형은 연구결과 중 41.9%만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de Mooij and Ederveen(2005)는 수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부담의 완화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함

□ 연구결과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용한 자료의 차이, 모형의 차이, 추정대상 국가·시기 등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세부담 변수의 경우 한계유효세율, 평균유효세율, 법정세율 등의 지표가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 한계유효세율은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킴에 따라 증가되는 세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표임

- 그러나 세부담 자체를 추정하기 어렵고 추정결과도 다르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실제로 기업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한계유효세율을 산출하여 그것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 평균유효세율은 실제 세부담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산출하는 것으로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손실과 이익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따라 세부담률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 투자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법정세율은 명확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감가상각, 각종 공제와 감면을 고려한 실질적 세부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한계임

□ 추정 모형도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산선택 모형의 경우에는 조세의 역할이 비교적 작을 수 있음

○ 한편 시계열 모형의 경우 표본간 다른 경제변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조세가 비교적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횡단면 분석은 조세 외에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국가간 경제·사회·정치 환경의 차이를 모형 내에서 잘 설명하지 못하면 추정결과의 유의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음

□ 이러한 문제 외에도 Leino and Ali-Yrkkö(2014)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분석이 거시적인 지표인 국제수지표에 나타난 외국인투자 유입액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대한 비판을 제기함

○ 외국자본의 유입 자체가 외국인의 국내 실물투자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M&A형 투자도 있고, 유입된 외국자본이 통과회사(pass-through entity)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 투자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외국인이 국내로 자본을 들여와서 국내 산업에 투자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를 보여주는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장 제4절과 제5절에서는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행태에 대해 분석함

2. 외국인투자 감면실적과 감면규모별 분포

□ 본 연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음

○ 제공받은 자료는 2011~2016년 동안 외국인투자감면을 실제로 받은 법인과, 동일한 기간 동안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법인, 그 외 국내법인에서 추출한 무작위 표본으로 구성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230개, 그 외 외국인투자 법인 814개, 일반 국내법인 3,943개의 2011~2016년 자료를 제공받았음

○ 각 자료에는 영업이익, 세전순이익,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외국인직접투자감면세액, 총자산, 유형자산, 부채, 매출액, 기업연령, 업종 등이 포함됨

□ 다음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들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법인별 조세감면 현황을 살펴봄

□ <표 Ⅴ-2>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 현황을 정리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시자료를 집계한 것이므로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자료와 약간씩 차이가 있음

○ 감면총액은 2011년 8,200억원 규모에서 2016년에는 1,500억원 규모로 감소하였음

○ 조세감면 평균값도 2011년 감면법인당 51억원에서 2016년 17억원으로 감소함

○ 한편 조세감면 중간값은 2011년 6억원에서 약간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7억원이 되었음

○ 조세감면의 평균값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중간값이 다소나마 상승한 것은 대규모 감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감면이 감소한 추세는 최댓값이 2011년 4천억원, 2012년 1천 5백억원, 2013년 1천억원으로 낮아졌으며, 그 이후 200억원대로 낮아진 데서도 확인할 수 있음

<표 Ⅴ-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기업당 감면액			총감면액	기업×연도
	중간값	평균값	최댓값		
2011	582	5,176	392,533	822,908	159
2012	510	3,177	152,352	438,377	138
2013	412	2,870	106,549	361,605	126
2014	660	2,122	24,898	233,409	110
2015	549	1,898	23,999	185,957	98
2016	704	1,749	20,953	150,403	86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표 Ⅴ-3>에서는 감면규모별로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음

○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감면과 10억~50억원 규모의 중규모 감면은 연도별로 변화가 있는데, 두 범주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두 범주를 합하여 비중을 보면, 2011년에 85%에서 2016년에 95%로 10%포인트 정도 상승하였음

○ 한편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감면 비중은 2011년 15%에서 2016년 5%로 낮아짐

<표 Ⅴ-3> 감면기업의 감면 규모별 분포[1)]

(단위: 개, 비중)

연도	감면규모별 분포					합계
	10억원 미만	10억~50억	50억~100억	100억~200억	200억 초과	
2011	95	40	7	11	6	159
	(0.60)	(0.25)	(0.04)	(0.07)	(0.04)	(1.00)
2012	91	29	11	4	3	138
	(0.66)	(0.21)	(0.08)	(0.03)	(0.02)	(1.00)
2013	84	27	8	2	5	126
	(0.67)	(0.21)	(0.06)	(0.02)	(0.04)	(1.00)
2014	67	30	8	3	2	110
	(0.61)	(0.27)	(0.07)	(0.03)	(0.02)	(1.00)
2015	59	30	3	5	1	98
	(0.60)	(0.31)	(0.03)	(0.05)	(0.01)	(1.00)
2016	53	28	1	3	1	86
	(0.62)	(0.33)	(0.01)	(0.03)	(0.01)	(1.00)
합계	449	184	38	28	18	717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연도별로 계산한 비중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효감면율 분석

가. 분석의 의미와 표본의 구성

□ 다음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과 감면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제감면율을 비교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이 감면받은 기업의 실효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면, 감면받은 기업의 세부담률이 다른 기업들보다 낮을 것이고, 공제감면율은 다른 기업보다 높을 것임

○ 한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공제감면율과 다른 기업의 공제감면율 격차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혜택보다는 적을 수 있음

○ 이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투자 관련 다른 공제제도를 중복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 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중복 배제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살펴봄

□ 공제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함

$$\text{공제감면율} = \frac{\text{세액공제 및 감면}}{\text{산출세액}}$$

□ 공제감면율 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을 산출세액이 1억원 이상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한함

○ 산출세액이 지나치게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제감면율이 과도하게 높은 극단적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분석의 정확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 공제감면을 받은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공제감면율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분석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함

□ <표 Ⅴ-4>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기업 자료에서 산출세액 1억원 이상인 제조업의 기업만 추린 표본의 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음

○ 외투감면을 받은 표본(이하 본 절에서 '감면법인')은 당초 558개에서 386개에서, 당초 표본의 69%로 축소되었음

○ 비교대상 외국인투자법인(이하 본 절에서 '외투법인')은 당초 3,347개에서 652개로서 당초 표본의 19%만 분석대상으로 포함됨

○ 비교대상 국내법인(이하 본 절에서 '국내법인')은 당초 19,948개에서 1,092개연도로서 당초 표본의 5%만 분석대상으로 포함됨

○ 외국인투자법인은 비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축소비율이 높아졌으며 국내법인은 산출세액이 1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비중이 높아서 축소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표 Ⅴ-4> 공제감면율 분석 대상 표본기업의 구성

(단위: 개)

연도	감면법인	외투법인	국내법인	합계
2012	89	124	195	408
2013	83	115	206	404
2014	81	125	212	418
2015	71	129	244	444
2016	62	159	235	456
합계	386	652	1,092	2,130
원표본	558	3,347	19,948	24,306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나. 규모·기업형태별 공제감면율

□ <표 Ⅴ-5>에서는 산출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표본기업 전체를 5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의 공제감면율을 비교하였음

○ 표는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되는데, 패널 A는 감면법인, 패널 B는 외투법인, 패널 C는 일반법인에 대한 것임

○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감면법인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고, 그 다음이 외투법인, 일반법인의 순임

- 감면법인은 47.6%가 5분위에 해당되며 외투법인은 31.2%, 일반법인은 3.5%만 5분위임
- 일반법인의 경우 62.2%가 1분위 또는 2분위에 속함

○ 공제감면율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전체 평균보다는 기업규모별 공제감면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표에 나타난 산출세액 규모별 공제감면율을 보면, 산출세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감면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함

○ 일반법인의 경우 1분위 평균 공제감면율은 45%인 데 비해 5분위는 11%로 1분위의 4분의 1 수준임

- 외투법인은 1분위 38%, 5분위 12%로 1분위 공제감면율이 5분위의 3배를 넘음

○ 한편 감면법인의 공제감면율을 보면, 1분위 61%, 5분위 47%로, 산출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감면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낮아지는 폭은 대조군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적음

○ 감면법인의 공제감면율 중 40%포인트 정도는 외투감면에 따른 것으로서 산출세액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한편 외투감면을 제외한 공제감면율은 1분위 17%, 5분위 7%로 공제감면율 격차가 큼

<표 Ⅴ-5> 세액규모별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공제감면율 비교

(단위: 개, 백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패널 A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감면법인)						
표본규모(기업연도)	17	21	38	126	184	386
과세표준	810	1,314	3,119	9,162	81,833	42,414
산출세액	144	249	616	1,847	17,688	9,115
공제감면(외투감면포함)	85	119	313	993	6,610	3,516
공제감면(외투감면 제외)	25	36	80	193	825	467
공제감면율(외투감면포함)	0.61	0.49	0.51	0.55	0.47	0.51
공제감면율(외투감면 제외)	0.17	0.15	0.13	0.11	0.07	0.10
패널 B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표본규모(기업연도)	55	91	127	175	204	652
과세표준	769	1,254	2,821	8,219	69,430	24,719
산출세액	136	235	553	1,657	14,965	5,279
공제감면	51	73	142	329	1,454	585
공제감면율	0.38	0.33	0.26	0.20	0.12	0.22
패널 C 일반 국내기업 표본(일반법인)						
표본규모(기업연도)	354	314	261	125	38	1,092
과세표준	1,065	1,733	3,399	9,551	60,054	4,839
산출세액	133	241	497	1,485	12,078	822
공제감면	59	87	167	410	764	157
공제감면율	0.45	0.36	0.33	0.28	0.11	0.36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공제감면율의 차이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중 상당부분은 조세지원제도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하여 상쇄된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쇄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외투감면에 따른 공제감면이 산출세액의 40% 정도 되는데, 산출세액 1분위 기업의 경우 이 중 21~28%포인트는 중복적용 배제에 따른 효과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감면효과는 산출세액의 12~19%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산출세액 5분위 기업의 경우에는 외투감면에 따른 공제감면율 40%포인트 중에서 4~5%포인트 정도만 중복적용 배제에 따른 효과이며, 실효감면율이 산출세액의 3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 혜택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규모가 큰 기업은 외투감면 외에 다른 조세감면 혜택이 적기 때문임

□ <표 Ⅴ-6>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외투기업 감면을 받은 기업과 그 외 기업의 공제감면율을 비교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우 외투감면에 따른 공제감면율 46% 중 26%포인트 정도가 중복배제에 따른 효과로 상쇄되어 외투감면의 순공제감면 효과는 산출세액의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견기업은 외투감면에 따른 공제감면율 42% 중 12~27%포인트가 중복배제에 따른 효과로 상쇄되어 외투감면의 순공제감면 효과는 산출세액의 15~30% 정도인 것으로 판단됨

○ 일반기업의 경우 외투감면에 따른 공제감면율 41% 중 1~12%포인트가 중복배제에 따른 효과로 상쇄되어 외투감면의 순공제감면 효과는 산출세액의 28~4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공제감면율 비교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외투감면 기업의 공제감면율은 50% 수준이며, 그 중 외투감면에 따른 공제감면율은 대체로 40%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대체로 산출세액 규모가 클수록 공제감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조세지원제도 중복적용 배제에 따른 효과로 상쇄되어 외투감면의 순공제감면 효과는 40% 수준보다 상당히 낮음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중복배제의 영향이 커서 외투감면의 순효과는 낮아지며, 규모가 큰 기업에서 외투감면의 순효과가 큰 편임

- 산출세액 1분위 기업의 경우 외투감면의 순세액감면 효과가 산출세액의 12~19% 정도인 데 비해, 5분위 기업은 35% 정도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외투감면의 순 세액감면 효과가 산출세액의 20% 정도인데, 일반기업은 28~40% 정도로 나타남

<표 Ⅴ-6> 기업형태별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공제감면율 비교

(단위: 개, 백만원, %)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패널A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감면법인)			
표본규모(기업연도)	43	238	105
과세표준	9,879	62,137	11,030
산출세액	2,026	13,425	2,248
공제감면(외투감면 포함)	1,201	5,047	994
공제감면(외투감면 제외)	179	683	97
공제감면율(외투감면 포함)	0.58	0.51	0.48
공제감면율(외투감면 제외)	0.12	0.11	0.06
패널B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표본규모(기업연도)	220	266	166
과세표준	3,613	50,477	11,414
산출세액	716	10,887	2,341
공제감면	223	981	431
공제감면율	0.38	0.12	0.18
패널C 일반 국내기업 표본(일반기업)			
표본규모(기업연도)	957	59	71
과세표준	2,410	34,739	12,980
산출세액	351	6,899	2,159
공제감면	112	534	465
공제감면율	0.38	0.23	0.3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다. 외투감면기업과 그 외 기업의 공제감면율 격차 - 회귀분석

□ 앞서 <표 Ⅴ-5>와 <표 Ⅴ-6>에서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 표본의 공제감면율을 검토하였는데,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감면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조세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한 회귀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음

□ $EXEMPT = \beta_0 + \beta_1 D + \beta_2 NTAX + \beta_3 ROA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AGE$

- ○ EXEMPT: 공제감면율로서 공제감면금액을 산출세액으로 나눈 값
- ○ D: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
- ○ NTAX: 산출세액 크기로 구분한 5분위수. 1분위가 가장 작고 5분위가 가장 큼
- ○ ROA: 총자산수익률로서 세전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SIZE: 총자산 장부가액의 자연로그
- ○ LEV: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 ○ AGE: 기업연령으로 설립연도와 2016년의 연도 차이

□ <표 Ⅴ-7>~<표 Ⅴ-9>에서는 위와 같은 회귀모형을 표본별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 <표 Ⅴ-7>에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으며, <표 Ⅴ-8>에서는 감면법인과 비감면 외투법인을 대조한 분석결과를, <표 Ⅴ-9>에서는 외투법인과 국내법인을 대조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음

□ 표에 정리된 추정계수 중 외투감면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 d의 추정계수가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 모든 회귀분석에서 d의 추정계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투감면이 기업의 공제감면율을 높이는 데 유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
- ○ 전체적으로 외투감면을 받는 기업의 공제감면율이 외투감면을 받지 않는 기업에 비해 22.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Ⅴ-7>, 전체표본 참조)

○ 대조군 표본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외투감면 법인과 그 외 외투법인의 공제감면율 격차가 28.5%포인트로 국내기업과의 공제감면율 격차 14.3%포인트보다 큼

□ 중소기업과 일반·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중소기업보다 일반·중견기업에서 외투감면의 공제감면율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외투감면 외의 다른 공제감면이 중소기업에 많이 집중되는 데 비해 외투감면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여 오히려 더 큰 기업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외투감면 기업의 공제감면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평균 17.5%포인트 높은 데 비해, 일반·중견기업은 29.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조군이 외투기업인 경우에 공제감면율 격차는 각각 21.8%포인트, 32.3%포인트이고, 일반 국내기업을 대조군으로 한 경우에는 각각 15.8%포인트와 19.2%포인트임

<표 Ⅴ-7>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친 영향 분석 - 전체표본

변수	전체표본		중소기업 표본		중소기업 제외 표본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228	8.14***	0.175	2.17**	0.294	15.28***
ntax	-0.179	-14.05***	-0.283	-14.39***	-0.040	-3.14***
roa	0.193	1.98*	0.880	6.41***	-0.388	-3.48***
size	0.145	11.68***	0.422	17.00***	0.038	3.75***
lev	-0.064	-1.27	-0.239	-3.22***	0.035	0.75
age	-0.004	-4.16***	-0.006	-3.86***	-0.005	-6.28***
상수항	-0.603	-5.54***	-2.992	-13.83***	0.059	0.62
N		2,131		1,220		911
F		52.64***		54.66***		73.21***
Adj. R^2		0.127		0.209		0.323

주: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Ⅴ-8>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친 영향 분석 - 감면기업 vs 외투기업

변수	전체표본		중소기업 표본		중소기업 제외 표본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285	14.58***	0.218	3.83***	0.323	16.90***
ntax	-0.063	-4.80***	-0.121	-3.64***	-0.032	-2.30**
roa	-0.302	-2.78***	-0.089	-0.34	-0.241	-2.17**
size	0.027	2.45**	0.195	5.03***	0.026	2.46**
lev	0.139	3.03***	0.170	1.63	0.099	2.08**
age	-0.004	-4.00***	-0.005	-2.47**	-0.004	-4.60***
상수항	0.226	2.34**	-1.190	-3.55***	0.074	0.77
N		1039		263		776
F		65.44***		13.83***		78.58***
Adj. R^2		0.271		0.227		0.375

주: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Ⅴ-9> 외투감면이 공제감면율에 미친 영향 분석 - 감면기업 vs 국내기업

변수	전체표본		중소기업 표본		중소기업 제외 표본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143	3.77***	0.158	1.80*	0.192	5.46***
ntax	-0.197	-11.39***	-0.301	-13.24***	-0.043	-2.22**
roa	0.397	3.18***	0.965	6.35***	-0.175	-0.92
size	0.195	11.59***	0.457	16.00***	0.034	2.13**
lev	-0.158	-2.36**	-0.328	-3.79***	-0.054	-0.73
age	-0.006	-4.14***	-0.007	-3.69***	-0.009	-6.56***
상수항	-0.998	-6.66***	-3.253	-13.07***	0.278	1.67
N		1479		1000		479
F		31.98***		47.84***		17.91***
Adj. R^2		0.115		0.22		0.175

주: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라. 공제감면율 분석결과 요약 및 분석의 한계점

□ 기업의 평균 공제감면율을 비교해 본 결과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는 기업의 공제감면율은 대략 평균 50% 정도였지만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들도 20~30%의 공제감면을 받고 있었으므로 외국인투자 감면의 상대적인 공제감면 효과는 산출세액의 20~30%라고 할 수 있음

○ 산출세액 규모를 5분위로 구분하거나 중소기업 여부로 표본을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대략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이는 외국인투자 감면의 실질적인 세부담 절감 효과는 명목감면율이 시사하는 것보다 상당히 작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통제변수를 도입한 회귀분석에서도 이런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평균적으로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이 외투감면을 받지 않는 기업보다 공제감면율이 22.8%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으로 표본을 한정하면 외국인투자 감면기업의 공제감면율이 외투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17.5%포인트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위 분석에서 감면기업은 외투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 즉, 이전에 외투감면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지나서 감면을 받지 않는 기업은 감면기업에 포함되지 않음

○ 기업이 조세감면이 끝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것을 기대하며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실제로 그렇다면 위의 감면기업 공제감면율은 외투감면 승인을 받고 감면을 받은 기업 전체의 공제감면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공제감면율 격차는 본 절에서 검토한 것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그러므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폐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평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효세율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음

4.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투자행태 분석

가. 분석의 의의 및 투자지출의 측정

□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이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음

○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확고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임

○ 여기서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한 가지 연구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의 연구사례를 추가하는 것일 뿐 확고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더 투자를 많이 하였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춤

- Leino and Ali-Yrkkö(2014)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상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국내 실물투자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분석해야 함

□ 본 절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일반 국내기업 표본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하였는지 살펴봄

□ 기업의 핵심적인 활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투자활동은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취득하여 미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요활동임

□ 따라서 개별 기업의 투자활동은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음

○ (1) 일정기간 동안의 총자산 증가: 기업의 투자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총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자산 증가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측정할 수 있음

○ (2) 일정기간 동안의 유형자산 증가: 기업의 대부분 생산활동은 유형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총자산이라는 포괄적인 측정치보다는 유형자산 증가를 투자활동의 측정치로 볼 수 있음

○ (3)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투자활동 수행에는 현금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투자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순현금흐름을 투자활동 측정치로 볼 수 있음

□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나 기업의 홍보나 광고선전활동 등도 중요한 투자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투자활동은 구체적인 투자활동 측정치에서 제외함

□ 본고에서는 기업의 투자지출 규모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봄

○ 당기 총자산 증가(INVEST1)=당기말 총자산 장부가액-전기말 총자산 장부가액

○ 당기 유형자산 증가(INVEST2)=당기말 유형자산 장부가액-전기말 유형자산 장부가액

□ 회귀분석에서는 증가율 지표를 사용하는데, 연도별 증가율은 변동이 심하므로2011~2016년의 평균투자지출 변화를 사용하여 분석함

○ 즉, 2011~2016년에 1회 이상 감면을 받은 기업의 평균 총자산 및 유형자산 증가율이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일반 국내기업에 비해 더 높은지 여부를 분석함

○ 2011~2016년 평균증가율은 2011~2016년 연도별 분석 대상 자산 증가액 평균치를 같은 기간의 해당 자산 장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증가율을 GINVEST, 평균 증가율을 Avg-GINVEST로 표현함

나. 표본과 기술통계

□ 투자지출 분석을 위한 표본은 제조업에 속하면서 2011~2016년 동안 평균 총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함

○ 제조업으로 한정한 것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투자규모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체임

○ 평균 총자산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감면표본과 다른 대응표본들 간에 총자산규모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

- 감면기업의 규모가 큰 데 비해 일반 국내기업은 소규모 기업이 많으므로 표본에서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함

□ <표 Ⅴ-10>에서는 투자지출 분석을 위한 표본 구성을 보여줌

○ 제조업으로 표본을 제한하여 외투법인 표본규모가 크게 줄었고 평균총자산규모를 100억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내법인 표본이 크게 축소되었음

<표 Ⅴ-10> 투자지출 분석을 위한 표본의 구성

(단위: 개)

연도	감면법인		외투법인	국내법인	합계
	감면[1]	감면 외[2]			
2011	106	35	135	295	571
2012	90	49	140	297	576
2013	84	43	131	301	559
2014	81	51	134	300	566
2015	69	63	136	307	575
2016	62	61	147	304	574
합계	492	302	823	1,804	3,421
기업수	147	147	180	311	

주: 1) 2011~2016년에 1회 이상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 중에서 실제로 감면을 받은 기업연도
2) 2011~2016년에 1회 이상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의 감면을 받지 않았던 기업연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표 Ⅴ-11>에서는 기술통계량을 정리하였음

○ 총자산증가율 평균(Avg_GINVEST1)과 유형자산 증가율 평균(Avg_GINVEST2) 면에서 모두 감면기업과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표 Ⅴ-11> 투자지출 증가율 기술통계 - 기업연도 분석단위[1)]

표본구분	투자지출	평균	p10	p25	p50	p75	p90
감면 (n=147)	Avg_GINVEST1	0.08	-0.04	0.01	0.07	0.15	0.23
	Avg_GINVEST2	0.03	-0.03	-0.01	0.01	0.05	0.12
외투 (n=180)	Avg_GINVEST1	0.09	-0.05	0.01	0.07	0.14	0.24
	Avg_GINVEST2	0.02	-0.01	0.00	0.01	0.04	0.09
국내 (n=302)	Avg_GINVEST1	0.07	-0.03	0.02	0.06	0.12	0.20
	Avg_GINVEST2	0.03	-0.02	0.00	0.02	0.06	0.11

주: 1) 감면기업 평균값에 대한 t검정 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다. 분석모형과 분석결과

□ 투자지출에 조세감면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의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연도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과 기업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함

○ $GINVEST = \beta_0 + \beta_1 D + \beta_2 ROA + \beta_3 LEV + \beta_4 AGE$

○ GINVEST: 총자산 증가율과 유형자산 증가율

○ D: (기업연도분석) 2012~2016년 동안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을 실제로 받았던 기업연도는 1, 아니면 0

(기업분석) 2011~2016년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을 실제로 받았던 기업은 1, 아니면 0

○ ROA: 세전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LEV: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 AGE: 기업연령으로 설립연도와 2016년의 연도 차이

○ 각 변수의 2011~2016년 평균치를 사용함

□ <표 Ⅴ-12>에서는 2011~2016년 기간에 1회 이상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았던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간의 기업을 분석단위로 하여 총자산증가율 설명함수를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표 Ⅴ-13>에서는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음

□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대조군 기업을 외투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국내기업을 대조군으로 한 경우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외투감면 여부에 따른 투자지출 비용 격차를 보여주는 가변수 D의 추정계수를 보면, 총자산증가율을 분석한 <표 Ⅴ-12>에서는 세 가지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

○ 한편 <표 Ⅴ-13>의 유형고정자산 분석에서는 D변수의 추정계수가 모두 음수이긴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1~2016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그 외 국내기업에 비해 투자지출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외투감면 외에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추정계수를 보면, 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투자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체로 기업의 설립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율이 기업의 존속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은 대체로 투자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Ⅴ-12> 투자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 기업분석, 총자산증가율

변수	전체표본		감면 vs. 외투		감면 vs. 국내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029	-2.650**	-0.030	-2.020**	-0.038	-3.190***
Avg_ROA	0.468	7.670***	0.227	2.560**	0.607	8.140***
Avg_LEV	0.035	1.480	0.027	0.730	0.046	1.730
AGE	-0.002	-5.160***	-0.003	-4.080***	-0.002	-3.710***
상수항	0.077	3.840***	0.118	3.850***	0.059	2.570**
N		621		320		446
F		22.890***		6.210***		22.180***
Adj. R^2		0.124		0.061		0.160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Ⅴ-13> 투자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 기업분석,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변수	전체표본		감면 vs. 외투		감면 vs. 국내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006	-0.940	-0.004	-0.430	-0.009	-1.150
Avg_ROA	0.049	1.310	-0.079	-1.620	0.109	2.200*
Avg_LEV	0.026	1.770	0.016	0.780	0.043	2.430**
AGE	-0.001	-3.660***	-0.001	-3.080***	-0.001	-2.010*
상수항	0.035	2.860***	0.054	3.210***	0.019	1.260
N		621		320		446
F		5.310***		3.780***		3.950***
Adj. R^2		0.027		0.033		0.026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표 Ⅴ-14>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에 국한하여 감면을 더 많이 받은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 설명변수에 외국인투자 감면규모의 자연로그(ln(FDI))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통제변수로 총자산 장부가액의 자연로그(ln(Asset)) 변수를 추가하였음

<표 Ⅴ-14> 투자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 감면기업의 감면규모가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	GINVEST1		GINVEST2		GINVEST3		GINVEST4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ln(FDI)	0.004	0.370	0.002	0.310	0.018	1.790	0.002	0.370
ln(Asset)	-0.032	-2.330**	-0.005	-0.760	-0.011	-0.770	0.009	1.250
ROA	0.365	2.730**	0.043	0.640	0.476	3.500***	-0.103	-1.450
LEV	0.026	0.490	0.060	2.220**	0.166	2.810**	0.068	2.200*
AGE	0.000	-0.180	0.000	0.250	-0.002	-1.320	0.000	-0.760
상수항	0.368	3.040	0.039	0.640	0.017	0.130	-0.095	-1.400
N		416		416		380		380
F		6.100***		1.270		7.930***		3.510***
Adj. R^2		0.058		0.000		0.083		0.031

주: t통계량 유의수준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추정결과를 보면, 감면규모 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양수이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감면규모가 감면기업의 투자지출 증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함

○ 다른 통제변수 중에서는 총자산이 많은 기업이 투자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투자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도 투자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투자행태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으로 기대하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감면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은 기업들과 다양한 대응표본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외국인투자 감면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음

□ 투자지출을 당기총자산 및 유형자산 증가율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의 영향을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 감면 기업들이 대응표본들에 비해 총자산이나 유형자산 증가율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투자 감면금액과 투자지출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면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감면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음

5.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고용효과 분석

가. 분석의 의의 및 고용효과의 측정

□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에서 기대하는 효과 중 최근 들어 중요시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임

○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이 고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움

○ 다만, 조세지원의 긍정적인 효과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대적인 고용수준을 비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조세감면법인들과 이에 대응되는 외국인투자 기업들 간의 고용수준 및 고용수준 변동의 차이를 검증함

○ 고용에 따른 별도의 조세지원을 받는 국내기업과의 비교가 유용할 것이나 자료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함

□ 한 기업의 특정연도 고용수준은 연도말 현재 종업원 수로 측정되며 이를 다시 2011~2016년 동안 평균하여 고용수준으로 측정하고 2011년과 2016년 사이의 변동을 고용수준 변동으로 측정함

○ 고용수준 = 2011~2016년 동안 연도말 현재 종업원 수의 평균

○ 고용수준 변동 = 2016년 연도말 현재 종업원 수 - 2011년 연도말 종업원 수

나. 표본 및 기술통계

□ 표본은 앞의 투자효과분석과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였음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과 동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함

○ 투자분석에서 대조군에 포함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서 국내기업과의 비교는 하지 못하였음

□ 아래의 <표 Ⅴ-15>에서는 2011~2016년 기간에 최소한 1회 이상 외국인투자감면을 받은 기업(감면)과 한 번도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던 기업(외투) 간 고용수준의 기술통계를 보여줌

□ <표 Ⅴ-15>의 패널A를 보면 외국인투자 감면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27명의 고용수준을 보여주어서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평균인 145명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간값은 감면기업들은 82명인 데 비하여 외투기업들은 30명에 불과해서 여전히 감면기업들의 고용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평균과 중간값의 차이가 커서 고용수준 분포가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Ⅴ-15>의 패널B에서는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감안하여 고용수준에 로그값을 취한 값을 비교하였음

○ 고용인원이 0인 표본들이 있어서 종업원 수에 1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함

○ 대체로 패널A의 결과와 유사하게 감면기업들의 고용수준이 일반적인 외투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다소 낮아짐

□ 고용수준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표 Ⅴ-15>의 패널C에서는 제조업에 속한 표본만으로 고용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감면기업은 평균 279명인 데 비하여 외투기업은 191명으로 여전히 감면기업이 많지만 차이는 패널A에 비해 격차가 많이 축소되었음

<표 Ⅴ-15> 고용수준 및 변동의 기술통계

(단위: 명)

집단구분	표본규모	고용수준			
		평균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패널A: 2011～2016 연도말 종업원 수 평균(전체)					
감면	230	327	82	0	20,524
외투	814	145***	30**	0	7,282
패널B: 2011～2016 연도말 종업원 수 평균의 자연로그					
감면	230	4.37	4.42	0.00	9.93
외투	814	3.51*	3.42**	0.00	8.89
패널C: 2011～2016 연도말 종업원 수 평균(제조업)					
감면	174	279	106	2	5,666
외투	245	191***	67**	0	2,752
패널D: 2011～2016 연도말 종업원 수 평균의 자연로그(제조업)					
감면	174	4.61	4.67	1.15	8.64
외투	245	4.28**	4.23**	0.00	7.92
패널E: 2011～2016 연도말 종업원 수 변동(전체)					
감면	172	-15	11	-3,516	849
외투	535	36**	5	-254	2,677
패널F: 2011～2016 연도말 종업원 수 변동(제조업)					
감면	130	0	15	-3,516	849
외투	158	44	9	-254	2,677

주: 감면기업과 외투기업 간 기술통계량 차이 중 평균 차이에 대해서 t통계량, 중간값 차이에 대해서는 순위합 검정.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중간값은 감면기업들은 106명인데 비하여 외투기업들은 67명으로 감면기업의 고용수준이 높음

○ 결론적으로 제조업만을 보더라도 감면기업은 비감면 외투기업에 비하여 고용수준이 높음

□ <표 Ⅴ-15>의 패널D에서는 제조업 표본에서 종업원 수에 로그값을 취한 값에 대한 분석결과인데 앞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표 Ⅴ-15>의> 패널E와 F에서는 전체 표본과 제조업 표본에서 2011년과 2016년 사이의 종업원 수 변동을 보여줌

○ 패널E에서 평균을 보면 감면기업은 15명이 오히려 감소한 반면 외투기업은 36명이 증가하였는데 중간값을 보면 감면기업은 11명이 증가하였고 외투기업은 5명이 증가하였음

○ 패널F에서 평균을 보면 감면기업은 변동이 없었지만 외투기업은 44명이 증가하였는데 중간값을 보면 감면기업은 15명이 증가하였고 외투기업은 9명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고용수준 변동은 감면기업과 외투기업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1) 고용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 고용수준에 조세감면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함

○ $Avg_EMPLOYEE = \beta_0 + \beta_1 D + \beta_2 Avg_SIZE + \beta_3 Avg_LEV + \beta_4 AGE$

○ Avg_ENPLOYEE: 2011~2016년 동안의 연평균 연말기준 종업원 수에 1을 더한 값의 자연로그

○ D: 2011~2016년 동안 1회 이상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을 실제로 받았으면 1, 아니면 0

○ Avg_SIZE: 2011~2016년 동안의 연평균 총자산의 자연로그

○ Avg_LEV: 2011~2016년 동안의 연평균 총부채를 연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
○ AGE: 기업연령으로 설립연도와 2016년의 연도 차이

□ <표 Ⅴ-16>과 <표 Ⅴ-17>에서는 위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표 Ⅴ-16>은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표 Ⅴ-17>은 제조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각 분석에서 두 개의 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모형(1)은 총자산 자연로그만 통제하였고 모형(2)에서는 나머지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것임

□ 관심변수인 D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아서 감면기업이 비감면 외투기업들에 비하여 고용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결과는 앞의 <표 Ⅴ-15>에 정리된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바와는 다른 것인데, 총자산 규모를 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즉, 감면기업들의 총자산규모가 비감면 외투기업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표 Ⅴ-15>에서 보여준 결과는 총자산규모에 따라서 고용수준이 높아진 결과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Ⅴ-16> 외투감면이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전체 표본

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07	-0.85	0.07	0.79
Avg_SIZE	0.58	38.65***	0.51	29.83***
Avg_LEV			0.20	1.68*
AGE			0.03	7.09***
상수항	-1.82	-12.75***	-1.79	-11.69***
N		1,044		1,044
F		435.1***		806.5***
Adj. R^2		0.607		0.624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표 Ⅴ-17>에서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앞선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관심변수인 D변수의 계수를 보면 모형(1)에서는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고 모형(2)에서는 10% 이내에서 약간 유의한 정(+)의 값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제조업으로 표본을 한정해보아도 패널A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Ⅴ-17> 외투감면이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제조업 표본

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01	0.06	0.17	1.85*
Avg_SIZE	0.59	26.50***	0.56	23.37***
Avg_LEV			0.64	3.10***
AGE			0.02	3.98***
상수항	-1.89	-7.88***	-2.26	-8.61***
N		419		419
F		193.2***		358.25***
Adj. R^2		0.631		0.648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표 Ⅴ-18>에서는 감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투자 감면금액의 자연로그(log_FDI)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였음

○ 이는 외국인투자 감면규모가 고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관심변수인 log_FDI변수의 계수를 보면 모형(1)과 모형(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감면 규모가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앞에서의 회귀분석결과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임

<표 Ⅴ-18> 외투감면 규모가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회귀분석 - 감면기업 표본

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log_FDI	0.03	0.76	0.04	1.04
Avg_SIZE	0.57	10.48***	0.52	9.78***
Avg_LEV			0.56	1.93*
AGE			0.04	4.82***
상수항	-2.10	-4.90***	-2.48	-5.76***
N		230		230
F		142.0**		85.6***
Adj. R^2		0.552		0.592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2) 고용수준 변동에 대한 회귀분석

□ 고용수준 변동에 조세감면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함

○ $N_EMPLOYEE = \beta_0 + \beta_1 D + \beta_2 N_SIZE + \beta_3 N_PPE + \beta_4 N_DEBT + \beta_5 AGE$

○ N_ENPLOYEE: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종업원 수 변동의 크기에 따른 10분위수, 변동이 클수록 값이 큼

○ D: 2011~2016년 동안 최소한 1회 이상 외국인투자법인 조세감면을 실제로 받았으면 1, 아니면 0

○ N_SIZE: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총자산 변동의 크기에 따른 10분위수, 변동이 클수록 값이 큼

○ N_PPE: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유형자산 변동의 크기에 따른 10분위수, 변동이 클수록 값이 큼

○ N_DEBT: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총부채 변동의 크기에 따른 10분위수, 변동이 클수록 값이 큼

○ AGE: 기업연령으로 설립연도와 2016년의 연도 차이

□ <표 Ⅴ-19>에서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위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모형(1)은 총자산만 통제하였고 모형(2)에서는 나머지 통제변수들도 투입하였음

○ 관심변수인 D변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아서 비감면 외투기업들에 비해 감면기업이 고용수준이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결과는 앞의 <표 Ⅴ-16>에 정리된 고용수준 회귀분석의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임

<표 Ⅴ-19> 외투감면과 고용증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전체 표본

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07	0.32	0.06	0.28
N_SIZE	0.53	16.31***	0.44	9.88***
N_PPE			0.19	5.06***
N_DEBT			-0.02	-0.50
AGE			0.00	0.38
상수항	2.51	12.35***	2.00	6.86***
N		707		707
F		134.8***		60.8***
Adj. R^2		0.275		0.297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표 Ⅴ-20>에서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관심변수인 D변수의 계수를 보면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으로 표본을 한정해보아도 패널A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

<표 Ⅴ-20> 외투감면과 고용증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제조업 표본

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D	0.15	0.43	0.15	0.45
N_SIZE	0.47	8.58***	0.38	5.61***
N_PPE			0.20	3.38***
N_DEBT			-0.04	-0.65
AGE			0.00	-0.24
상수항	2.92	7.30***	2.56	4.53***
N		288		288
F		37.1***		17.6***
Adj. R^2		0.201		0.224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표 Ⅴ-21>에서는 감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투자 감면금액의 순위변수(N_FDI)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였음

○ 관심변수인 N_FDI변수의 계수를 보면 모형(1)과 모형(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음

<표 Ⅴ-21> 외투감면 규모와 고용증가의 관계 분석 - 감면표본

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통계량	계수	통계량
N_FDI	0.51	1.56	0.54	1.61
N_SIZE	0.36	5.01***	0.28	2.93***
N_PPE			0.16	2.14**
N_DEBT			-0.02	-0.19
AGE			-0.02	-0.88
상수항	-1.11	-0.38	-1.33	-0.44
N		172		172
F		16.4***		7.6***
Adj. R^2		0.152		0.162

주: t통계량 유의수준 *** p-value <0.01, ** p-value <0.05, * p-value <0.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라. 고용효과 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 본 절에서는 외국인투자 감면기업이 조세감면의 영향으로 고용을 증가시켰는지 보기 위하여 2011~2016년 동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감면기업)의 고용수준과 고용수준 변동을 감면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과 비교하였음

□ 비교한 결과, 단순한 기술통계만 보면 감면기업은 외투기업에 비하여 고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자산규모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총자산규모에서 감면기업들의 고용수준은 외투기업들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감면기업과 외투기업 간의 2011년과 2016년 사이의 고용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단변량과 다변량 회귀분석 모두에서 앞선 고용수준 분석과 동일하게 감면기업의 고용수준 변동이 외투기업에 비하여 크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고용수준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1. 논의 배경

□ 2012년 12월 5일에 EU에서 조세정책 비협조 국가(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목록에 포함되었음

○ 지정내역을 보면, 우리나라에 유해조세지원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가 있는데, 개정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우리나라의 유해조세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018년 1월 비협조적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관찰대상국가 목록(greylist)에 포함됨

○ 이 약속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유해성을 점검하고 유해하지 않은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EU의 유해조세지원제도 판단은 기본적으로 OECD/BEPS 프로젝트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OECD/BEPS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유해조세제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음

○ OECD의 유해조세실무에 관한 2017년 update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면제도 중 기술의 이전과 취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경우 유해하지 않고(not harmful),[61] 특정 지역 감면제도의 경우 '범위 밖(out of scope)'이라는 결론을 내렸음[62]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OECD의 BEPS 프로젝트 적용대상인 유해조세경쟁은 이동성이 높은 분야인 금융·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되고, 특정지역 감면제도의 주된 감면대상 사업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위 밖'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임[63]

61) OECD(2017), p. 3
62) OECD(2017), p. 6

○ 위 우리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특정기술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OECD의 기본입장은 「조특법」상 감면제도를 유해 우대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임

□ 한편 EU는 「조특법」상 감면제도가 유해 우대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우리 정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EU는 OECD와 달리 유해 조세경쟁의 적용대상 분야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함[64]

- 결국, 우리 정부는 EU와 OECD의 입장 차이를 적용대상 사업 분야의 차이(고이동성 사업 분야 vs. 제조업 포함 모든 사업 분야)로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OECD와 EU의 각 기준의 적용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OECD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EU 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OECD도 적용분야를 확대하면 조특법상 감면제도가 유해 우대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음에서는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유해 요소를 점검하여 추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제기준을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국제기준의 관점에서 평가함

2.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단기준

가. EU 기준

□ EU의 2017년 12월 5일자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EU 명단에 관한 이사회 결정(the Council Conclusions)에 의하면, EU 명단을 작성하기 위한 판정기준(criteria)은 2016년 11월 8일자 이사회 결정을 따르고 있음[65]

63)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7.12.6.), p. 2
64)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7.12.6.), p. 2
65) Doc. 15429/17 FISC 345 ECOFIN 1088 Annex para 1.

□ 2016년 11월 8일자 이사회 결정의 부속서는, 비협조지역 명단을 작성하기 위한 판정기준(이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판정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지침,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전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66]

□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판정기준으로는, ① 조세투명성 기준(tax transparency criteria), ② 공평과세(fair taxation), ③ BEPS 대응조치의 실행(implementation of anti-BEPS measures), 세 가지가 있음

○ 위 세 가지 기준들을 아울러서 ‘조세분야 양호통치(tax good governance) 기준’이라고 함

○ 해당 지역이 위 세 가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심사절차에서 누적적으로(cumulatively) 평가됨

○ 미래 심사에서는, EU 이사회가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의 전개, 이들 표준들의 순위 및 이 분야 모든 관련 국가들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진행의 중요성을 유념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들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1) 조세투명성 기준

□ 조세투명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됨

□ 제1기준(1.1)

○ OECD 자동 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표준(공통 보고표준(the Common Reporting Standard-CRS)) 관련 초기 기준

- 대상 지역은, 늦어도 2018년(2017년에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에는 정보교환을 실행하는 동시에, CRS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로 약속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약(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이나 양자 간 협약을 통해서 2017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들과 정보교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함

○ 2018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CRS 관련 미래 기준

- 대상 국가는 AEOI CRS와 관련하여 글로벌 포럼(the Global Forum)에서 매기는 등급 중 “대체적 준수(Largely Complaint)”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함

66) Doc. 14166/16 FISC 187 ECOFIN 1014 Annex para 2, 4, 6.

□ 제2기준(1.2)

○ 대상 지역은 OECD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 표준의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procedure)에 관하여 글로벌포럼이 매기는 등급 중 적어도 “대체적 준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제3기준(1.3): 주권 국가의 경우[67]

○ 대상 지역은, (i) 개정 OECD 세금문제의 상호 행정협조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MCMAA)을, 합리적 시간의 틀(a reasonable time frame)[68] 내에서, 비준을 받거나 비준을 받기로 합의하거나 비준절차를 진행하거나 시행하기로 약속하거나 또는 (ii) EOIR 및 AEOI를 모두 효과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한 정보교환협약 네트워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야 함

□ 제4기준(1.4)

○ 미래 기준: 향후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에서 수익권 소유자 측면을 조세투명성 심사의 제4기준으로 포함시킬 예정임

□ 다음의 예외사항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대상 지역은 제1기준부터 제3기준까지 적어도 2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조세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다만, 위 예외는, 제2기준에서 “미준수(Non Compliant)”등급을 받았거나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어도 “대체적 준수” 등급을 받지 못한 국가들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기사항: OECD와 G20이 현재 준비 중인 비협조지역 명단에 들어간 국가나 지역들은, EU 비협조지역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대상에 선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EU 명단에 포함됨

---

67) 비주권 국가(non-sovereign jurisdictions)에 적용되는 제3기준에 관한 내용은 생략함

68) 2017년 12월 5일자 이사회 결정에서 제3기준의 합리적 시간 틀의 기간에 관하여 상세 지침을 별도로 마련함 Doc. 15429/17 FISC 345 ECOFIN 1088 Annex Ⅵ.

2) 공평과세 기준

□ 공평과세 기준은 제1기준과 제2기준의 두 가지 세부 기준으로 구성됨

□ 제1기준(2.1)

○ 대상 지역에는 기업세금을 위한 행동수칙(a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taxation)에 관한 1997년 12월 1일자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이사회 및 회원국들 정부 대표단의 의결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준(이하 “유해 우대조세조치 판정기준”)에 따를 때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우대조세조치가 없어야 함

□ 제2기준(2.2)[69]

○ 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 경제활동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외 투자구조나 약정을 용이하게 하지 않아야 함

□ BEPS 대응조치의 실행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 세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기준(3.1)

- 대상 지역이 BEPS 대응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실시해야 하는 초기 기준: 그 지역이 2017년 말까지 OECD의 BEPS 대응조치에 관하여 합의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을 채택하고 그에 부합하는 이행을 실시할 것을 약속함

○ 제2기준(3.2)

- 대상 지역이(합의된 최소 기준을 만든 포괄적 체계의 심사가 완료될 때 적용되는) BEPS 대응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실시해야 하는 미래 기준: 그 지역이 합의된 OECD의 BEPS 대응 최소기준의 유효한 실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 평가(positive assessment)’를 받아야 함

□ 공평과세 기준인 제1기준(2.1)에 관한 1997년 12월 1일자 이사회 및 회원국 정부 대표단의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70]

---

69) 제2기준의 적용범위에 관한 추가적인 조건들에 관하여는, Doc. 15429/17 FISC 345 ECOFIN 1088, Annex Ⅶ.

70) OJ C 2, 6 January 1998. p. 2

□ 문단 A

○ 회원국들과 공동체(the Community)의 각 권한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기업의 세금을 다루는 본 행동수칙은, 공동체 내 사업 활동의 위치설정(the location of business activity)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조치들에 관한 것임

○ 이런 관점에서 사업활동은 그룹회사들(a group of companies)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함

○ 행동수칙이 다루는 조세조치들에는 법률이나 규정(regulations)뿐만 아니라 행정실무(administrative practices)도 포함함

□ 문단 B

○ 문단 A에서 특정한 범위 내에서, 과세의 유효한 수준(effective level)이 문제가 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낮추는 것(무과세 포함)을 규정하는 조세조치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 행동수칙이 그러한 조세조치를 관장함

○ 과세의 수준은 명목세율(nominal tax rate), 과세표준 또는 다른 기타 관련 요소에 의해서 가늠함

○ 그러한 과세조치가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도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i) 혜택(advantages)이 비거주자에게만 부여되거나 비거주자와 수행되는 거래라는 이유로 부여되는지 여부(제1요소)

(ii) 혜택이 국내 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는지(ring-fenced),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국가의 세수(national tax bas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제2요소)

(iii) 혜택을 제공하는 해당 회원국 내 실제적 활동(real economic activities)과 상당한 경제적 존재(substantial economic presence)조차 없더라도 해당 혜택들이 부여되는지 여부(제3요소)

(iv) 다국적 그룹회사들 내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결정하는 규칙[71]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특히 OECD 내 합의된 규칙과 어긋나는지 여부(제4요소)

(v) 해당 조세조치들이 가령, 행정부가 법률 규정을 불투명한 방식으로 완화해서 집행하는 것과 같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지 여부(제5요소)

71) 이전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됨

나. OECD 기준

□ OECD는 1998년 발간한 유해 조세경쟁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해 조세경쟁은 조세피난처(tax havens) 및 유해 우대조세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그 두 가지를 판정하기 위한 요인들을 별도로 제시하는 한편(chapter 2), 유해 조세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권고안(recommendations) 등을 제안하였음(chapter 3)

□ 유해 우대조세제도의 특성은 4가지의 핵심요소들(key factors)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밖에 유해 우대조세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의 기타 요소(the other factors)가 있음[72]

○ 핵심요소: ①을 갖추는 동시에 ② 내지 ④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① 무세 또는 낮은 유효세율(제1요소)

② 국내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ring-fencing of regime)(제2요소)

③ 투명성의 결여(제3요소)

④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제4요소)

○ 기타 요소

① 과세대상에 대한 임의적 정의

② 국제적인 이전가격제도의 미적용

③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

④ 협상 가능한 세율 또는 과세대상

⑤ 비밀보호 규정의 존재

⑥ 광범위한 조세조약망

⑦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⑧ 조세회피를 위한 활동이나 거래의 장려

□ 4가지의 핵심요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73]

---

72) 상세한 것은 OECD(1998), pp. 26~34.

73)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p. 238~239, p. 247, p. 249. 이 중 사례예시 부분을 제외하였고 몇 가지 용어나 표현을 수정함

□ ① 무세 또는 낮은 유효세율(제1요소)

○ 특정 소득에 대해 영 또는 저율의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해 우대조세제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됨

○ 영 또는 저율의 유효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정세율이 매우 낮거나 또는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함

□ ② 국내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ring-fencing of regime)(제2요소)

○ 특정 우대조세제도가 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시키는 경우 유해 우대조세제도로 분류될 수 있음

○ 이러한 차별은 다른 국가의 과세기반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결과적으로 그 조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조세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국가의 세수만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 그러나 Ring-fencing은 한 국가의 일반적인 조세체계의 특징이나 이중과세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들과는 상관이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방법이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각 국가가 결정할 고유의 권한임

○ Ring-fencing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시장으로의 접근에 대해 의도적인 법적 제한을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제한을 가해야 함

- 예컨대, 거주자가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함

□ Ring-fencing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발생함

○ (i) 비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거주자에게는 제한하는 차별(제1유형)

- 거주자로 하여금 그 조세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함

○ (ii)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국내 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제2유형)

-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사업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지함

□ ③ 투명성의 결여(제3요소)

○ 조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의 결여는 투자자의 거주국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유해 우대조세제도로 분류될 수 있음

○ 제도의 불투명성은 우대조세제도가 설계된 방식과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불투명성은 법과 규칙의 우호적인 적용, 협상 가능한 조세 조항,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행정적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실패를 포함하는 개념임

□ 행정적 관계의 입장에서 투명하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은 반드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해 조세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i) 적용 가능한 규정과 과세당국에 불복할 수 있는 가능한 조건들을 납세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

○ (ii)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도의 내용들을 반드시 다른 관련 국가의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제도가 불투명하면 그 제도의 수혜자가 과세당국과 협상할 재량이 발생하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납세자들을 불공평하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임

□ 조세제도의 불투명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i) 우호적인 행정 예규, (ii) 특별 행정 관계에 관한 성문법하에서의 기본 절차들의 비공개, (iii) 국내의 재무환경에 대하여 국내법과 불일치한 집행 등이 있음

□ ④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제4요소)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제공 능력은 그 국가가 운영하는 조세제도가 잠재적으로 유해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우대조세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받은 혜택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면 그 국가가 유해 우대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 국가의 우대조세제도가 국내의 비밀보호법, 국내 정책, 또는 행정 관계 등으로 인해 우대조세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받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대조세제도는 유해 조세경쟁에 해당될 수 있음

○ 특정 국가가 조세목적상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유해 우대조세제도의 남용을 포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어렵게 함

□ 4가지의 핵심요소 중 제2요소인 국내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ring-fencing of regime)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74]

□ ① 거주자에 대한 우대조세제도의 제한(제1유형)

○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에 거주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거주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ring-fencing에 해당됨

- 가장 직접적인 접근 제한방법은 명시적으로 거주자가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체 설립을 금지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적용요건 등을 통해 거주자를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위한 요건이 주로 또는 오로지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만 구성된 기업그룹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외국인 소유 회사에만 유리한 사법적 판결 또는 행정적 판단(ruling)을 부여함으로써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비거주자로 한정하는 경우

○ 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상쇄시킴으로써 우대조세제도의 혜택 대상인 투자의 주체에서 거주자를 묵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도 있음

- 우대조세제도를 적용하는 거주자에 대해 우대조세제도를 배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세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ring-fencing에 해당될 수 있음

□ 하지만, ring-fencing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예컨대, 특정 국가가 내국인의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외국인의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 이는 거주자 법인이 주주로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단순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ring-fencing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74) 안종석 외(2014), pp. 240~243, 이 중 사례예시 부분을 제외하였고 몇 가지 용어나 표현을 수정함

□ 또한 우대조세제도가 거주자에게 허용되지 않더라도, 거주자가 동일한 효과를 가진 다른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면 ring-fencing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특정 우대조세제도가 이중과세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경우에는 ring-fencing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함

□ ②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국내 시장으로부터의 접근 제한(제2유형)

○ 직접적으로 국내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또는 동일한 효과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 시장 영업을 금지하는 경우 ring-fencing에 해당됨

- 예컨대, 우대조세제도의 적용이 오직 사법적 판결이나 행정해석(ruling)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오로지 국외 시장에서의 거래기업에만 부여되는 경우 또는 오로지 외국의 통화를 통해서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대조세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더 많은 제약을 받게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함

○ 국내 시장에서의 제한적 거래와 해외시장에 대한 비제한적 거래를 비교하여, 비제한적 거래가 제한적 거래보다 더 우호적으로 과세될 경우 ring-fencing에 해당될 수 있음

- 해당 우대조세제도가 특별한 산업 분야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우대행위 자체 때문에 ring-fencing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국외 거래에 더 우호적으로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우대조세제도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조세제도 또한 고려해야 함

다. EU 기준과 OECD 기준의 비교

□ 위에서 살펴본 EU 기준과 OECD 기준의 비교결과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표 Ⅵ-1>과 같음

□ EU에서는 조세피난처와 우대조세제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비협조지역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인 공평과세 기준의 하부기준의 하나로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정기준을 설정함

○ 한편, OECD는 유해한 조세경쟁을 일으키는 조세제도를 크게 조세피난처의 조세제도와 우대조세제도, 둘로 나눈 다음 각기 별도의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표 Ⅵ-1>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정기준 비교 - EU 기준 vs OECD 기준

EU 비협조지역 판정기준			OECD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
조세투명성(1)			정보교환의 결여(핵심4요소)
공평과세(2)	유해 우대조세제도(2.1)	비거주자만 혜택(1요소)	Ring-fencing(핵심2요소: 1유형)
		ring-fencing(2요소)	Ring-fencing(핵심2요소: 2유형)
		실질 활동 등 부재(3요소)	
		국제 이전가격 미적용(4요소)	국제 이전가격 미적용(기타요소)
		투명성 결여(5요소)	투명성 결여(핵심3요소)
	실질적 활동 없는 역외구조(2.2)		
BEPS 대응조치의 실행(3)			

자료: 저자 작성

□ 그러므로 두 기준의 체계를 고려할 때, EU의 비협조지역 판정기준 중 두 번째의 공평과세 기준에 속하는 세부기준인 유해 우대조세제도(이하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와 OECD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이 비교대상임[75]

□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OECD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기준에는 무세 또는 낮은 유효세율(핵심 제1요소)을 필수적 핵심요소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EU는 이를 유해성 판정요소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임

○ 그런데, 어떤 지역의 조세제도가 무세 또는 낮은 유효세율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우대조세제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단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임

○ 결국, OECD는 '조세제도'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무세 또는 낮은 유효세율을 별도의 요소로 파악하여 그 요소를 갖춘 조세제도를 '우대조세제도'로 보고, 그러한 우대조세제도가 나머지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유해한 것으로 보는 구조임

75)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이 OECD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7.12.6.), p. 1

○ 이에 반하여 EU는 ‘우대조세제도’의 개념에서 출발하므로, 무세 또는 낮은 유효세율이라는 OECD의 필수적 핵심요소를 개념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OECD의 핵심 제1요소의 차이는 개념의 전제가 다른 데에서 기인한 것일 뿐 본질적 차이는 아니라고 할 것임

□ 양 기준을 비교할 때, ring-fencing(EU 기준의 경우 비거주자만 혜택부여 요소 포함)과 투명성 결여가 공통적 요소에 해당함

○ Ring-fencing 개념의 설정 폭이 상이하나 다른 연관 요소를 아울러 감안하면 양 기준의 해당 요소들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함

-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서는 Ring-fencing의 개념을 국내 시장에의 접근 제한으로 좁게 파악하고, 비거주자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것(제1요소)을 별도의 판정요소로 정하고 있음(협의설)
- OECD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서는 Ring-fencing의 개념을 넓게 설정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접근 제한(제2유형)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제한(제1유형)도 포함함(광의설)

□ 한편, 양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서 말하는 투명성은 EU 비협조국가 판정 첫 번째 기준인 조세투명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임[76]

○ 즉, EU 및 OECD의 각 우대조세조치의 유해성 판단기준에 속한 투명성 요소는 제도의 집행 측면에서 집행기준의 명확성 정도를 묻는 개념임

- 한편, EU의 비협조지역 판정의 일차기준인 조세투명성은 투자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 입장에서 과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개념임

□ 그 밖의 요소들의 경우 양 기준상 차이가 있는데 우선,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는 OECD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 들어 있는 정보교환의 결여와 같은 요소가 없고, 해당 요소를 별도의 상위기준인 조세투명성 기준으로 따로 설정하고 있음

76) 기획재정부는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7.12.6.), p. 2. EU가 근거로 제시한 투명성은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의 한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정보교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말하는 것임

□ 다음으로,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은 실질적 경제적 활동이나 상당한 경제적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요소로 정하고 있으나, OECD는 이를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단요소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함

○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EU는 하나의 단일한 비협조지역 판정기준을 갖고 있는 반면, OECD는 조세피난처의 조세제도와 유해 우대조세제도, 두 개의 별도 기준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위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의 3요소에 상응하는 상당한 활동의 부재(no substantial activities) 요소는 OECD 기준체계하에서는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임[77]

○ 결국, EU의 비협조지역 판정기준 중 조세투명성 기준과 공평과세 기준을 합하면 OECD의 조세피난처 판정기준과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을 합한 것과 개념상 대등한 것이 됨

□ OECD는 BEPS Action 5에서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y)의 요건을 추가함

○ 이 요건에 따르면, 이익을 가져오는 핵심적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납세자에게만 조세감면이 허용됨

○ 이 요건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을 적용함

- 즉, 납세자의 지출과 소득 간의 연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허용하여야 함

○ 실질적 활동 요건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non-IP 조세지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임

□ 끝으로, 국제적 이전가격규칙의 준수 여부가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서는 다른 요소들과 대응한 요소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OECD의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서는 핵심요소가 아닌 기타 요소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음

77) OECD(1998), pp. 22~25

3. 국제기준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평가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EU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요소는, 비거주자만 혜택 부여(1요소)와 투명성 결여(5요소) 두 가지임

○ 「조특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특법상 감면제도가 ring-fencing(2요소, 2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음

○ 「조특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실체를 국내에 두어야 하므로,[78] 실질 활동 등의 부재(3요소)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음

○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국제적 이전가격규칙(4요소)과 무관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OECD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도, ring-fencing(핵심 2요소, 1유형)과 투명성 결여(핵심 3요소), 두 가지임

○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므로(tax holidays), 무세 또는 낮은 유효세율(1요소)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OECD의 용례로 우대조세제도에 해당하며, 유해성 여부는 다른 3가지의 핵심요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음

○ 「조특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특법」상 감면제도가 ring-fencing(핵심 2요소: 2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음

○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정보교환(핵심 4요소)과 무관함

□ 결국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국제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EU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으로나 OECD의 유해 우대조세제도 판정기준으로나 비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EU 기준의 1요소; OECD 기준의 핵심2요

78) 특정지역 감면제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지역에 입주할 것을 요구하므로, 실질 활동 등의 부재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고도기술수반산업 감면제도의 경우에도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것이 감면요건 중 하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령") 제116조의 2 제1항 제1호} 실질활동 등의 부재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소로서 ring-fencing 1유형)과 투명성 결여(EU 기준의 5요소; OECD 기준의 핵심3요소)의 두 가지로 동일함

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지원

□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비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음

□ 조특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임(외국인투자기업)[79]

○ 거주자의 개념을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80] 이 감면제도는 거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기업에 쌓이는 유보소득이 커지게 되므로, 종국적인 감면혜택은 배당이나 양도차익의 형태로 외국인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됨

- 비거주자의 개념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다면, 외국투자자 중 외국법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며,[81]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도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함[82]

○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법인세액에 외국인투자지분 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액을 결정함

- 이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외국인투자자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임

□ 요컨대,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자가 통상 비거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비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음

---

7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80)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81)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82)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호 및 제2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 투명성 부족

□ 「조특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투명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첫째,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감면요건을 갖추면 감면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면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감면 해당 여부를 결정함[83]

○ 조세감면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기준은 법령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내부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음

□ 둘째, 특정지역 감면제도는 법인세 전액 감면의 기간에 따라 5년형 감면(3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50% 감면)과 7년형 감면(5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7년형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 관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감면요건 중 하나임[84]

○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기준이 있더라도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음

□ 「조특법」상 감면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위원회가 행사하는 재량권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볼 만큼 투명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감면요건이나 감면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량적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어 불투명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적음

○ 주요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이나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등 조세감면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85]

○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결정 기간과 신청인에 대한 통지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제도의 경우 결정예고통지와 신청인의 소명

83) 「조특법」 제121조의 2 제8항
84)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
85)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절차, 처리기간 연장의 경우 연장사유의 통지의무 및 연장기간, 조세감면 결정의 경우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의무 등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이 구비되어 있음[86]

□ 이러한 논쟁을 정리해 보면, 실제 운영상으로는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가 투명성 결여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봄

○ 조세감면요건 심사의 필요성과 정당성, 조세감면기준의 상세화 정도, 감면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특히, 위원회의 경우 사업 해당성 판단으로 제한됨), 절차규정의 정비, 공정한 법집행의 관행 정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위원회에 부여된 재량권의 행사가 조세경쟁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할 가능성은 낮음

□ 하지만, 운영 실태와 달리 법령만 놓고 보면 행정부가 조세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가 투명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86)「조특법 시행령」제116조의 3

Ⅶ.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Ⅶ.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가. 정부 개입의 근거

□ 정부가 내국인 투자와 구별하여 외국인투자를 지원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째,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내국인에 비해 더 불리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재정지원이나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언어의 장벽, 제도나 관습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시장을 개척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생활을 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적인 기술, 경영기법 등을 들여와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본에 한계가 있어 필요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1990년대 말에 도입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 외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 특정 시설 투자,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그 목적이 투자 자체에 있는 것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지원하는 논리는 되지 못함

□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부 개입의 근거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봄

나. 정부 개입 근거의 실효성

□ 앞서 언급한 정부 지원의 근거는 지난 50여년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제도를 지속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던 것들임

○ 그러나 수십년 전에 비해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자, 고용 등 사업활동에서 세계화가 진전된 현 시점에서도 그러한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 외국인투자자의 불편 해소

□ 앞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첫 번째 논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임

○ 언어 장벽에 따른 불편함,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함에 따른 불편함(교육, 의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의 차이 등이 그 원인이 됨

○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 초기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특혜를 제공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최근에 매우 빠른 속도로 상품 및 투자시장이 개방되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사업환경도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외국인의 생활환경도 개선되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나 불편함은 많이 축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다음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 및 출입국 외국인 수,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악함

○ 이는 외국인의 국내 유출입, 체류 및 투자의 증가가 간접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경제활동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임

□ [그림 Ⅶ-1]에서는 1990년 이후 2016년까지 연도별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 수를 정리하였음

○ 1990년에는 장기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이 49,507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210,249명으로 1990년의 4.25배가 되었음

○ 2010년에는 918,917명으로 1990년의 18.56배, 2016년에는 1,161,677명으로 1990년의 23.46배가 되었음

[그림 Ⅶ-1]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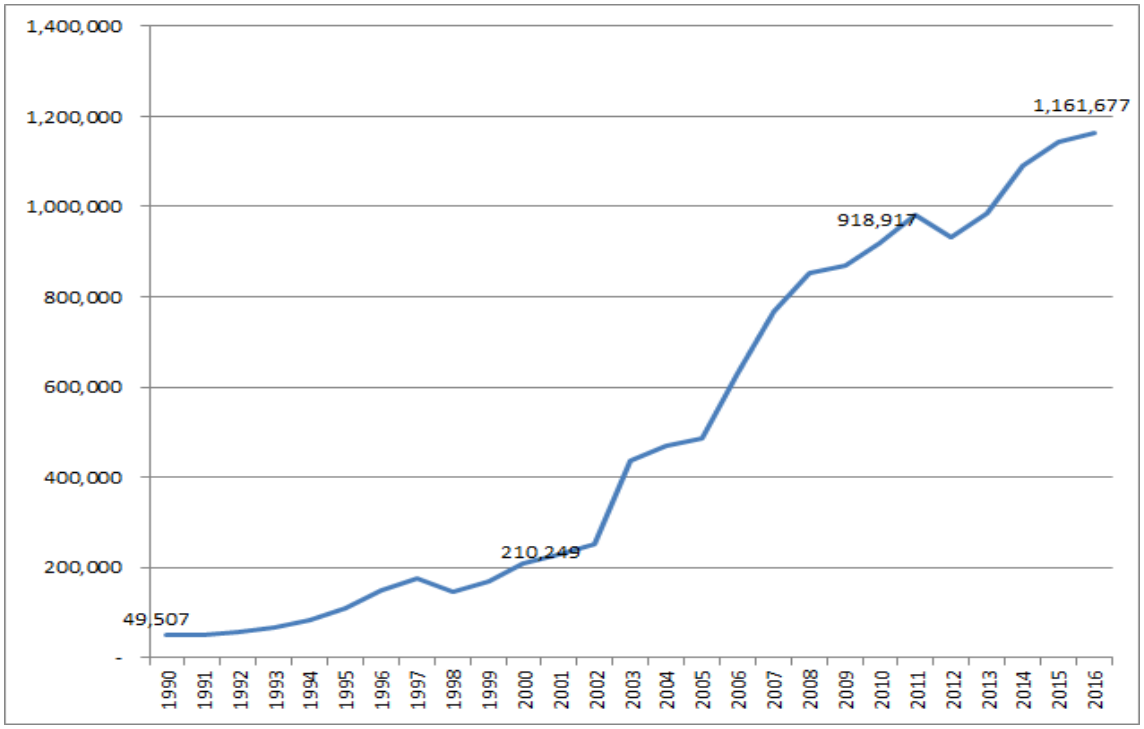

주: 그림에 표시된 수치는 각각 1990년, 2000년, 2010년, 2016년의 체류 등록 외국인 수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국적_지역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등록현황' 표

□ 그리고 <표 Ⅶ-1>에서는 1990년과 2000년, 2010년, 2016년의 외국인 출입국자 수 변화를 살펴보았음

○ 외국인 입국자 수를 보면, 1990년 235만명에서 20000년 437만명, 2010년 777만명, 2016년 1,591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출국자 수도 입국자 수와 유사하게 증가하였음

○ 외국인 입국자 대비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1990년에 2.11%였던 것이 2000년에 4.81%, 2010년에 11.82%로 증가함

- 이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짐을 시사함
- 2016년에는 이 비율이 7.3%로 낮아졌는데, 최근에 한류열풍에 힘입어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Ⅶ-1> 외국인 체류 등록자 및 출입국자수

(단위: 명, %)

	등록 외국인	외국인 입국자	외국인 출국자	등록외국인/입국 외국인
1990	49,507	2,349,693	2,351,900	2.11
2000	210,249	4,370,596	4,253,700	4.81
2010	918,917	7,774,645	7,669,426	11.82
2016	1,161,677	15,909,555	15,809,688	7.3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국적 및 체류기간별 외국인 입국자', '국적 및 체류기간별 외국인 출국자' 표

□ <표 Ⅶ-2>에서는 국내 상장증권 투자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2017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시가에서 외국인투자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37.1%였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13.2%였음

-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을 합하면, 총시가에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33.6%임

○ 외국인투자를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로 구분해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의 5% 정도가 직접투자이고, 95%는 포트폴리오투자임

-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 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인투자 전체의 4%에 불과함

- 한편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28.8%가 직접투자로 직접투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임

<표 Ⅶ-2> 외국인 상장증권 투자(2017년 말)

(단위: 조원, %)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합계
시가총액(A)	1,605.8	282.7	1,888.5
외국인투자(B)	596.5	37.3	633.8
직접투자	23.7	10.7	34.4
(비중)[1]	(4.0)	(28.8)	(5.4)
포트폴리오투자	572.8	26.6	599.4
(비중)[1]	(96.0)	(71.2)	(94.6)
외국인투자 비중(B/A)	37.1	13.2	33.6

주: 1) 외국인투자에서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18.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18. 3

□ 이러한 자료는 이전에 외국인의 국내 거주나 투자가 아주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매우 크게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또한 간접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항목 중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임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임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재정과 경영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병원의 설립도 허용됨

□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생활환경, 제도적 장애 등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표 Ⅶ-3> 참조)

○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으로 입주기업은 4,667개인데, 외국인투자기업은 276개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임

- 부산·진해 구역이 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인천(5.2%), 광양만권(5%), 충북(4.5%), 대구·경북(3.4%)의 순임
- 황해와 동해안권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이 없음

<표 Ⅶ-3>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황

(2017.12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입주기업		
	입주기업 계[1)]	외국인투자기업[1)]	외투기업 비중
인천	2,263	117	5.2
부산·진해	1,517	121	8.0
광양만권	476	24	5.0
대구경북	349	12	3.4
황해	-	-	-
동해안권	18	-	-
충북	44	2	4.5
경제자유구역 전체	4,667	276	5.9
국내기업 전체	645,061[2)]	17,065[3)]	2.6

주: 1) 고용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단 외투기업은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6년 법인세 신고를 한 국내 법인수
3) 2016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협조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17, <표 8-1-1>
산업자원부·코트라,『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집』, 2017. 9, p. 29

□ 국내기업 전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은 높은 편임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여건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목적을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5.9%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의 <표 Ⅲ-4>에서는 지난 5년간 외국인투자 감면 항목별로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 수를 정리하였으며, <표 Ⅲ-7>에서 감면항목별로 실제로 감면을 받은 기업 수와 감면액을 정리하였음

○ 지난 5년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서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기업 수는 32개이며, 같은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수는 매년 대체로 3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는 감면받은 기업이 5개로 다른 연도에 비해 많았으나 감면액은 2,127억원으로 2014년의 4,159억원, 2015년의 2,812억원에 비해 작았음

○ 이는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함

2)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인투자 지원

□ 외국인투자를 내국인 투자와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또 다른 논리는 외국인투자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임

○ 외국인투자와 함께 선진국의 선진적 경영기법과 사업운영 방식이 도입되어 국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아직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국내 기술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위 두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즉, 선진적인 경영기업과 사업운영방식 등은 국내 시장이 많이 개방되지 않은 1990년대까지 외국인투자를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아직도 적용되는지는 의문임

○ 1990년대 이후 국내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기에 이르렀으며, 1996년의 OECD 가입과 함께 국내 제도와 관행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음

○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으며, M&A를 통한 투자도 허용하여 많은 외국 기업이 M&A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진입하였음

○ 시가 기준으로 국내 주식의 34%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경영에 영향을 주기도 함

-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기법 등에 대해 특별히 후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영활동의 세계화와 상품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기법이나 사업운영방식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한편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들여옴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외국인투자를 내국인투자와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지난 수십년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온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이 이러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산업의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에게만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기술개발을 억제하거나 동등한 기술을 지닌 내국인투자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2016년에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대상을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로 개편하였음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은 아직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술로서, 국내 기업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술임

3)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 정부가 대규모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국내에서 동원할 자금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절실한 경우뿐임

□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처음 도입된 1960년대에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유입된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른 조건 없이 조세지원을 하였음

○ 다만 외국자본의 유입 자체에 대한 규제가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음

□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여 국내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자본형성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을 축소하였고, 1990년대 중엽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등 특정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였음

□ 그 후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국내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실하였던 시기에 외국인이 대규모로 자금을 들여와 국내의 산업자산을 구매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필요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도입되었음

○ 국내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국내에서 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러한 목적의 조세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그림 Ⅶ-2]에서는 1994년 이후 2017년까지 직접투자 유입액 및 유출액, 순대외금융자산 추이를 정리하였음

○ 순대외금융자산은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하여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음

□ 직접투자의 유출입을 보면, 1994년에는 외국인의 대내 직접투자가 148억달러,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97억달러로 외국인의 대내 직접투자가 더 많았음

○ 1998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다가 1999년에는 외국인의 대내직접투자가 419억달러로 증가 한데 비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192억달러에 그쳐 직접투자 유입액과 유출액 간의 격차가 더 커졌음

[그림 Ⅶ-2] 대내외 직접투자와 순대외금융자산 추이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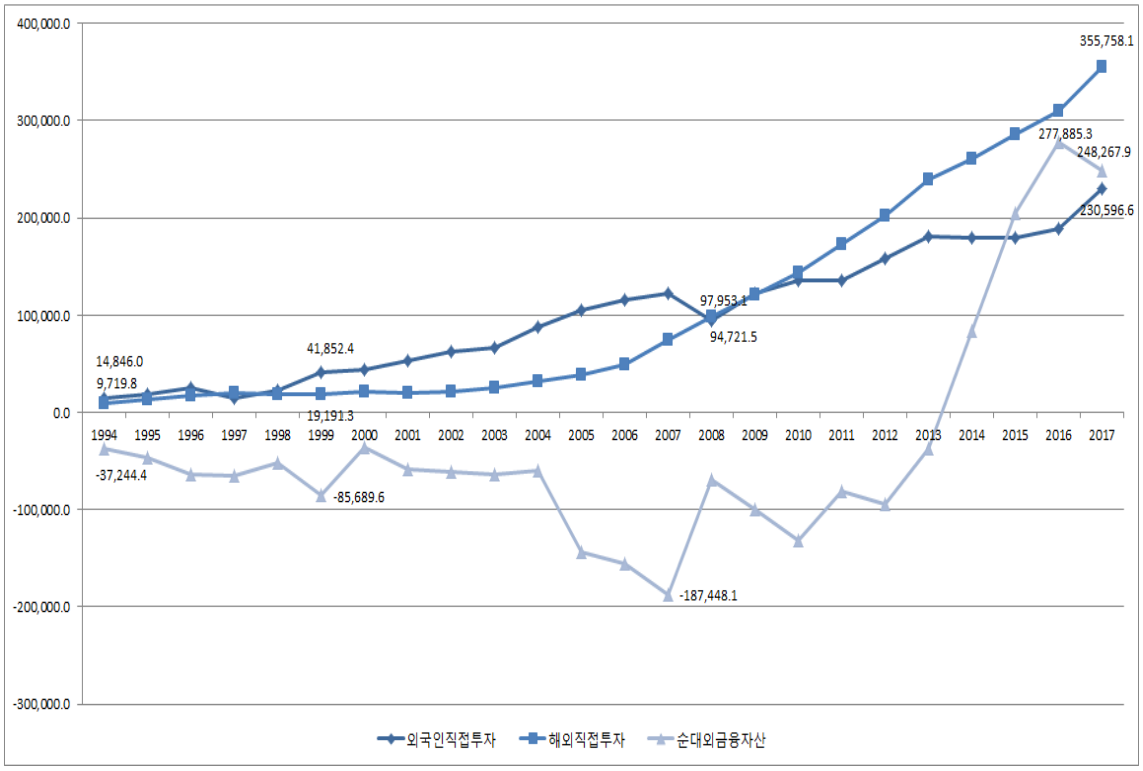

주: 순대외금융자산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를 종합한 총대외투자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차감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추출(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301&tblId=DT_025Y009&conn_path=I3, 2018. 4. 12 접속

□ 그 후 직접투자 유입액과 유출액 간의 격차는 2006년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이는 주로 직접투자 유입액의 증가에 따른 것인데, 경제위기 이후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M&A형 직접투자 허용, 도소매·금융 등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등이 이 시기에 직접투자 유입액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이 시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2008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980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가 947억달러로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아졌음

○ 이후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느린 증가세가 계속되어 2017년에는 해외직접투자 3,558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2,306억달러로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1.5배를 넘었음

□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를 종합한 금융투자 전체의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를 보면, 1994년에는 372억달러 적자였음

○ 1994년 이후 2004년까지는 500억달러 내외였던 적자규모가 2005~2007년에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1,874달러로 확대되었음

○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순대외금융자산 적자를 확대시킨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이후 직접투자 유출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포트폴리오 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순대외금융자산 적자가 축소되었으며,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음

○ 이후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2016년에 2,779억달러, 2017년에 2,483억달러가 되었음

□ 정리해보면, 직접투자는 2008년부터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아졌으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함께 보면 2014년부터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아졌고, 최근에 유출액과 유입액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2000년대 초까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설득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시사함

2. 정책대상의 적절성

가.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신성장동력 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구 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역 등

□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며, M&A형 외국인투자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각 감면항목별로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외국인투자규모가 규정되어 있음

□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책대상의 적절성을 평가함

○ 첫째, 감면항목별 감면 근거와 목적에 비춰 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함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외국인투자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 특구 입주업체 및 개발사업자

○ 둘째, 외국인투자 지원이 타당한 경우에 M&A형 투자와 그린필드 투자로 구분하여 그린필드 투자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 셋째, 외국인투자 지원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감면대상 항목별 적용대상 업종 및 투자규모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함

나. 감면항목별 적용대상의 타당성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고유의 감면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목별로 감면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국내에 없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경우 도입 당시에는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부 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정부가 지정한 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인데, 특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외국인투자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특구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특구임

○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 전자에 해당하며,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구는 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전자 즉, 외국인투자 유입을 목적으로 설정된 특구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서 토지구입 등 사업을 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외국병원의 설립, 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의 사업 운영 및 국내 생활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완화하고자 함

□ 그러나,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리는 최근에 그 중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에 매우 빠른 속도로 상품 및 투자시장이 개방되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사업환경도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외국인의 생활환경도 개선되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나 불편함은 많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의 국내 거주나 투자가 아주 제한적이었던 1990년대나 그 이전에 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매우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1990년 49,507명에서 2016년 1,161,677명으로 23.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합하여 국내 상장증권 투자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 기준으로 33.6%임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한 대표적인 특구임

○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함

- 전체 입주기업은 4,667개인데, 외국인투자기업은 276개임

○ 국내기업 전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은 높은 편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고려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5.9%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또 다른 논리적 근거인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와 내국인투자를 구분하여 외

국인투자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즉,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산업부문의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투자에 대해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도시의 경우 내국인 투자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며, 지원 요건과 지원내용도 유사함

다. 그린필드 투자 지원의 타당성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을 보면, 각 감면항목별로 특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국내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거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에만 조세지원을 함

○ 국내 기업을 구매하는 투자 즉, M&A형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하지 않음

□ 그린필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 산업활동이 증가하였을 때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미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산업활동의 주체를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M&A 투자만으로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을 그린필드 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국내의 사업활동을 순증시킨 경우에만 지원함

○ M&A 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기존의 국내 사업을 이어 받아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신규진입에 비해 국내 시장 침투비용, 국내 제도 적응에 따른 추가적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린필드 투자에 비해 조세지원의 근거가 약함

□ 한편 외국인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발전에 대한 외부효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린필드 투자와 M&A 투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선진 경영기법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사업운영체질 개선 관점에서 보면, M&A 방식의 투자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선진 경영기법의 전수를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고도기술의 도입 관점에서도, M&A형 투자가 고도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곤란한지는 의문임

- 기존 시설의 보수, 대체 등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그린필드 투자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국내 산업활동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 기본 원칙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특정지역 투자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지원 혜택을 제공함

라. 적용대상 업종 및 투자규모 요건의 타당성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각 감면항목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외국인투자규모를 규정함

○ 제Ⅱ장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였는데, 이 중 개발사업을 제외한 항목의 지원대상 업종과 외국인투자규모를 표로 정리하면 <표 Ⅶ-4>와 같음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및 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로 외국인투자규모는 200만달러 이상일 때 지원함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과 원천기술은 국내기업이 이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하는 기술과 동일함

○ 정부가 이 기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연구개발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를 통해 이 기술들이 유입되어 국내에 파급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요구하는 외국인투자 규모는 200만달러로, 다른 항목에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임

<표 Ⅶ-4> 감면항목별 지원대상 - 업종과 투자규모

	신성장 동력산업	개별형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단지형 외투지역	기업도시	자유무역지역
제조업	-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 2백만달러	3천만달러	1천만달러	1천만달러	1천만달러	1천만달러
과학기술 서비스		3천만달러	1천만달러		1천만달러	1천만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1천만달러		1천만달러	
휴양, 수련시설		2천만달러	1천만달러		1천만달러	
물류업		1천만달러	5백만달러	5백만달러	5백만달러	5백만달러
연구개발		2백만달러, 연구인력 10명	1백만달러, 연구인력 10명		2백만달러	
문화·콘텐츠			1천만달러		1천만달러	
의료기관			5백만달러			
기타					궤도, 신재생에너지, 1천만달러	

자료: 제Ⅱ장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다른 투자규모 요건이 적용됨

○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전체에 대해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각 감면항목별로 특정 업종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업종에 대해 요구하는 최소 외국인투자 규모는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업종 요건과 투자규모 요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특징적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투자규모가 지역특구에 비해 2~3배 정도로 높음

○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입주기업 지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데 비해, 특정 지역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경우에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는 7년형 감면이 적용되고 그 외 특구에는 5년형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대상업종의 경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적용대상 업종은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관광업, 휴양업, 수련시설업, 물류업, 연구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함

○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의 경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을 대체로 모두 포괄하고, 특구별로 몇 가지 업종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 문화·컨텐츠 산업, 의료업
- 기업도시: 문화·컨텐츠 산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한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종이 상당히 제한적임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제조업 생산을 주로 하는 산업단지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도 수출주도형 제조업과 물류업, 과학기술서비스업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역시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맞추기 위한 것임

□ 정리하면,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위해 설정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특구 설정목적에 부합하는 제한적인 업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제공함

○ 한편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는 각각 규제프리 구역, 민간주도형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약의 필요성이 낮아 지원대상 업종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으며,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에 목적이 있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항목별 감면목적 등에 비춰 감면대상 업종 선정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세제도의 복잡성, 투명성 관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Ⅶ-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 감면항목별로 적용대상 업종과, 업종별로 요구되는 외국인투자규모가 달라서 제도가 매우 복잡함

○ 개별 항목별로 감면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적용대상 업종에 차이가 있음

- 관광업의 경우 기업도시에서는 관광식당업도 포함되는데, 다른 감면항목에서는 관광식당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이 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지원에서는 '정보서비스업'이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물류업을 보면,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감면항목과 달리 공항 관련 물류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적용방법의 적절성

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방법의 특징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방법 중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음

○ 하나는 조세휴일(tax-holiday) 형식의 조세감면임

- 투자나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임

○ 다른 하나는 고용기준 감면한도임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의 한도를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제한하는 것임
-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의 고용한도가 적용되며, 청년과 장애인, 노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는 1인당 2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됨
- 고용기준 한도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7년형 감면) 또는 40%(5년형 감면)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준 한도가 적용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의 50% 또는 40%가 적용됨

□ 조세휴일형 감면제도와 고용기준 감면한도는 다른 조세지원제도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지역특구 조세감면에 적용되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바, 이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조세휴일형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 조세휴일형 조세감면이란 일정기간 동안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하는 7년형 감면제도가 적용되고, 지역특구 지원은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하는 5년형 감면제도가 적용됨

□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방법은,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 일정기간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휴일방식, 그리고 기간의 제한이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투자 초기에 많이 투입된 자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투자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결손금의 차기 이월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결손금의 차기 이월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10년 내에 이익이 발생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휴일제도는 7년형과 5년형으로 구분되며, 최초로 사업이 시작한 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됨

○ 사업을 개시한 후에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제도를 적용함

○ 그러므로 조세휴일제도의 경우 사업 개시 후 감면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7년형의 경우 최대 12년으로 세액공제보다 2년 길고, 5년형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으로 세액공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감면규모는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의 일정비율로 한정되는 데 비해 현행 조세휴일제도에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7년형은 투자액의 100%, 5년형은 80%로 규정됨

-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투자액 전체를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작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제 최대한도는 조세휴일제도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기간의 제한이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액을 감면하는 조세휴일제도보다 단기적인 감면 효과는 작을 수 있음

○ 한편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총감면액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음

□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경우에 다른 방법에 비해 유리한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세액공제 방식은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유리함

○ 조세휴일 방식은 초기 자본투입이 많지 않고, 기업의 이동이 용이하여 휴일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이 유리함
○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주 긴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가장 유리함

□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세수효과와 국제 과세기준과의 정합성, 다른 국내 기업과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한 차선책인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기한의 제약이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음
○ 아일랜드,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으나, 다른 국가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세율체계를 적용하도록 개편하였음
○ 외국인투자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행태를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휴일제도에 비해 감면효과가 더 크므로 수평적 형평성 저해 문제도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조세휴일 방식의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비교적 짧은 기간(10~12년) 동안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한국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를 촉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그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감면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투자자가 조세휴일형 조세지원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보면, 이동성이 큰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보다는 국내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조세휴일형 감면제도가 지원대상 사업과 잘 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서 외국인투자 유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임을 시사함

□ 조세휴일제도가 일정기간 동안만 세금을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므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감면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삼성전자(42.5%), 미국의 코닝사(49.9%), 홍석현 회장(7.6%)이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금에 대한 조세를 감면받았음[87]

○ 감면기간이 끝나자 지배구조를 미국 코닝사의 지분을 헝가리의 자회사를 통해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함

- 미국 코닝사가 직접 한국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한·조세조약에 규정된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한편 헝가리 회사가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규정된 5%의 세율이 적용됨

○ 법원에서는 헝가리 자회사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한·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정함[88]

다. 고용기준 한도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통해서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도는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로 구성됨

○ 투자금액 한도: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5년형 감면은 40%

○ 고용기준 한도: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5년형 감면은 40%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1인당 1,500만원
- 그 외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

87) 삼성코닝정밀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홍성훈·안종석(2014), pp. 65~67 참조
88)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4092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투자금액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를 합한 금액이 감면의 총한도가 됨

□ 고용기준 한도는 2011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투자 자체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한다는 투자지원체계의 개편방향을 외국인투자에도 적용한 것임

○ 고용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도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지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현행 지원규모가 다른 조세지원제도에서 나타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21조의22에 규정된 것으로 내외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지원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에서도 상시종업원 1인당 1천만원의 고용기준 한도가 적용됨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21조의22의 지역특구 조세지원에서는 고용기준 한도의 최대한도를 투자누계액의 20%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40%(5년형) 또는 50%(7년형)로 제한하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차이가 있음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 다음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그리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봄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지원 외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의 매입 임대료, 시설 설치비, 교육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하거나 입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제공함

- 현금지원 및 입지지원과 조세지원의 관계를 보면, 어느 한 쪽의 미진한 부분을 다른 쪽이 보충해 주는 보완적인 성격도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상당히 크면 다른 쪽이 좀 적어도 된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성격도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다른 유사한 조세지원과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열거된 조세지원 항목들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들로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가. 현금지원

□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고도기술 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 제1항)

□ 현금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89]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 파급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 업종별로 규정된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300명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9)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투자인센티브, http://www.investkorea.org/_res/kr/etc/Incentives _for_FDI_kor_2017.pdf, 2018. 4. 17 접속

- 200명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상: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관련 연구개발업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상시고용 연구인력 5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역본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현금지원 한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한도설정위원회에서 산출하며,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 내에서 투자유치 협상을 통해 현금지원 규모가 결정됨

○ 국·공유토지의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액도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됨

□ 현금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현금지원으로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에서 30%, 지방에서 70%를 부담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부담하는 것임

○ 단,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이 50%씩 부담하고, 기술계 인턴사원의 고용보조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함

<표 Ⅶ-5> 지출용도별 현금지원에서 국고지원 비중[1)]

(단위: %)

지출용도	수도권	비수도권
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30	6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2)]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30	60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30	60

주: 1)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2) 기술계 인턴사원 고용보조금은 100%
자료: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투자인센티브,
http://www.investkorea.org/_res/kr/etc/Incentives_ for_FDI_kor_2017.pdf, 2018. 4. 17 접속

나. 입지 지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 지원은 지정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다음에서는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정리한 투자인센티브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지 지원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대료 지원 내용을 정리하였음

□ 대규모 투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국·공유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국·공유 토지를 임대받아 형성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100% 감면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사업지역의 임대료 감면내용을 정리하면 <표 Ⅶ-6>과 같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이면 10년 동안 임대료가 전액 감면됨

○ 일반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이면 75% 감면됨
- 단, 소재·부품전용공단의 경우에는 100%가 감면됨

○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250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면 임대료가 100% 감면됨
-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이면 90%, 70명 이상이면 75% 감면됨

<표 Ⅶ-6> 특구별 외국인투자 임대료 감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	경제자유구역 (FEZ)	새만금
• 신성장 & 1백만달러 ↑: 100%(10년)감면 • 일반제조 & 5백만달러 ↑: 75%(소재·부품전용공단은 100%) • 250만달러↑, 상시 근로자 200명↑ 제조업: 100%감면 • 250만달러↑, 상시 근로자 150명↑ 제조업: 90%감면 • 250만달러↑, 상시 근로자 70명↑제조업: 75%감면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장 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 10년간 면제 - 1백만달러↑ 신규 투자,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100% 감면 - 5백만달러↑신규 투자 부품소재: 100% 감면 - 5백만달러↑신규 투자 제조업: 75% 감면	•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100%)	• 신성장 & 1백만달러 ↑: 100% 감면 • 소재부품제조 & 5백만 달러↑ : 100% 감면 • 250만달러↑상시근로자 200명↑제조업: 100% 감면 • 250만달러↑ 상시근로자 150명↑제조업: 100% 감면 • 250만달러↑상시근로자 70명↑제조업: 75% 감면

자료: KOTRA(2017), p.64

□ 새만금 사업지역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유사한 내용의 임대료 감면이 적용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 일반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이면 75% 감면되고, 소재·부품전용공단의 경우에는 100%가 감면되는데 비해 새만금 사업지역에서는 소재·부품제조업으로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가 전액 감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 외의 임대료 감면 요건과 감면 규모는 동일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장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를 10년간 면제함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00% 감면됨

○ 부품·소재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이면 임대료가 100% 감면됨

○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75% 감면됨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례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감면율을 결정하는데, 감면율은 50~100%임

다.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는 조세지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제5항에서는 동법 제121조의2(신규투자)와 제121조의4(증액투자)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없는 조세지원 항목이 열거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조세지원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항목들임

○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등 각종 지역특구 입주기업, 창업기업 세액감면

○ 비수도권, 혁신도시,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한 기업 세액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감면

○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표 Ⅶ-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조세지원

조특법 조항	감면내용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제4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통합법인 감면
제5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이 감면기간 전에 통합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통합법인 감면
제32조 제4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잔여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 제4항	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 제1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2항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104조의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1 제2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2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Ⅷ. 정책방향

Ⅷ. 정책방향

1. 정책개편의 기본 방향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임

□ 2017년 12월에 EU에서 비협조적 국가(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록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었으며,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외국인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음

○ 2018년 초에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EU는 우리나라를 비협조적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그레이 국가 목록에 포함하였음

□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와 내국인투자에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인투자를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적 타당성이 상당히 약화되었음

-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내 자본시장 및 실물시장도 거의 제한 없이 개방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거주 및 사업 환경도 많이 개선되어 외국인의 국내 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음
- 선진 경영기법 등의 도입이라는 외국인투자의 장점이 많이 사라졌음
- 국내 자본조달 능력의 관점에서도 외국인투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세지원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대시킨다는 증거가 없음

- 국내 기업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고용과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음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이 타당한 유일한 근거는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국내에 없는 신기술을 들여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내국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지원제도를 내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

□ 다음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폐지할 것인지, 내국인투자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함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

○ 대규모 외국인투자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지역 특구 투자에 대한 지원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2.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지원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들여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지원대상을 정부가 규정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과 원천기술을 동반하는 외국인투자로 한정하는데, 지원대상의 선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들 기술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기술로 인정하여 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내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만 지원하는 차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비판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큰 것은 아님

○ 국내 기업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지원이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20%임

○ 또한 국내에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외국인투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내 기업에 적용됨

-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지원인데, 2016년에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으로 지원대상 업종과 기술을 개편한 이후 이 항목의 감면승인 실적이 없음

□ 정리해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폐지하여도 국내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업화 투자세액공제 등 이 분야의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유사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음

○ 최근에는 감면 승인 실적이 없어 폐지하여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대규모 외국인투자 지원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지원대상 업종과 업종별 외국인투자 규모에 대해 제약이 있을 뿐, 특정 지역에 투자하여야 한다거나 특정한 기술을 수반해야 한다는 등 다른 요건이 부수되지 않으므로 유일한 목적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IMF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국내 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외화자산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이 시급한 시기에 도입되었음

○ 도입 당시에 정부는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 자체가 국내 경제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에 대한 조세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국내 자본이 충분히 많아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대내 투자를 능가하고 있음
-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보유 비율이 30%를 넘었음
- 외국인투자에서 기대하는 선진 경영기법 등의 외부효과도 그다지 클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관점에서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 또는 투자 자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기적 투자증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었으나 2011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고 2017년 말에 일몰 종료됨

○ 다른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투자지원의 필요성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자금조달의 어려움, 납세협력비용의 과다, 시장진입에 따른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대기업 또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함

○ 정부는 최근에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음

□ 결론적으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 투자규모를 유일한 조건으로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는 없으며, 그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세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대기업만 지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과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4. 특구 투자에 대한 지원

□ 앞서 논의한 두 가지 제도가 7년형 감면이 적용되는 데 비해, 특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가 감면되는 5년형 감면이 적용됨

○ 이 제도가 적용되는 특구는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역임

□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은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

○ 외국인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정된 특구 지원을 특구 내 국내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 국내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특구가 생성되는 것과 같음

○ 그러므로 전반적인 지역특구 조세지원 발전방향의 틀 내에서 외국인투자 지원 특구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안종석·신상화·송헌재(2018)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심층평가를 하였는데, 그 심층평가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특정 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목적

□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좀 더 효율적인 부문에서 비효율적인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남

○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큰 경우로 국한하여야 함

○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야 함

□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특정 지역 조세지원제도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의 지역 특구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됨

○ 낙후지역 개발

○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의 기업을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 증대

○ 외국인투자 유치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많은 국가가 특정 지역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나 재정지원제도를 운영함

○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낙후지역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제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새만금 사업지역 등이 이러한 목적의 특구에 해당함

□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의 특구는, 특구의 형성 초기에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면, 투자재원 배분의 왜곡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특구가 연구개발특구임

○ 그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지,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에 해당됨

□ 한편 일정한 기간 정부의 지원으로 특구가 성장하고, 상당한 수의 기업이 특구에 집중된 이후에는, 이미 집적된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특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상당수의 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적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부 지원은 해당 특구에 기업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 특구는 다른 국가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임

○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 이에 해당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도 있음

○ 국제규범에 비춰 볼 때,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특구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들 특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낙후지역 개발 또는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평가 결과에 따라 특구의 유지 및 조세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방향

□ 지원 목적별로 보면,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는 유지하면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

○ 현행 지역특구 중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이에 해당됨

○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지원은 새만금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저변에는 낙후지역 개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공지역 지원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시너지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 중 특구가 형성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하여 독자적인 생존 및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개발특구 조세지원이 이에 해당됨

- 특구 지정연도: 대덕 2005년, 광주 2011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 입주기업 수: 대덕 1,763개, 광주 1,140개, 대구 728개, 부산 891개, 전북 450개, 전체 5,018개

□ 아직 독자적인 생존 및 발전의 기반이 갖추어지진 않았으나 특구 지정 이후 조세지원 실적이 거의 없어 조세지원이 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도 조세지원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구가 이에 해당됨

□ 외국인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는 폐지하여야 함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낙후지역 개발이나 시너지효과 극대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기업도시의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와 국내기업 지원제도가 유사하므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국내기업 지원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제주도 등 특정 지역 개발사업 조세지원의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유사한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은 폐지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 특구 개발사업자 조세지원의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서는 외국인투자 1천만달러, 총사업비 1억달러,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함

○ 한편 국내 기업 지원에서는 개발사업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간 50%, 2년간 25% 감면됨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국내 기업의 지역특구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강원도민일보 기사,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 가속도 붙는다」, 2017. 7. 25.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 -」, 2015. 11.

건설교통부, 『기업도시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2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일본 지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국토교통부,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제도 개선 연구』, 2014.

_____, 「기업도시 간담회」 자료, 2016. 3. 30.

국토연구원, 『기업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2013.

금융감독원, 「'18.2월 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18. 3.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등 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제하 기사 관련」, 2017. 12. 6.

매일경제, 「새만금 입주 국내 기업도 임대료 감면」, 2018. 2. 1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14841, 2018.3.27. 접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안종석·정재호·최기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평가 및 정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안종석·신상화·송헌재,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연합뉴스 보도, 「여의도 10배 면적 전남 기업도시, 골프장 도시 전락 우려」, 2017. 11. 15.

전병목, 「도시재생사업 조세지원제도 도입 방안」, 한국재정학회, 2016. 1.

산업통상자원부·KOTRA, 『외국인직접투자 참고자료집』, 2017. 09.

_____,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집』, 2017. 9

새만금개발청, 「2018년도 업무계획」, 2018. 2.

이상영,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인허가 지원 제도」, KOTRA, 2011.

홍성훈·안종석,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최해옥,「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동향과 이슈』, 제 3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7. 19.

G1tv 뉴스,「원주기업도시 "공장 짓고 있다더니...」, 2017. 11. 20.

KOTRA,『외국인투자 가이드 2017』, 2017. 8.

_____,『주요국 투자유치인센티브 제도 조사』, 2018. 2.

CCH, "World Business Tax Guide, Taiwan," 2018.

De Mooij, R. A., and Ederveen, S. "Explaining the Variation in Empirical Estimates of T ax Elasticit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Vol. 108, No. 3, 2005.

Leino, T., and Ali-Yrkkö, J. "How Well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Measure Real In vestment by Foreign-owned Companies? Firm-level Analysis," Bank of Finland, Disc ussion Papers, 12/2014, 2014.

OECD, *Harmful Tax Practices - 2017 Progress Report on Preferential Regime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 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 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7. (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harmful -tax-practices-2017-progress-report-on-preferential-regimes_9789264283954-en, 2018. 7.5. 접속)

_____, "Tax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Present Evidence and Policy Analysis," *OECD Tax Policy Studies* No. 17, 2007.

_____,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OECD Publishing, Paris, 1998.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 "Tax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A Literature Review," *New Policy Challenges for European Multinationals,*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2. pp. 89~117.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China's High and New-Technology Enterprise(HNTE) Program," June 2013.

Windson Li·Shan Yu, "China Tax Incentives for Advanced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 s Rolled Out to the Entire Nation: Key Features," DLA Piper, 2017.11.20. (https://www.dlapiper.com/en/middleeast/insights/publications/2017/11/china-tax- ince ntives-for-technology-service/, 2018. 6. 26 접속)

<웹사이트 - 국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3.22. 접속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301&tblId=DT_025Y009&conn_path=I3, 2018. 4. 12 접속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홈페이지, 자유무역지역이란, http://www.motie.go.kr/ftz/masan/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 2018. 3.22. 접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5.do?brf_code_v=5#header, 2018.3.22. 접속

_____,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8. 3. 19 접속

솔라시도, http://solaseado.go.kr/new/s01/05/index.php, 2018. 3. 19. 접속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인센티브, http://www.investkorea.org/_res/kr/etc/Incentives _for_FDI _kor_2017.pdf, 2018. 4. 17 접속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http://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 jeonnam0605020200, 2018. 3. 19. 접속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7&ccfNo=2&cciNo=3&cnpClsNo=3, 2018.3.16. 접속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http://www.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197&ccfNo=2&cciNo=3&cnpClsNo=2&csmttl=%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C%9E%90, 2018.3.22. 접속

충청북도 기업도시 개요, https://www.chungju.go.kr/www/contents.do?key=573, 2018. 3. 19. 접속

현대도시개발 & 라티에라, http://www.latierra.kr/business/pass, 2018. 3. 19. 접속

<웹사이트 - 해외>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request/cao/28y_cao_k_12.pdf, 2018.4.11. 접속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h30_youbou03.html, 2018.4.11. 접속

MNTC연합 홈페이지, http://nmtccoalition.org/fact-sheet/, 2018.4.10. 접속

PWC, *Worldwide Tax Summaries*, Singapore : Corporate -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taxsummaries.pwc.com/ID/Singapore-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2018. 4. 11 접속

RRL, https://www.rrlcornwall.co.uk/publications/tax-publications/business-tax/time-is -running-out-for-business-premises-renovation-allowance-bpra-claims, 2018. 4. 24 접속

영국정부,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the-regional-growth-fund, 2018.4.9. 접속

_____,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munity-investment-tax-relief- hs237-self-assessment-helpsheet/hs237-community-investment-tax-relief-2017, 2018.4.9. 접속